

09-2010-04

KREI

중국 농업 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0 겨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권나경 naijong@krei.re.kr
TEL 02-3299-4283

중국농업동향

2010 겨울호(제3권 제4호)

I. 농업정책 브리핑

- 2010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3
- 농민공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23
- 중국의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경영권 양도”의 영향 33
- “12·5계획(2011~2015)”기간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 38
- 중국의 구제역 대응책 개요 44
-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 46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55
- 가격 동향 65
- 무역 동향 75
- 양념채소시장 동향 101

III. 정책자료

-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111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143

IV. 농업통계

153



I. 농업정책 브리핑

- 2010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농민공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 중국의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경영권 양도”의 영향
 - “12·5계획(2011~2015년)”기간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
 - 중국의 구제역 대응책 개요
 -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

2010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

- 2010년 12월 21~22일 북경에서 개최된 2010년도 중앙농촌공작회의¹에서는 2010년도 농업·농촌 업무의 평가와 더불어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기간 동안의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2011년도 농업·농촌 업무를 제시하였음.
 -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로 작성된 수리문제 개혁에 관한 문건을 토론회를 거쳐 채택하였음(“수리개혁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關於加快水利改革發展的決定(討論稿))”)
 - 문건은 ①수리의 전략적 지위, ②수리개혁의 지도 사상, 목표 임무, 기본원칙, ③농지수리시설 건설 등 강화, ④수리기초시설 강화, ⑤수리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메카니즘 확립, ⑥엄격한 수리자원 관리제도 실시, ⑦수리발전 메카니즘 혁신, ⑧수리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등 8개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됨.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다음해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된 전례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2011년도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 회의에서는 2010년 식량생산량이 5억 4,6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60만 톤 증가하여 1958년 이후 처음으로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음. 또한 농민 1인당 평균소득은 5,800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음.
 - 식량생산량: 2008년 52,871만 톤 → 2009년 53,080만 톤 → 2010년 54,640만 톤

* 작성: 권나경(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 najjong@krei.re.kr)

1 매년 연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여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업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토의하고 확정하는 정책 논의 기구임.

- 농민 1인당 평균소득: 2008년 4,761위안 → 2009년 5,000위안 → 2010년 5,800위안
- 회의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 시작되는 2011년에 농업·농촌 업무를 특히 잘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수리건설을 통해 농업의 기초를 강화하고(大興水利強基礎), 생산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狠抓生產保供), 농민소득 증대를 통해 민생을 개선할 것(力促增收惠民生)” 주문하였음.
- 회의에서는 ①‘삼농’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강농혜농정책 강화, ②농업생산 증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③농산물 유통 및 시장 조절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저비용, 고효율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④농업인프라 건설 강화, 농업발전의 기초 강화, ⑤농촌 민생 개선,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⑥농촌 개혁 심화, 농촌발전의 활력 증대 등 6가지의 2011년도 농업·농촌 업무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2011년도 농업·농촌 업무 중점 추진 과제〉

중점 과제	주요 내용
강농혜농(強農惠農)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예산 사용 확대 • 토지양도 수익을 농업토지개발, 농지수리시설, 농촌인프라건설에 투자 • 금융기관의 농업관련 대출 확대 장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종면적 확보를 통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 전국 중단립종 벼 생산발전계획 제정, 주요 식량생산지의 이익보상기제 마련 • 채랍자(菜籃子) 농산물의 대량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시장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정 개선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농산물가격 유지 • 원활한 농산물 유통채널 운용, 효율적인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구축 • 농산물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주요 농산물의 수매 질서 수립 • 재래시장의 자리세 및 슈퍼마켓 입점비의 규범화 및 인하 • 거짓정보 유포, 악의적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처벌
농업발전기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술 장비 수준의 제고 • 고표준농경지 건설 계획 수립(2020년까지 5.36천만ha의 고표준농지 추가 확보) •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및 보급 능력 향상, 농산물 품질 관리 감독 강화
민생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민생 안정 보장 및 개선 • 농민의 직능 및 수익 창출 능력 제고 • 농민소득 증가
농촌개혁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토지관리제도 개선 • 집단임지재산권제도(集體林權) 개혁 추진, 초원도급경영제도(草原承包經營) 개선,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안정적 유지 •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농민공 문제 해결 모색

□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

- 농업부가 주최하는 2010년도 전국농업공작회의²가 12월 21~23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회의에서는 제11차 5개년 계획(十一五)기간과 2010년도 각급 농업관련부문에 추진한 농업·농촌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제시하였음.
- 회의에서는 농업현대화에서 농업기계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2010년 농업기계화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함.
 - 2010년 농업부에서 실시한 농기계작업(農機作業)에서 여름과 가을파종 시기에 4,300만 대 이상의 농기계가 투입되어 수확 및 파종시기를 앞당겼음.
 - 밀의 주요 산지에서는 전 과정 기계화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기계를 사용한 심경정지(深翻整地) 면적이 확대되었음.
 - 기계화가 취약했던 분야의 기계화 작업을 수준이 대폭 향상됨. 옥수수의 수확 및 이앙의 기계화 작업율이 각각 25%, 20%로 전년대비 각각 8%, 3% 증가함.
- 2011년도 10대 중점 추진 업무
 - 강농혜농(強農惠農)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 및 유지, 채람자(菜籃子) 농산물의 생산 증대
 -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의 효과적 추진 및 강화
 - 동물 전염병 통제 및 방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
 - 농업 과학기술 및 장비수준 제고, 농업 인프라건설 강화
 -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소득원 개발
 - 농촌개혁과 농촌 대외개방 심화 추진

2 매년 연말 농업부 주최로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업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임.

□ 2011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인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국가식량국·중국농업발전은행은 2010년 10월 11일 《2011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關於提高2011年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發改電[2010]347호)을 하달하였음.
- 《통지》는 밀 생산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고, 식량생산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밀 주산지에서 생산된 2011년산 백밀, 홍밀, 혼합밀의 50kg 당 최저수매가격을 각각 95위안, 93위안, 93위안으로 인상하였음. 이는 2010년산 최저수매가격 대비 각각 5위안, 7위안, 7위안 상승한 것임.

□ 2011년도 농산물 수출 쿼터 확정

- 《화물수출입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와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에 의거하여 2011년도 농산물의 수출 쿼터가 공포됨.
- 2011년도 농산물 수출 쿼터 내역

상품명	단위	쿼터 총량
목재(鋸材)	만 m ³	26
골풀(藎草) 및 그 제품	만 kg	3200
산 돼지(大)	만 마리	180
그 중: 홍콩	만 마리	165
마카오	만 마리	15
산 돼지(中)	만 마리	8.24
그 중: 홍콩	만 마리	8.0
마카오	만 마리	0.24
산 소(活牛)	만 마리	5.27
그 중: 홍콩	만 마리	5
마카오	만 마리	0.72
산 닭(活雞)	만 마리	1340
그 중: 홍콩	만 마리	1000
마카오	만 마리	340

□ 농업기계화 촉진 대책 발표

- 농업부는 2010년 11월 3일 국무원이 2010년 7월 5일 발표한 《농업 기계화 및 농기계 공업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促進農業機械化和農機工業又好又快發展的意見)》(國發[2010]22호)을 구체화하고, 농기계·농업기술의 융합 강화 및 발전,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 수준 제고, 축산업·담수어업·임업·과수업·시설농업·농산물 가공업분야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농업기술의 융합 강화 및 기계화가 취약한 분야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加強農機農藝融合加快推進薄弱環節機械化發展的意見)》(農機發[2010]8號)을 하달하였음.
- 《의견》은 중국의 농업생산 방식이 과거 인력과 축력 위주에서 기계화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기계화 수준이 2009년 49.1%에 이어 201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유채(油菜)의 기계 파종 및 수확 수준은 각각 10.4%, 8.8%에 그치고 있고, 감자, 사탕수수, 목화, 땅콩 등의 수확용 기계들은 아직 시험 제작 단계에 있는 등 여전히 농업 생산의 기계화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농업기계화 수준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음.
- 농기계·농업기술(農機農藝)의 융합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
 - 국무원에서 제시한 2015년/2020년 농업 기계화(農機化) 발전 목표에 따른 단계별, 지역별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 수립
 - 농업 기계화 기술 및 기계장비 연구개발의 가속화: 농기원(農機院)의 과학 연구 역량 통합, 중점 작물의 농업기계화 연구실 확대 건립, 농기계·농업기술의 연구 강화, 다기능화·지능화·경제형 농업장비시설 개발 가속화, 농기계·농업기술이 결합된 기계 모델, 품종, 재배방식의 시범 보급 확대
 -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파종기술체계 정비: 농업기술 표준과 기계작업 규범 제정, 작물품종, 파종시기, 이랑간격, 비료사용, 식물방역 등의 통일화 작업 추진
 - 농기계 구매 보조금 확대, 농업 기계화 인프라 건설, 농업 기계화 추진공정의 가속화, 농업 기계화 공공서비스 능력 제고, 기층 농업기계화 보급 기구 개혁 및 건

설, 짚이나 작물 줄기의 종합적 이용 및 유채의 기계화 생산 시범현(縣) 건설 적극 추진

- 농기계·농업기술에 대한 지식 보급 및 기술 훈련 실시

□ 일부 농업관련 규칙(規章) 및 규범성 문건 정리

- 농업부는 국무원 판공청의 《규칙정리작업 관련문제를 잘 처리할 것에 관한 통지(關於做好規章清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國辦發[2010]28호)에 근거하여 일부 규칙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음
 - 4건의 규칙 및 48건의 규범성문건 폐지, 11건의 규범성 문건 실효화
- 폐지된 규칙(4건)
 - 국영농장의 농업기계화 관리 임시시행 세칙(農業部國營農場農機化管理暫行細則)(農(體改)字 제8호, 1989.5.10)
 - 외해 작업 어선 관리강화에 관한 통고(關於加強外海作業漁船管理的通告)(1994.1.9 농업부령 제4호 선포, 2004.7.1 농업부령 제38호 수정)
 - 동해, 황해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하계 어획금지 제도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在東、黃海實施新伏季休漁制度的通知)(農漁發[1998]6호, 1998.4.2)
 - 남해해역에서 실시되는 하계 어획금지 제도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在南海海域實行伏季休漁制度的通知)(農漁發[1999]2호, 1999.3.5)
- 폐지된 규범성 문건(48건)
 - 농목어업 사업단위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보상문제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財政部關於農牧漁業事業單位職工因公負傷致殘評殘撫恤問題的通知)((83)農(人)字 77호, 1983.12.21)
 - 全民소유제 사업단위의 직원이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경우 보상문제에 관한 재정부 통지 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轉發《財政部關於全民所有制事業單位工作人員因公負傷致殘撫恤問題的通知》的通知)((1989)農(人)函字 22호, 1989.9.16)

- 위법소득문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회신(關於如何認定違法所得問題請示的複函) (農政函[1999]4호, 1999.7.16)
- 종자, 농약생산, 경영 중 불법소득에 대한 해석에 관한 서한(關於對種子、農藥生產、經營中違法所得解釋的函) (農農函[1999]6호, 1999.9.11)
- 산둥성 동영시 하구구 종자 공사에서 판매한 종자의 품질합격여부 문제에 관한 회신(關於山東省東營市河口區種子公司出售的種子是否為合格種子的問題的複函) (農辦綜函[2000]43호, 2000.7.3)
- 위법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회답(關於如何認定違法所得的批複) (農政函[2000]17호, 2000.9.27)
- 벌금 부과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회답(關於如何確定罰款幅度的複函) (農政函[2000]18호, 2000.9.27)
- 교배 찰옥수수는 주요농작물 인가에 관한 회신(關於雜交糯玉米是主要農作物的複函) (農辦政[2001]1호, 2001.1.31)
- 향진기업 도급 이후 새로 증가된 자산범위에 관한 회답 (關於鄉鎮企業承包後新增的資產範圍的答複) (農辦政[2001]33호, 2001.7.3)
- 상품종자 생산단위와 개인의 범위 확정에 관한 서한(關於界定商品種子生產單位和個人的函) (農辦農[2001]39호, 2001.7.10)
- 농업부의 《촌급 범위내 자금 및 노동력 조달 관리 임시시행 규정》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印發《村級範圍內籌資籌勞管理暫行規定》的通知) (農農發[2006]2호, 2006.3.2)
- 전국 농업식물검역성유해생물 분포자료 배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發布全國農業植物檢疫性有害生物分布資料的通知) ([2006]2호, 2006.3.2)
- 농업부 공고 788호 새로운 위험성 유해생물인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 CGMMV)이 전국 농업식물검역성유해생물로 확정됨. (2006.12.21 공포)
- 외자기업의 종자경영허가증 심사발급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核發外商投資企業種子經營許可證有關問題的通知) (農辦農 [2003]35호, 2003.6.26)

- 농업부, 임업부, 화공부, 위생부, 상업부, 국무원 환경보호영도소조에서 반포한 《농약등록규정》에 관한 통지(農業部、林業部、化工部、衛生部、商業部、國務院環境保護領導小組頒布《農藥登記規定》的通知) ([82]農業保字 제10호, 1982.4.10)
- 농목어업부에서 반포한 《농약등록규정 실시 세칙》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頒布《農藥登記規定實施細則》的通知) ([82]農(農)字 제72호, 1982.9.1)
- 농약품질검사 및 잔류분석작업 강화를 위한 기존 과학연구시설의 이용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利用現有科研設施加強農藥質量檢測和殘留分析工作的通知) ([83]農(計)字 제82호, 1983.6.6)
- 농목어업부, 화공부의 《국내 농약등록 공작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化工部關於轉發《國內農藥登記工作會議紀要》的通知) ([83]農(農)字 제174호, 1983.11.10)
- 농약품질검사 및 잔류분석작업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農牧漁業部關於加強農藥質量檢測和殘留分析工作的補充通知) ([84]農(農)字 제27호, 1984.6.16)
- 농목어업부의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4]農(農)字 제24호, 1984.7.8)
- 포전에서 해외농약 약효시험의 비용납부 비율 인하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降低國外農藥田間藥效試驗費上交比例的通知) ([85]農(農)字 제8호, 1985.2.12)
- 농목어업부, 화공부의 《제2차 국내 농약등록 공작회의 기요》발송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化工部關於發送《第二次國內農藥登記工作會議紀要》的通知) ([85]農(農)字 제18호, 1985.4.20)
- 농목어업부의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5]農(農)字 제40호, 1985.8.12)
- 농목어업부의 《제2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第二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6]農(農)字 제27호, 1986.7.25)

- 농목어업부의 《제2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第二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7]農(農)函字 제68호, 1987.8.13)
- 농목어업부의 《제2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第二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8]農(農)函字 제95호, 1988.10.8)
- 농목어업부의 《제3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第三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89]農(農)函字 제78호, 1989.11.8)
- 농목어업부의 《제3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轉發《第三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90]農(農)函字 제64호, 1990.12.18)
- 농업부의 《제3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轉發《第三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1992]農(農)字 제1호, 1992.1.12)
- 농업부의 《국무원 판공청의 농약 및 동물용 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관철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貫徹《國務院辦公廳關於加強農藥、獸藥管理的通知》的通知) ([1992]農(農)函字 제5호, 1992.8.1)
- 농업부의 《제4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轉發《第四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1992]農(農)函字 제48호, 1992.11.20)
- 위생살충제 등록 및 판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農業部、商業部關於加強衛生殺蟲劑登記和銷售管理的通知) ([1993]農(農)字 제4호, 1993.3.2)
- 농업부의 《제4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轉發《第四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1993]農(農)函字 제44호, 1993.10.7)
- 비료, 농약, 종자 관리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農業部、國家工商行政管理局關於進一步加強肥料、農藥、種子管理的通知) (農農發 [1995]7호, 1995.3.20)

- 채소생산에 있어서 독성 및 잔류성농약 사용 금지 및 인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통지(農業部、衛生部、國內貿易部、國家環境保護局、國家工商行政管理局關於嚴禁在蔬菜生產上使用高毒高殘留農藥，確保人民食菜安全的通知) (農農發[1995]24호, 1995.11.15)
- 농업부의 《제5회 농약등록심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요》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轉發《第五屆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農農函[1996]5호, 1996.2.8)
- 농업부 농약등록관리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進一步做好農藥登記管理工作的通知) (農農發[2000]7호, 2000.5.20)
- 농업부, 환경보호부, 해관총서공고 제1123호 1, 2-에틸렌 디클로리드(1, 2-dichloroethane) 수출입 관리감독 강화 (2008.12.15 공포)
- 전국 농업식물검역 대상의 전염병 발생상황, 분포 자료의 배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發布全國農業植物檢疫對象疫情分布資料的通知)(農農發[1996]179호, 1996.12.20)
- 과수 종자, 묘목 관리 임시시행 방법(果樹種子苗木管理暫行辦法) (농업부령 제13호, 1990.2.6)
- 도농 재래시장의 가축·가금 및 육류 관리와 검역 강화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國家工商行政管理局關於加強城鄉集貿市場畜禽及其肉類管理、檢疫的通知) (農(牧)字[1987]제22호, 1987.5.21)
- 《가축·가금방역조례》의 3가지 부대법규 하달에 관한 통지(農牧漁業部關於印發《家畜家禽防疫條例》三個配套法規的通知) (農(牧)字[1988]제10호, 1988.3.2)
- 가축·가금방역조례 실시 세칙(家畜家禽防疫條例實施細則) (농업부령 제10호, 1992.4.8)
- 조류독감 발생 상황 감시, 독성평가, 처리에 관한 규정(關於禽流感疫情監測、毒型鑒定和疫情處置的規定) (1998.1.6)
- 농업부 공고 제202호 동물용 약품 GMP 관련 요구 실시(實施獸藥GMP有關要求) (2002.6.14 공포)

- 일본해 공해와 북태평양 공해에서의 오징어 생산에 대한 어획허가제도(특허) 시행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對日本海公海和北太平洋公海魷魚生產實行專項(特許)捕撈許可制度的通知) (農漁發[1994]3호, 1994.3.25; 1997.12.25 농업부령 제39호 수정)
 - 어업자원 증식 및 방류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加強漁業資源增殖放流工作的通知) (農漁發[2003]6호, 2003.4.3)
 - 농업부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야생 수생생물종 목록 조정 현황(부록) 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轉發《瀕危野生動植物種國際貿易公約》附錄水生野生物種目錄調整情況的通知) (農漁發[2005]3호, 2005.1.17)
- 실효가 선포된 규범성 문건(11건)
- 농업부, 재정부, 공청단 중앙의 《세기를 뛰어넘는 청년농민 과학기술 훈련 공정 시범 업무 확대에 관한 의견》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財政部、共青團中央關於印發《關於開展跨世紀青年農民科技培訓工程試點工作的意見》的通知) (農科教發[1999]8호, 1999.5.12)
 - 농업부, 공청단 중앙의 《세기를 뛰어넘는 청년농민 과학기술 훈련 공정 관리 방법》하달에 관한 통지(農業部、共青團中央關於印發《跨世紀青年農民科技培訓工程管理辦法》的通知) (農科教發[2001]15호, 2001.6.27)
 - 신형 농민 과학기술 훈련 공정의 조직 및 실시에 관한 통지(農業部、財政部關於組織實施新型農民科技培訓工程的通知) (農科教發[2006]2호, 2006.7.27)
 - 농업부 공고 제349호 수입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임시 조치의 정상 관리로의 이행(進口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臨時措施向正常管理過渡) (2004.2.20)
 - 농업부,公安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품질감독검증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전국애국위생운동위원회, 전국공소합작총사의 《국무원 판공청의 두슈치양(맹독성 쥐약) 전문 정리 작업 전개에 관한 통지》관철에 관한 통지(農業部、公安部、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財政部、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國家環境保護總局、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局、國家食品藥品監督

管理局、全國愛國衛生運動委員會、全國供銷合作總社關於貫徹落實《國務院辦公廳關於深入開展毒鼠強專項整治工作的通知》的通知(農農發[2003]13호, 2003.7.23)

- 전국 두슈치앙(맹독성 쥐약) 전문정리작업소조의 두슈치앙 정리 작업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全國毒鼠強專項整治工作小組關於進一步加強毒鼠強專項整治工作的緊急通知) (農明字[2003]15호, 2003.9.27)
- 전국 두슈치앙(맹독성 쥐약) 전문정리작업소조의 두슈치앙 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에 관한 긴급통지(全國毒鼠強專項整治工作小組關於繼續推進毒鼠強專項整治工作的緊急通知) (農明字[2004]43호, 2004.4.21)
- 농업부 공고 제379호 농약임시등록 정리 실시 (2004.6.1)
- 농약등록관리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農業部辦公廳關於進一步做好農藥登記管理工作的通知) (農辦農[2005]81호, 2005.9.21)
- 농약임시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정리제품의 신청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農藥臨時登記超過有效期限清理產品申辦延期的通知)(農農發[2008]1호, 2008.1.3)
- 농업부 공고 제1036호 사천 등 재해지역의 농약기업에 대한 등록연장기간 연장 (2008.5.28)

○ 수정된 규칙(10건)

- 트랙터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농업부령 제42호, 2004.9.21)
 - 제1조 수정 내용 : “트랙터 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 규범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農業機械化促進法)》,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농업기계안전관리감독조례(農業機械安全監督管理條例)》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19조 중 “만20일” 삭제
 - 제18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의 “5일”과 “3일”을 모두 “근무일 중 2일(2個工作日)”로 수정

- 트랙터 등록 규정 (농업부령 제43호, 2004.9.21)
 - 제1조 수정 내용 : “트랙터 등록 규범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農業機械化促進法)》,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농업기계안전관리감독조례(農業機械安全監督管理條例)》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5일”과 “3일”을 모두 “근무일 중 2일(2個工作日)”로 수정
 - 제7조 제1관 제7항을 “도로 상에서 통행하던 트랙터의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기간과 보험회사의 명칭”으로 수정, 제30조 제1관 제4항, 제33조 제1관, 제34조 제1관의 “트랙터 제3자 책임강제보험의 근거”를 모두 “도로 상에서 통행하던 트랙터의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근거”로 수정
- 콤파인 및 운전자 안전관리감독 규정 (농업부령 제72호, 2006.2.12)
 - 제1조 수정 내용 : “콤파인과 운전자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농업생산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안전관리감독조례(農業機械安全監督管理條例)》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 “5일”과 “3일”을 모두 “근무일 중 2일(2個工作日)”로 수정
 - 제5장의 “사고처리”와 제6장의 “벌칙” 삭제
- 사료첨가제와 첨가제를 혼합한 사료(添加劑預混合飼料) 제품의 허가번호 관리방법 (농업부령 제23호, 1999.12.9; 2004.7.1 농업부령 제38호 수정)
 - 제5조 제2관의 “새로 출시된 사료첨가제와 첨가제를 혼합한 사료 제품의 비준번호 신청 시 농업부가 발급한 신 사료첨가제와 신 첨가제혼합사료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를 “새로 출시된 사료첨가제 제품의 허가번호 신청 시 농업부가 발급한 신 사료첨가제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
- 조산소 인가 방법([1994]農(漁檢)字2호, 1994.11.28; 2007.11.8 농업부령 제6호 수정)
 - 제8조 “이미 인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증서 취득시 충족시켰던 요구사항의 기준

- (공장부지, 설비, 기술노동자, 엔지니어 등 포함)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관련법률, 법규, 규정 및 농업부의 어선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어선을 수리하거나 만들어서도 안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가증 발급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을 명령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경우 발급기관은 인가증을 회수하고 인가증 발급 사실을 무효로 한다.”로 수정
- 어업선박 등록방법(農漁發[1996]2호, 1996.1.22; 1997.12.25 농업부령 제39호 수정; 2004.7.1 농업부령 제38호 수정)
 - 제8조 “어업선박은 오직 하나의 선호(船名)를 가질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농업부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한다. 신청인이 원양어선의 선호를 제시하면 성급(省級) 어업선박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어정국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공무선박(公務船舶)의 선호는 주관기관이 결정한다.”로 수정
 - 제15조 제1관 제4항 삭제
 - 수생 동·식물 자연보호구역 관리방법(농업부령 제24호, 1997.10.17)
 - 제27조의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條例)》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으로 수정
 - 어업선박 선호 규정(農漁發[1998]1호, 1998.3.2; 2007.11.8 농업부령 제6호 수정)
 - 제3조 제1관 제3항의 “중화인민공화국어정어항관리감독국(中華人民共和國漁政漁港監督管理局)”을 “중화인민공화국어정국(中華人民共和國漁政局)”으로 수정
 - 제5조 “원양어선, 과학연구선박, 교육실습선박의 선호(船名)는 신청인이 간체자 또는 간체자와 숫자를 차례대로 조합하여 제시하고, 성급 어업선박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어정국에 보고하여 결정한다.”로 수정
 - 제5조에 “기존의 국내어선이 법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할 경우 선호(船名)는 그대로 유지 한다”라는 내용을 제3관으로 추가
 - 중화인민공화국 수생 야생동물 이용 특허 방법(농업부령 제15호, 1999.6.24; 2004.7.1 농업부령 제38호 수정)

- 제46조의 “중화인민공화국어정어항관리감독국(中華人民共和國漁政漁港監督管理局)”을 “중화인민공화국어정국(中華人民共和國漁政局)”으로 수정
- 발해(渤海) 생물자원 보존 규정(농업부령 제34호, 2004.2.12; 2004.7.1 농업부령 제38호 수정)
 - 본 규정내의 “농업부황발해구어정어항관리감독국(農業部黃渤海區漁政漁港監督管理局)”을 모두 농업부황발해구어정국(農業部黃渤海區漁政局)으로 수정
 - 제21조를 “종질자원보호구역(種質資源保護區)과 주요 경제어종, 새우, 게류의 산란장 등 민감한 수역에서 방류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로 수정
 - 첨부3의 “발해(渤海)의 하계 어획금지 시간을 6월 16일 12시에서 9월 1일 12시로 한다”를 “발해의 하계 어획금지 기간을 6월 1일 12시부터 9월 1일 12시로 한다”로 수정

□ 동북지역의 농업발전계획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농업부는 2010년 11월 30일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동북지역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加快轉變東北地區農業發展方式建設現代農業的指導意見)》을 하달하였음.
- 동북지역 발전목표
 - 동북지역을 국가식량 안전보호의 전략기지, 주요 가축·가금·수산 제품의 가공기지, 농업 현대화 시범구역으로 건설함.
 - 2015년까지 동북지역의 식량생산능력을 1억 톤 이상으로 늘리고, 농업과학기술 기여율 60%, 농산물 가공율 70%, 농작물 경작·수확의 기계화율 80%, 경지관개율 30%, 농업관개수 이용계수 0.6이상으로 제고함. 2020년까지 동북지역 농지의 토지생산성, 자원이용 및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
- 동북지역 농업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주요 의견
 - 현대 농산업체계의 건설: 식량생산 증가 및 특색농업(特色農業)의 안정적 발전, 가

- 축가금 및 수산양식업의 적극적인 발전, 임업의 지속가능발전 촉진, 농산물 가공업 발전 추진
- 현대농업 기본조건 수립: 농경지 수리시설 등 기초 인프라 건설 강화, 농업절수관개의 발전 추진, 경작지의 질 제고, 농업 기계화 수준 향상
 - 현대농업의 과학기술 체계 강화: 농업 과학기술 체계 정비, 농업기술의 통합화 추진,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보급 활동, 농업정보화 추진, 농촌 직업교육 강화
 - 현대농업경영체제 혁신 추진: 토지의 최적경영규모 실현, 농민전업합작사(專業合作社) 지원, 농업산업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 현대농업 시장유통체계 정비: 농산물시장 체계 건설 강화, 식량저장시설 완비, 농산물 수송능력 증강
 - 순환농업경제 발전 및 생태보호 촉진: 농림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 농업 생태 건설 및 환경보호 강화,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의 발전 추진
 - 흑룡강 등 농지개간지구(墾區)의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 농지개간 관리체제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 도농 및 농공업 발전 계획 수립: 호구제도 개혁, 농민의 도시 취업 기회 확대, 농촌 인구나 노동력의 비농산업 및 도시로의 전이 등을 통하여 농업발전방식 전환의 조건 마련, 신농촌 건설의 가속화
 - 정책 지원 정비: 농업분야의 투자(보조금) 확대, 4대 보조금(식량직불제, 농자재종합직불제,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정책 강화, 식량주산지의 이익 보상제도 완비, 농촌 금융 체계 정비, 농업 분야 대외개방 가속화

□ 심경정지(深松整地) 작업에 보조금 집중 투입

- 2010년 12월 10일 농업부는 농기계 심경정지 작업의 중요 의의, 2011년 농기계 심경정지 작업의 실시방안 제정,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화(農機化) 주관 부문의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기계 심경정지 작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통지(關於落實補貼資金推進農機深松整地作業的通知)》를 하달함.

- 《통지》는 2010년도 중앙정부의 농자재종합직불금을 식량생산 기초능력건설에 집중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북지역, 황회해(黃淮海) 등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심경정지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함. 또한 농기계 심경정지 작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식량안전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음.
- 2010년도 중앙1호문건에서는 “심경정지(機械深松整地) 작업의 기계화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국무원의 《농업기계화와 농기공업의 신속한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促進農業機械化和農機工業又好又快發展的意見)》에서는 심경정지 작업 등 농기계 작업 보조의 시범 실시를 촉구하였음.
- 2009년 10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농기계 심경작업에 대한 보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음.
- 재정부는 농기계 심경정지 작업을 새로 증가한 농자재종합직불금의 중점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음.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 설립

- 중앙기구편제위원회(SCOPSR)³는 2010년 12월 6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실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통지(關於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辦公室機構設置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의 주요 직책, 내부설립 기구, 인원편성 및 기타 부문과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2010년 초 각각 식품안전업무의 최고위급 논의기구 및 구체적인 업무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의 설치를 결정함.

3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機構編制委員會, SCOPSR)은 전국의 행정관리체제, 기구의 개혁 및 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임.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의 업무는 식품안전관련 정책의 집행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함.
 - 식품안전 업무관련 정책실행, 식품안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국가 식품안전계획의 입안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지시한 종합적 협조업무 처리, 지방의 식품안전종합협조 기구에 대한 업무지도
 -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정책결정 사항의 집행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 국무원 유관부문 및 성급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업무 감독, 심사평가
 - 식품안전 피해 점검 및 관리체제 완비, 식품안전 응급체계 구축, 응급예방책 마련,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및 책임조사 업무 감독지도
 -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업무를 규범지도, 홍보 및 연수 활동 전개, 식품안전 관련 국제교류 협력 추진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지시한 기타 업무 전개 등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에 종합사, 조화지도사, 감독점검사, 응급관리사 등 4개 조직을 설치하며 기관 당위원회 사무기구는 종합사에 설립함. 또한 기관행정편성 인원은 30명으로 규정하며 그 중 주임 1명, 부주임 1명, 사국(司局)급 영도 겸직 교사는 12명으로 규정하였고,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실무부서의 기관 재무, 지원 업무 인원 및 퇴직간부 관련 업무는 국무원 사무관리국에서 담당하도록 함.

□ 2010년도 4/4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10.8	發改價格 [2010]2363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기계테스트 검증비용 기준의 조정 및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國家發展改革委，財政部關於調整農機產品測試檢驗收費標準及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0.11	發改電 [2010]347호	2011년 밀 최저 수매가격 상승에 관한 통지 《關於提高2011年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10.11	國辦發 [2010]45호	국무원 판공청의 중국 열대작물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國務院辦公廳關於促進我國熱帶植物產業發展的意見》 / 국무원 판공청
10.13	農辦科 [2010]80호	농업부 판공청 “12차5개년계획”의 현대 농업산업 기술체계 건설 위탁기관 및 초빙인사 명단 공시에 관한 통지 《農業部辦公廳關於公示“十二·五”現代農業產業技術體系建設依托單位和聘任人員名單的通知》 / 농업부
10.16	發改辦能源 [2010]2520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농촌전력계통 개조 및 향상 항목 관리 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國家發展改革委辦公廳關於印發《農村電網改造升級項目管理辦法》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10.20	農辦農 [2010]116호	농업부 판공청 2010년 농작물 우량종 보조면적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통지 《農業部辦公廳關於核實上報2010年農作物良種補貼面積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10.25	農農發 [2010]7호	농업부 2010년 전국 식량생산 선진단위 및 개인표창 활동에 관한 통지 《農業部關於開展2010年全國糧食生產先進單位和個人表章活動的通知》 / 농업부
10.28	상무부공고 [2010]72호	2011년 농공산품 수출쿼터 총량 공표 《公布2011年農產品和工業品出口配額總量》 / 상무부
11.3	農機發 [2010]8호	농업부 취약한 기계화 부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기계·농업기술의 융합 강화에 관한 의견 《農業部關於加強農機農藝融合加快推進薄弱環節機械化發展的意見》 / 농업부 농업기계화 관리사
11.9	-	농업부 판공청 가뭄 대비 (새)싹 보호 및 동절기 대비 보리밭 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農業部辦公廳關於切實抓好抗旱保苗加強冬前麥田管理的緊急通知》 / 농업부 판공청
11.12	농업부 공고 제1482호	농약등록(을 위한) 잔류성 시험 기관 명단 《農藥登記殘留試驗單位名單》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11.22	농업부 공고 제1487호	대만지역 신청인이 대륙에서 식물신품종권을 신청하는 것에 관한 임시 시행 규정 《關於台灣地區申請人在大陸申請植物新品種權的暫行規定》 / 농업부, 국가임업국
11.25	농업부 공고 제1491호	국가급 수산종질자원 보호구역 명단 《國家級水產種質資源保護區名單》
11.26	농업부령 제10호	농업부 일부 규칙·규범성 문건의 폐지 및 실효선포에 관한 결정 《農業部關於廢止和宣布失效部分規章規範性文件的決定》
11.26	농업부령 제11호	농업부 일부 규칙의 수정에 관한 결정 《農業部關於修訂部分規章的決定》
11.30	國辦發 [2010]59호	동북지역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시켜 현대농업을 건설하자는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國務院辦公廳轉發發展改革委農業部關於加快轉變東北地區農業發展方式建設現代農業指導意見的通知》 / 국무원 판공청
12.6	-	일광온실(비닐하우스)채소에 대한 저온·우설·적은 일조량 등 재해 대비 기술지도 의견 《日光溫室蔬菜低溫雨雪寡照災害應對技術指導意見》 / 농업부 종식업 관리사(農業部種植業管理司)
12.10	農機發 [2010]9호	농업부 농기계 심경 정지(整地)작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투입에 관한 통지 《農業部關於落實補貼資金推進農機深松整地作業的通知》 / 농업부
12.16	-	농업부 판공청 전국 식량생산 선진단위 및 개인 모범표창 활동 개최에 관한 통지 《農業部辦公廳關於舉辦全國糧食生產先進單位個人標兵表彰活動的通知》 / 농업부 종식업 관리사(農業部種植業管理司)
12.17	-	《2009-2011년 국가가 보급한 농업기계 제품 목록》(2011년도 조정 공시문) 공시 공고 《《2009-2011年國家支持推廣的農業機械產品目錄》(2011年度調整公示稿) 公示公告》 / 농업부 농업기계화 관리사
12.29	財建 [2010]1014호	자동차 하향정책 기간 만료 후 집행정지 등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汽車下鄉政策到期後停止執行等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公安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12.29	농업부 해관 총서 공고 제1512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농약 관리 명단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農藥管理名錄》

농민공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1.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 국가통계국의 모니터조사¹에 의하면 2009년 전국의 농민공 수는 2억 2,978만 명으로 전년대비 1.9%(436만 명) 증가함. 외지취업과 현지취업 인구수는 각각 1억 4,533만 명과 8,445만 명으로 현지취업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외지취업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표 1. 중국의 농민공 규모

단위: 만 명, %

구분	2009년	2008년	증감	증감율
총 농민공수	22,978	22,542	436	1.9
- 외지취업	14,533	14,041	492	3.5
- 현지취업	8,445	8,501	-56	-0.7

자료: 국가통계국농촌사 “200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 중국의 농민공 문제가 대두된 배경으로는 ① 거대한 농민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의 특수한 국정(國情) ② 장기적으로 형성된 “1체제, 3제도”(계획경제체제, 인민공사제도, 농산물의 통일구매·통일판매제도, 도농간 분리된 호적제도), ③ 개혁개방이후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 등을 들 수 있음.

* 한창푸(韓長賦) 농업부장이 제시한 농민공 문제 해결방안을 수록한 “農業部部長韓長賦談解決農民工問題的基本思路” 「農民科技培訓」 2010年第11期: 4-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1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사(中國國家統計局農村司)는 농민공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말에 농민공 통계모니터조사제도를 시행하였고 2010년 3월에 “2009년도 농민공 조사보고서(200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를 발표하였음.

- 농민공 문제는 중국 현대화 과정 중에 농민의 이동취업, 농민의 소득증대, 농업농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시화, 공업화, 도농간 통합화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화의 순조로운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중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농민공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임금수령, 산재보험, 주택문제, 자녀취학 등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의 취업 기능제고, 취업 서비스 강화, 도시 진출 농민의 권익 보장, 취업환경의 개선, 농민공이 점차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을 지원해야 함. 농촌의 많은 잉여노동력을 이동시켜 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외에 농촌 노동력의 이동 후 농업의 생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 농민노동력을 공업, 서비스업 분야로 이전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조치 마련, 즉 한편으로는 대대적으로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역현(縣)의 경제와 농촌의 2차, 3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공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지원
 - 장기적으로 농민공의 외지 취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개혁을 추진

2. 농민공의 7대 문제

2.1. 농민공의 취업 문제

- 2008년 말 농민공의 “대거 조기귀향”과 2010년 초 “민공황(民工荒)”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는 농민공 취업여건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올해 초의 “민공황(民工荒)”문제는 2009년 하반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삼각주, 장강 삼각주 등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음. 그러나 현재 중국 농촌 잉여 노동력은 여전히 1억 정

도 규모로 앞으로 농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많은 잉여 노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촌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농민공의 취업을 위한 방안

- 농민공 직업기능 연수 전개: 기업 직원 수요와 농촌 노동력 연수 의지에 따라 농민공의 외지 취업 적응 능력, 취업 능력 및 창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사업을 진행. 이외에 2009년 중앙은 11억 위안을 출연하여 농촌 노동력 300만 명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농민공 취업 정보서비스 지원: 도농간 공공취업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농민공 공급지역은 외지취업 농민공을 위해 정책자문과 정확한 노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농민공 수요지역은 고용정보 게시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의 무료 개방.
- 농민의 현지취업 지원: 소형 도시, 현금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지역의 “물, 전기, 가스”등 사업의 발전, 농토수리와 표준농토건설을 전개함으로써 농민의 취업 기회를 증대. 노동집약형 산업, 농산물 가공업, 제3산업 및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 제공.
- 농민공의 귀향창업 격려: 농민공의 귀향 창업은 자신은 물론 고용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농촌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수 있음. 재정, 세제, 신용대출, 토지 등 분야의 지원을 통해 귀향농민들로 하여금 현대농업발전과 신농촌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규모의 종자재배업, 공상기업 창업이 고용기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2. 농민공의 임금 문제

-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외지취업 농민공의 월 평균 수입은 1,417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7%(77위안) 증가함. 농민공의 월평균 수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1,422위안으로 전년대비 5.2%(70위안) 증가했고 중부지역 1,350위안으로 전년대비 5.9%(75위안) 증가함. 서부지역의 경우, 1,378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5위안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율이 8.3%로 크게 증가함.

표 2. 2009년도 농민공 월평균 수입액

단위: 위안, %

지역	월평균 수입	전년도대비 증감율
전체	1,417	5.7
동부	1,422	5.2
중부	1,350	5.9
서부	1,378	8.3

- 현재 농민공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상승 속도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도시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음. 농민공의 소비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는 농민공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농민공의 노동은 긴 노동시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큰 기회비용을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월별 26일, 주당 58.4 시간이며 89.9%의 농민공의 주당 업무 시간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44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도시근로의 최소 1만 위안 정도의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공은 도시지역 근로자와 비교하여 의료, 양, 실업, 주택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민공의 임금수준은 국민소득 분배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개척 및 국내 수요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중국은 2억 3천만명의 농민공이 있는데 만약 매월 평균 임금의 100위안을 늘이고 농민공 고용기간을 10개월로 계산하면 매년 2,300억 위안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짐. 농민공의 임금 소비율이 비교적 높고 도시에서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한 소비 외에 대부분의 자금이 농촌으로 보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의 소비시장 확대에도 크게 공헌 할 수 있음.
- 현재 소득 분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이 첫 수입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 농민공 임금의 합리적인 상승 기제 구축해서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 속에서 농민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저임금제도 실시
 - 최저임금의 기준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농민공의 최저 임금기준을 정해야 함.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추진하고 일부 분산된 고용분야는 시간당 임금을 지정해야함.

- 중국 현행의 최저임금 수준은 성급 정부에서 확정하고 있음. 최근 북경을 포함한 11개 성과 시는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의 기준에서 10%이상 상향 조정하고 일부성과 시에서는 20%이상 상향 조정하였음. 북경시는 최저임금기준을 월별 800위안에서 960위안으로 조정하였고 비전일제 고용인은 시간당 9.6위안에서 11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음. 광둥성의 조정 후 평균임금은 21% 상향 조정하였음. 광둥시는 기업의 노동자 최저 임금기준을 월별 1030위안, 920위안, 810위안, 710위안, 660위안으로 5개 등급을 구분 제정하였음.
- 노동력 유입이 큰 성은 특히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함.
 - 기업의 “임금집체협상제도”의 시행
 - “임금집체협상제도”는 노동관계 주체인 쌍방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협상조정을 통한 형식으로 농민공의 권익과 안정적인 근로관계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
 - 현재 전국의 시급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공회(工會 : 노동조합),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관계 3자 협상체제가 건립되었는데 이중 공회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향후 임금의 분배, 근무시간 및 작업량 등의 노동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임금집체협상이 전면적으로 보급 실시해야 함.
 - 임금보장제도 확립
 - 임금지불모니터링제도와 임금보증금제도 등을 확립하여 농민공의 임금을 월별 정액 지불을 보장함.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실시해 개설은행 계좌에 정기적으로 임금 보증금을 예금토록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함. 농민공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엄중히 규제토록 함.

2.3. 농민공 자녀 교육 문제

- 자녀교육문제는 대다수 농민공에게 있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로서, 적지 않은 농

민공이 단순히 취업목적이 아닌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시로 가서 일하고 있음.

- 농민공 자녀들이 양질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08년 국무원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유입지 및 공립학교 위주가 그것임. 농민공 자녀문제는 도시공립학교의 부족과 농민공 자제학교 교육여건의 취약성이라는 2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농민공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도시의 공립학교가 부족하여 농민공 자녀의 입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또한 농민공 자녀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경비는 재정예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 농민공을 대상으로 받는 학비에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 교원의 질도 매우 낮아 심지어는 교원자격증도 없는 경우도 있음. 농민공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립교육과 사립교육 질을 개선해야 함.
- 농민공 자녀교육을 위한 예산마련 및 투자 확대: 농민공 자녀교육을 교육발전계획과 교육경비예산에 책정하여 실제 학교 재학 인원수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불하는 것임. 공립학교가 부족한 농민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지원을 늘려 교학여건을 개선시키거나 새로 공립학교를 설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수준제고: 농민공 자녀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조치 보다는 지원을 통해 정부 위탁을 받은 농민공 자녀학교를 통일적인 교원 자격연수와 교학관리를 통해 교원의 질을 제고시키고 점차적으로 공립학교와 동등한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토록 하는 것임. 농민공 자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면제하고 관련 보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적과 호적 분리: 농민공 자녀들을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하다가 농촌으로 보내 고등 교육을 받게 한다면 그들의 정상적인 교육과 건강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됨. 따라서 호적과 학적을 점차 분리시켜 우선적으로 농민공 호적소재 성지역 범위 내에서 농민공 자녀들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임.

2.4. 농민공 사회보장 문제

- 2003년 《산재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가 발표됨으로써 농민공이 산재보험 대상범

위 내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 탄광 등 고위험군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보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현재는 상업, 요식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보험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공의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 농민공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보장 범위나 수준이 낮은 편임. 2009년 말까지 농민공이 가입한 산재보험,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및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의 비율이 각각 24%, 19%, 12%정도에 불과했음.
-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와 농민공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농민공 산재보험 정책의 확대: 상업, 요식업, 숙박업, 가정 서비스 등 노동집약형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험의 보급을 가속화해야 함. 고용 관계가 발생하고 산업재해 문제가 생기면 조례규정에 따라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함. 농민공의 산재 인정과 감정 및 분쟁 조치 순서를 간략화해야 함. 산재 대우수준 특히 일차적 지원기준을 제고시키고 산재 혹은 직업병에 걸린 농민공이 도시근로자와 동일한 의료구조 및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농민공 의료보장제도 완비: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안정한 노동관계를 건립한 농민공들은 모두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제도에 포함이 됨. 기타 농민공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혹은 농촌 신형합작의료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고 기본 의료보장 관계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민공 양로보험제도의 확립: 농민공들이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함. 농민공 양로보험관계 전환연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도시 기업 직원의 기본 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 양로보험의 연속 정책을 연구·제정하고 귀향 농민공의 합법권익을 보장함.

2.5. 농민공 주택 문제

- 농민공 주택 문제가 부각된 배경 ① 농민공의 도시주택 매입 혹은 임대를 위한 경제

적 여력이 부족함. 건설부 조사에 의하며 현재 74.1%의 농민공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단가는 1평방미터당 3,000위안 이하에 불과하고, 76.2%의 농민공이 거주할 능력이 되는 월 임대료는 100~300위안 사이로 나타났다. ② 현행 도시 주택보장체계에 농민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민공은 경제실용방(經濟適用房)², 저렴한 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성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음. ③ 현행 용지정책은 농민공의 단체숙소(集體宿舍)의 건설을 제한하고 있음. 농민공집단숙소 건설을 위한 용지방식은 현행의 공업용지, 집단건설용지, 토지수매비축 등의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임.

○ 농민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농민공을 국가주택보장정책 체계에 포함: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 일정한 거주 연한이 있는 농민공을 정부의 염가 임대주택, 경제실용방, 한정가의 상품방을 구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 농민공 주택 임대시장 개선: 공업지역, 기업에서 농민공에게 적합한 임대용 사회화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고 소형 주택 임대시장을 건설하는 것임. 도시와 농촌 연결 지역에 계획을 통하여 집체 경제조직은 방치된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농민공 아파트를 건설함.
- 농민공 주택 공동적립금제도 건립: 주택 공동적립금제도는 전체 농민공을 대상으로하고 조건을 갖춘 농민공은 주택공동적립금 대출신청을 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임.
- 농민공 주택 부속제도 완비: 농민공 주택을 도시건설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중에 포함하여 농민공 주택 위치, 기초시설능력을 전면적으로 고려해 농민공 거주 지역이 대규모로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함.

2 경제실용방(經濟適用房)은 일종의 사회보장성 주택으로 정부가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실시한 보급형주택이다. 주택가격이 일반 상품방에 비해 저렴하고 주택설계 및 기준에 있어 실용성을 크게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2.6. 도시의 농민공 문제의 해결방안

- 현재 농민공은 중국 산업노동자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사실상 도시주민의 일부분으로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격리되어 있음. 정부는 경제 측면에서 농민공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관련 공공관리와 사회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농민공의 사회영입과 융합을 추진해야 함.
 -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호적제도의 개혁: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와 관계된 호적 제도는 농민공에게 불공평한 대우와 도시로의 융합을 막는 제도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음. 호적제도 개혁은 농촌 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민공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전제하에서 관련 각종 복지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호적제도 개혁의 방향은 중소형 도시, 소도시 특히 현급과 중심진(鎭)의 호적을 개방하고, 대도시 호적의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거주조건을 갖춘 농민공을 시민으로 전환시켜 취업, 주택, 과세, 사회보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도시지역사회 관리운영 주체로 포함: 현재 많은 농민공들이 도시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지만 도시인들과 차별이 있음. 농민공들의 집중 거주를 억제하고 농민공들을 분산시켜 도시 지역사회에 융합하도록 지원해야 함. 지역사회 관리는 농민공을 포함시키고 농민공들이 지역사회 관리 운영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함.
 - 도시의 공공서비스 시설, 특히 공공문화와 교육 시설을 농민공에게 개방함. 문화생활과 자질 교육은 도시 진출 농민공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현대문명, 도시문명 도시생활습관 등 분야에서 영향을 받도록 하며 사상, 문화, 습관의 도시화를 가속화함.

2.7. 농민공의 이동 후 농업생산발전 문제

- 현재 외지로 떠나는 농민공의 대부분이 청장년층인데 비해 남아 있는 농촌 노동력의 연령대가 높고 문화수준이 낮는데다가 부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일부 농촌에서는 40세 이하의 노동 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많음. 농촌 노동력의 이전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업경영방식의 혁신: 농촌 토지 도급권 개선을 통해 농민들이 규모경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식량종식대호, 양식대호를 배양하고 전문화, 집약화생산 발전을 지지하고 농민합작사, 농업산업화의 용두기업 등 신형시장 주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함.
 - 농업기계화 추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 기계를 도입하여 농업기계화 수준을 제고시켜야함.
 - 농업사회화 서비스 확립: 농업생산수단 배송, 기계 경작과 추수, 과학기술 보급, 농업 정보 등 농업생산성 서비스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함. 기층 농업기술 보급체계개혁과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농업 공공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 농업 서비스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농호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생산에 종사하며 각종 서비스 조직은 전문화 생산을 포함한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함. 미국은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인구가 전국 취업인원의 2%에 불과한데 비해 농업 관련 서비스분야의 과학 연구, 기술, 노무, 영업, 가공저장 등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15%에 달함.
 - 신형 농민 육성: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직업 농민육성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과학연구 학교와 농업직업학교를 무료로 설립하고 여러 형식의 농업기술 연수를 통해 농촌관리인재, 종양업 인재, 농기구 기술인재, 과학기술 리더, 농촌 중개인 등을 육성시켜야함. 이외에 도시 진출 농민공의 토지 도급 권익을 보장해야함. 농촌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자원, 유상원칙에 따라 농촌 토지 사용권의 양도를 유도하고 농민공들에게 더욱 많은 취업을 보장하도록 해야함.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 억의 농민공들이 토지, 농촌을 떠나 공업부문에 취업하고 도시에 융합되는 과정인 만큼 3년, 5년의 시간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농민의 비농업 분야와 도시로의 이동은 근로자와 시민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임. 중국의 이원구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도농간 격차, 공업과 농업간의 격차도 완화 될 것임. 이 과정에서 농민공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됨.

중국의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경영권 양도”의 영향

1. 중국의 농촌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낮은 도시화 수준

- 장기적으로 형성된 “도농간 이중구조(二元體制)”의 영향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음. 선진국의 도시화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으며 세계평균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음. 세계와 선진국의 도시인구 비중이 각각 49.2%와 80%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41.3%(2006년 기준)에 불과함.

○ 도시화에 대한 인식부족

- “경작지”를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을 중국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농촌의 전통관념 외에도 인구의 도시로의 대거 유입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계획경제시절 중국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제창한 “이토불이향(離土不離鄉)” 사상 등의 영향으로 많은 잉여노동력이 제한된 토지에 머물게 되었고 이는 또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옴.

○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의 도시적응의 어려움

- 정책 및 제도적 제한으로 도시로 진출한 농민공들은 사회보장, 취업, 교육, 위생, 주택 등 분야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해 도시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민공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미약, 낮은 문화수준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취업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0년 10월 12일 農村土地網(<http://www.nctudi.com/>)에 게재된 “我國農村城鎮化進程中土地流轉作用研究”의 내용을 본원 중국사무소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2. 중국 농촌의 토지이용 중 존재하는 문제점

○ 소도시 건설과정에서 조방적인 토지이용

- 소도시의 맹목적 확장으로 인한 심각한 경지점용: 중국 소도시의 건설과정에서 계획성 부족, 맹목적이고 임의적인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음. 소도시의 건설은 일반적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외향적인 건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문제는 이들 지역의 주변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우질 농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지를 일단 점용하면 보상이 불가능한데다 향후 해당지역의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낮은 토지이용 집중도: 소도시 건설 발전 과정 중에서 토지이용의 증가 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 발전 속도를 상회하고 있음. 소도시 건설용지 중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향촌 기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이용해 성장한 것으로 분산되어 있어 토지사용이 매우 조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계획성 부족으로 소도시의 용적율이 낮은 수준이고 주거용지가 총 건설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구 당 거주 면적도 대형 및 중형 도시들보다 높음. 낮은 집약도로 인해 소도시 인구 당 평균용지는 149평방미터로 일반적으로 대중 도시보다 45~6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조방적 토지이용

- 최근 몇 년 동안 농업현대화 건설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다수 농업은 아직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생산 토지의 이용도 매우 조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조방적인 토지이용을 가져온 배경으로는 낮은 과학기술 및 기계화수준, 적은 규모의 분산된 소농 경영 등이 있음.
- 높은 주거용지의 점유 규모: 전통적인 농촌 정원은 거주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보관, 농기구 방치, 식량 말리기, 가축 사육 및 간단한 농산물 가공 용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가는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였음.
- 농촌의 공동화 현상: 도시화의 발전으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농촌의 많은 농가가 빈 공터로 남아돌아 농지 이용율이 감소하고 있음.

3. 농촌 도시화과정에서 토지경영권 양도의 영향 및 해결과제

□ 토지경영권의 양도¹를 통한 농촌 도시화 추진

- 농촌 잉여노동력의 비농업 분야로의 전환
 - 농촌 토지경영권의 양도를 통해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비농업 분야로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즉,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잃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여 농지의 방치 등 농업생산의 저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토지경영권의 양도는 농촌노동력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농촌 산업 구조의 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농촌토지의 집약적 이용의 중요 조건
 - 농촌 토지경영권의 양도를 통해 토지자원의 집중적인(집약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농업생산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분산된 토지를 집중시켜 농업대ход들의 생산 적극성을 자극하여 생산자재, 농업기술과 경영관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규모 수익과 과학기술 수익을 실현을 가능케 함.
- 농촌 도시화 건설의 방향
 - 농촌 토지경영사용권의 양도를 통해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토지양도는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중심이 도시로 이전되면 “시민”과 “농민”이라는 이중적 신분과 도시와 농촌을 넘나드는 번거로운 생활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이로써 도시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농민공 자녀 취학문제, 농민공 의료보장문제, 농촌 노인부양 및 아동 양육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도농 이중구조를 근절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을 가능케 함.

1 “토지유전(土地流轉)”은 “토지경영권의 양도”로 토지청부경영권(혹은 도급경영권)을 보유한 농민이 토지의 경영권(혹은 사용권)을 다른 농민 또는 경제조직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 즉, 토지청부권(도급권)은 유지하되 토지사용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임.

□ 농촌 토지사용권 양도의 해결과제

- 토지사용권 양도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들이 토지사용권 양도의 필요성 및 농촌의 도시화와 농민 소득 증대에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시킴.
 - 정부는 토지양도 업무를 일종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중점 업무로 인식하고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함.

- 관리강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비농화(非農化)”현상 규제: 토지양도의 감시와 관리 강화 및 토지양도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토지양도 과정 중에서 농지의 감소 또는 용도 전환 등을 엄격히 제한함.
 - 농촌 거주 용지의 양도 추진: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거주 용지의 방치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전통관념 및 제도 제약으로 인해 거주 용지의 양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농촌 토지 이용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방치되어 있는 토지는 경작복구를 진행하고 거주용 토지의 양도를 추진해야 함.
 - 소도시의 토지 사용 규모 제한: 소도시의 건설은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토지 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해야 함. 소도시의 토지 사용 규모를 제한하고 소도시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을 추진함.

- 토지사용권 양도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 규정 및 제도 마련: 정부의 관련 부문은 양도행위에 규범을 제정하고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제도를 제정해야 함. 양도 주체, 양도 방식, 양도 과정 등 분야에서 법규정에 따른 농호들의 토지양도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농민공의 취업 장벽 해소: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도시의 제2차, 제3산업의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 제공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도시로 진출시 멸시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호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도시진출 농민들의 취업 능력제고: 농촌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자체 소질을 높이고 도시취업의 적응 능력을 제고시킴.
- 집체경제를 발전시켜 농업인구의 취업 추진: 농촌 집단 경제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통하여 농촌의 비농업 산업을 발전시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해야함.
- 농촌 사회보장체계의 확립: “사회주의 신농촌의 건설”과 연계된 사회 보장 체계를 확립시켜야함. 즉, 농촌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건립하고 양로보험제도와 의료보험 제도 등의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양도로 인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음.

“12·5계획(2011~2015)”기간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

1.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

“12·5계획(2011-2015)”시기 식량안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과학발전 관에 입각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식량생산의 확대는 현대농업 건설의 중요 과제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단계에서 식량생산의 확대는 현대농업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석유 가격의 파동, 식량위기 및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식량생산 확대를 정책의 핵심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7년 연속 식량증산은 이 같은 정부의 농업발전 정책의 중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식량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업화 및 도시화는 농업발전의 주요 추진동력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식량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식량생산이 농업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재정 및 농업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지만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전략과 농업발전 정책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식량생산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기초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에 있어 더욱 중요한

* 정부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본원 중국사무소에서 정리하였음.

의미를 지닌다. 식량은 일반소비품이면서 공업원료 및 전략물자 등 특수소비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량, 석탄, 전기, 석유 등은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자원인데 그 중에서도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 식량과 석유 모두 모두 결핍성 자원이지만 식량의 결핍이 초래하는 영향과 위험성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식량안보는 국가 경제 및 정치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 식량종합생산능력의 중요성

식량종합생산능력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물질적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합 경제력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식량종합생산능력의 국가 종합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식량의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 세계 식량위기에서 상당한 경제력 특히 과학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도 식량공급능력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식량의 종합생산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식량의 유효공급능력은 국가사회보장능력의 반영이다.

효과적인 식량공급능력은 국가사회보장의 핵심내용이다. 한 국가의 사회보장의 내용은 최저생활보장, 의료보장, 양로보장, 실업보장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식량의 유효공급능력을 기초로 한다. 식량공급은 국가의 중대한 민생현안으로 식량 유효공급능력을 구비해야만 충분한 사회보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화와 도시화 및 인구이동, 소비수요의 다원화 및 고급화로 식량의 유효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식량 유효공급은 총량수요 뿐만 아니라 품종구조 및 지역성, 계절성 수요도 보장해야 한다.

13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국제시장이 아니라 반드시 자체적인 수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와 돌발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식량공급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중국특색의 식량 생산체계, 저장체계, 공급체계 완비를 통해 식량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12.5”기간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

“12.5”기간에는 식량자급을 실현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식량생산의 1000억근증산계획(2009-2020년)>의 실시, 농업투입증가, 정책지원 확대, 농업기초시설 개선, 농업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식량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유효공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12.5” 기간 동안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이념 견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방침은 “삼농”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과 동시에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확대, GDP 증대, 재정수입의 확대만을 중시하고 현대농업건설, 식량안보, 농민의 장기적인 이익구현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즉, 농촌의 자원, 특히 경지, 담수, 자금 및 인재의 공급을 도시와 기업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지의 대량점유, 농촌자금과 인재의 외부유출 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농촌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의 개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현대농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2) “강농해농”정책 확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강농해농” 정책 효과는 매우 가시적이다. “12.5”기간에도 이러한 정책을 견지하면서 식량생산의 지원역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국가식량프로젝트 건설자금의 현, 시급 부담을 취소하여 중앙과 성급 재정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직접부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식량위험기금의 지방부담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정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특히, 식량생산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초시설건설 투자도 농업과 농촌분야, 주산지와 식량생산 기초건설 분야에 중점 투입함으로써 식량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식량생산 기능지역을 건립한다. 식량 주요생산지역 식량생산, 국가식량 안보의 기능 위치 정립을 확보하며 식량 주요 생산지역의 지방 재정보조를 강화한다. 중앙재정의 전이지불을 통하여 식량 주산지역의 지방재정 수입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식량생산 대현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품식량 보조 제도를 건립, 식량 주산지에 대해서는 한해 출고량에 따라 일정한 보조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삼농”에 대

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각 금융기구 현(시)급 이하의 지점 및 영업기관은 “삼농” 관련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생산은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 신용대출의 시효성(時效性)이 중요하다. 따라서 삼농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심사단계를 축소하여 농촌신용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3)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추진

현대농업건설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 “결정”에서 명확히 제기하였듯이 향후 중국농촌개혁 발전은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는 농촌개혁발전 과정 중에서 현대농업발전, 농업기초건설 강화,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농업의 발전방식 전환 등을 통한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의미한다.

첫째,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공급에 매우 중요하다. 농업 기초시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표준 농토, 농토수리, 유통기초시설 및 농업 생태환경건설을 강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산출율)을 개선시켜야 한다. 농업용 제조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농기구 등 농업장비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화의 요구에 따라 양종번육체계와 농산물 도매시장,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식량 물류체계와 신선농산물 냉동물류체계 구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절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 구조조정 및 농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대 농업건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품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대 농업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우위 농산물의 지역배치 계획을 실시하고 대중작물의 지역화배치, 원예작물의 집약화생산, 목축업의 규모화경영 및 농업산업화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재활용 및 자원화의 원칙에 따른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농업 및 농촌을 건설해야 한다.

셋째,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현대 농업건설의 중요한 일환이다. 농업 사회화 서비스의 공익성 지위를 더욱 확립하고 새로운 단계의 농업발전 수요에 맞는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용두기업, 농업 과학기술 인원 등 다양한 사회화 서비스 조직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중개서비스의 조직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농민전문합작사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민전문합작사는 농민들

로 하여금 국내외 시장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현대농업경영조직이다. 《농민전문합작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농민전문합작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산업, 재정, 금융, 세수 등 분야의 농민전문합작사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산업화경영을 확대해야 한다. 식량산업화경영을 추진하고 식량 주요 생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재배농민의 수익을 보존하며 재배의향을 고취시킴으로써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용두기업 및 심가공업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벼는 생산지역에서의 가공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분배체제를 최적화하고 식량 산업화경영을 격려한다.

(4)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구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식량안보는 현대농업건설의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단위당생산량과 총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첫째,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 기제 구축 및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 및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농업과학기술 투입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투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의 참여확대를 위한 대출 및 세수 등 분야의 우대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육성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인재를 육성시키고 농업과학 연구 프로젝트, 중점학과, 과학연구기지를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고급인재를 육성시켜야 한다.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중요 영역, 중요 농작물, 핵심기술 등 분야의 과학연구기술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유전자 신품종 육성기술의 중대 프로젝트의 추진 및 R&D 확대를 통해 고생산, 고품질, 고효율의 유전자 신품종을 육성하고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요 농작물의 잡곡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두기업이 국가의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경지보호 및 “18억 무 경지면적” 레드라인 견지

첫째, 보다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통한 경지의 공업화, 도시화, 난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용지절약제도를 실행한다. 용지절약제도는 공산당의 17기 3중 전회에서 처음으로

로 제기한 제도로 경지보호제도와 더불어 중국의 경지보호와 이용분야의 주요 제도이다. 이밖에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의 총규모 규제, 농촌주택기지제도 마련, 주택기지관리, 법에 근거한 농민의 주택기지물권보호 등이 있다.

셋째, 경지보호책임제를 마련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의 성, 시, 현 등 3급 행정책임제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지도역량평가에서 경작지 보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도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즉, 평가는 각 지역의 국내총생산 및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경지보호 성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각급 간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과학발전관을 바탕으로 식량생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경지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주요 식량생산지역은 모두 식량생산발전과 공업발전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데 식량생산발전을 추구한다면 경제의 더딘 성장과 재정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공업발전을 추구한다면 경제의 빠른 성장과 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지점용과 식량생산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식량주산지의 지방정부 경제보호를 격려, 유도를 통한 식량생산 확대가 중요하다. 즉, 경지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주산지가 식량생산 확대와 더불어 경제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6) 식량가격형성기제 구축을 통한 식량가격의 적정수준 유지

식량가격형성기제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합리적인 식량가격기제의 구축은 농민의 식량재배의 의향 고취, 농민소득의 증대, 식량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도농간 소득분배 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식량 등 농산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비교가격관계를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중국의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농자재 가격, 기타 주요 농산물 가격 및 국제시장의 식량가격 등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식량 가격의 상승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과 농민의 식량재배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보호제도의 구축, 최저수매가격의 인상, 기타 주요 농산물의 가격보호방안 확대, 합리적인 농산물가격 수준 유지, 농산물의 수출입 효과적인 기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구제역 대응책 개요

□ 기본 정책: 예방 중심 정책

□ 사전 예방 대책

- 구체 조치
 - 모든 대상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강제성)
 - 비용은 국가가 부담
 - 대상가축: 소, 돼지, (양)
- 한 개 촌(村)에 한 명의 동물방역원 배치
 - 대규모 양축장은 자체 수의사 또는 방역원을 두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촌 단위의 방역원은 주로 마을 내 소규모 양축장의 가축을 대상으로 삼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조사단능 구성하여 실태조사 수행
 - 정부방침에 따라 백신예방접종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실사

□ 사후(구제역 발생시) 처리 대책

- 살처분 후 매몰 또는 소각
- 보상 처리

- 보상은 시가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나 시기, 정도, 규모 등에 따라 보상수준이 다름.
 - 통상적으로 시가의 60~70%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시가가 낮을 경우 보상비율이 높고 시가가 높을 때는 보상비율이 낮게 책정됨.
- 구제역 발생 이후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지방정부로서는 그 지역에 구제역 발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경우 발생.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

1.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

1.1. 식량 생산

-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감산추세를 이어오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연속 증산을 실현하였음.
 - 식량생산량이 2004년의 4억 6,947만 톤에서 2007년의 5억 148만 톤, 2010년의 약 5억 3,000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 품종구조로 보면, 2003년 이후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03년 이후 밀과 벼의 증산폭이 각각 33.1% 및 21.44%인데 비해 옥수수의 증산폭은 41.56%에 달함.
- 지역구조로 보면, 2003년 이후 식량생산 증산폭이 큰 지역은 주산지>균형지>소비지(대도시) 순으로 점차 주산지 위주로 집중화 되고 있음.
 - 2003년 식량 주산지의 식량생산량은 2003년 3억 578만 톤에서 2009년 3억 9,710만톤으로 29.86% 증가한 반면 균형지는 10.33% 증가한데 그쳤고 소비지는 -1.66%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1.2. 식량 소비

- * 2010년 12월 8일 본원 중국사무소에서 개최한 제5회 한중농업포럼 주제발표(馬曉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번역·정리한 것임.

- 중국의 식량 소비량은 1998년의 4억 6,475만 톤에서 2009년의 5억 2,000만 톤으로 11.9% 증가하였음. 그중 식용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료용, 공업용 및 에너지용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1.3. 식량 수출입

- 곡물은 1998년에 501만 톤의 순수출을 실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183만 톤의 순수입이 이루어짐. 그중 대두는 1998년 17만 톤의 순수출에서 2009년에는 4,220만 톤의 순수입이 이루어졌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식량 순수입 물량이 2009년 4,403만 톤에 달한데 이어 2010년에는 약 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WTO 가입 이후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곡물은 대두>면화 순임.

1.4. 중국의 식량 수급상황

- 1998~2009년 기간 동안 중국의 식량 공급은 고-저-고의 “U자형”으로 나타남.
 - 특히 2009년의 소비량을 제외한 공급량인 1,028만 톤에는 재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로 재고분을 포함한다면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식량안보 상황은 지난 2003년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대두를 제외한 식량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곡물 안보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식량 공급량이 이와 같이 충분한 상황에서 식량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생산비용의 증가, 국제가격 상승, 국내소비수요의 증가(특히 에너지, 공업용 소비수요의 증가)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2. 중국의 식량안보 추이 전망

- 향후 5년내 고-저-고 주기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수요측면에서 중국의 인구증가, 일인당 소득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주기 파동, 경지 및 수자원 부족 및 정책적 한계비용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음. 식량의 지역 및 품종 구조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남.

- 도시화로 인해 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남방에서만 쌀 소비가 컸으나 현재는 북방지역에서도 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방지역의 경지 축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향후 5년 안에 식량의 수급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식량안보상의 과제

○ 중국의 식량안보에 있어 경지 및 수자원의 감소, 식량 생산비 증가, 과학기술의 정체 및 식량행정관리체계의 미비 등은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임.

- 신장, 강소성 등 지역은 경지는 있지만 수자원이 부족하고, 광둥지역은 수자원은 풍부하나 적합한 경지가 부족한 실정임.
- 농민의 순이윤을 살펴보면 2004년의 196.50위안에서 2009년의 192.35위안으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식량 생산비의 증가는 농민의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농민의 식량 재배의 동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식량재배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현재 농촌에는 노인 및 부녀자 등만 남아 있어 식량재배에 어려움이 가중됨.
- 농업부문의 과학기술 투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수가 적고, 농업과학 기술의 보급률이 낮음. 특히 식량재배 부문의 과학기술 보급률이 크게 낮은 실정임. 지식, 자본을 보유한 젊은 계층의 이농률이 높음.
-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채람자(菜籃子)”, “미따이즈(米袋子)” 등의 성·시장책임제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식량안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체계에도 문제가 있음. 낮은 식량 가격은 도시지역의 대규모 식량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식량 가격체계의 중요한 주체는 정부, 소비자, 생산자로 농민이 제외되고 있어 농민의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임.

4. 중국의 국가 식량안보능력 강화 전략

- 중국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배면적, 화학비료를 제외한 기타 자재의 투입, 화학비료 투입 및 재해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 재배면적이 식량생산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식량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중앙은 대규모 상품식량기지건설 투자, 국가우수품질식량산업프로젝트 등의 투입규모를 확대해야 함.
- 또한 향후 매년 중앙재정수입 증가분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주산지 식량종합생산능력 건설에 사용해야 함. 소비지가 식량을 수입할 경우 해당 식량을 수입하는 성(시, 자치구)으로부터 수입식량 1근(500그램) 당 1각을 수취하여 주산지 상품식량생산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등 식량 주산지와 소비지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식량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 경지와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부의 식량생산 관련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보조, 종자보조, 농기구 보조 등의 4대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농민의 식량생산 의욕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또한 최저 수매가격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 현재 하남성, 호북성 등 지역의 최저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최저수매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 외에 비식량식품의 생산 등 식품의 다양화와 합리적인 정부의 식량 조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한 중앙의 부담을 분산시켜 식량 비축(재고)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질의 및 응답>

○ 주중한국대사관 김진진 농무관

- 질문: 향후 대두의 수입 증가 추세의 지속여부 및 중국의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의 유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 답변: 현재 대두의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동부지역의 대두 작황이 어려워 향후 대두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곡물의 수출쿼터에 있어서는 정부는 수출을 위한 수출이 아닌 국내 수급 균형을 통한 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만약 국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KIEP 중국사무소 양평섭 소장

- 질문: 식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도 변동적인 상황 하에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있는지?
- 답변: 중국의 식량문제는 지난 1958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 현재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정부로 식량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음.

○ 주중한국대사관 최재천 1등 비서관

- 질문: 2003년 이후로 식량이 증산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 답변: 중국 식량증산은 2006년 이후 정부의 정책 즉, 성장책임제, 보조금 실시, 식량증산 장려정책 등 각종 농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음.

○ 정월식(북경대 박사과정)

- 질문: 외국 자본 투입에 의한 중국식량 안보의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답변: 현재 싱가포르, 미국 등 곡물 메이저 기업이 동북 허남지역에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음. 또한 품종으로 대두나 대두유 등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곡물의 비중은 크지 않음.

○ 정정길(KREI 중국사무소장)

- 질문: 중국 국가에서 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있는지?
- 답변: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식량자급률은 95%임. 현재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식량에 대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급률이 크게 달라짐. 대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95% 유지가 가능하나 대두를 포함한다면 92% 내외 수준임.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 가격 동향
 - 무역 동향
- 양념채소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0년 1~12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산업별 GDP는 1차 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였고, 2차 및 3차 산업도 각각 12.2%, 9.5% 증가하여 2010년 3/4분기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농업GDP는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였음. 2010년 2/4분기 대비 증가율폭이 소폭 증가하였음.
 - 농업부문별로는 임업GDP와 어업GDP 증가율이 6.9%, 5.1%로 가장 높았고, 재배업GDP 증가율이 3.8%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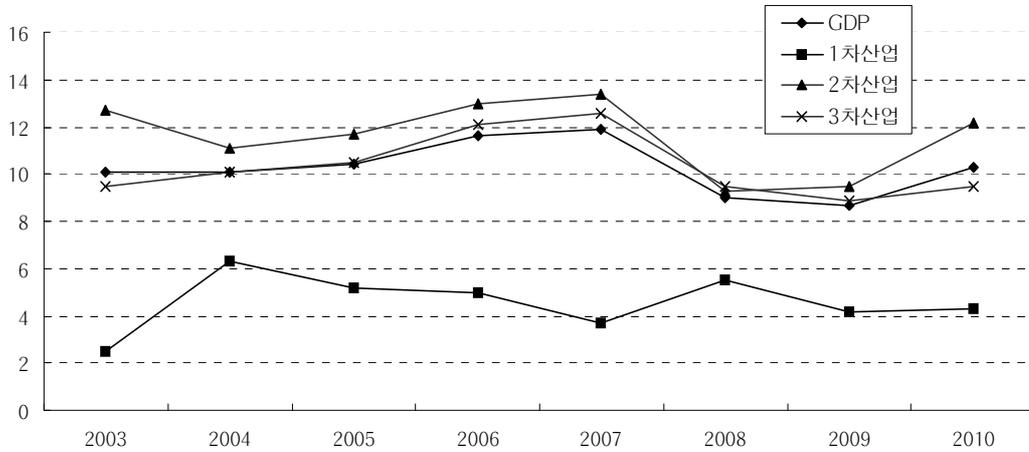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2월
GDP 성장률	10.4	11.6	11.9	9.0	8.7	11.9	11.1	10.6	10.3
1차산업	5.2	5.0	3.7	5.5	4.2	3.8	3.6	4.0	4.3
- 농업 전체	5.7	5.4	3.9	-	3.8	4.1	3.8	4.2	-
·재배업	4.1	5.4	4.0	-	2.2	2.9	2.6	3.8	-
·임업	3.2	5.6	6.9	-	4.9	3.6	5.4	6.9	-
·축산업	7.8	5.0	2.3	-	4.9	5.1	4.5	4.0	-
·어업	6.5	6.0	4.8	-	3.2	4.0	4.4	5.1	-
2차산업	11.7	13.0	13.4	9.3	9.5	14.5	13.2	12.6	12.2
3차산업	10.5	12.1	12.6	9.5	8.9	10.2	9.6	9.5	9.5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GDP 성장률 변화 추세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10년 1~11월 중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음. 2010년 1/4분기 및 2/4분기 대비 증가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경공업과 중공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및 국유기업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6%, 16.7%, 14.2%로 1/4분기 이후 증가율이 감소추세에 있음.
- 사영기업, 주식회사의 부가가치는 증가율은 각각 19.8%, 16.9%로 공업부문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음.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1월
부가가치성장률	16.4	16.6	18.5	12.9	11.0	19.6	17.6	16.3	15.8
경공업	15.2	13.8	16.3	12.3	9.7	14.1	13.6	13.6	13.6
중공업	17.0	17.9	19.6	13.2	11.5	22.1	19.4	17.5	16.7
국유기업	10.7	12.6	13.8	9.1	6.9	19.9	17.7	15.1	14.2
사영기업	25.3	24.4	26.7	20.4	18.7	22.8	20.8	20.0	19.8
집체기업	12.4	11.6	11.5	8.1	10.2	13.0	10.2	9.4	9.3
- 주식합작기업	16.0	15.5	17.5	11.4	10.3	14.5	13.3	13.6	13.7
- 주식회사	17.8	17.8	20.6	15.0	13.3	20.8	18.8	17.3	16.9
- 직접투자기업	16.6	16.9	17.5	9.9	6.2	18.8	17.0	15.8	14.9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2. 고정자본 투자

- 중국의 총고정자본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도시 고정자본 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1~11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4.9% 증가했음. 3/4분기 대비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1/4분기, 2/4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음.
 - 산업별로는 1차 산업(농림목어업)이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2차 및 3차 산업은 각각 22.7%, 26.9% 증가하였음.
 - 1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10년 3/4분기 대비 0.9%포인트 감소하였음. 반면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10년 3/4분기 대비 각각 0.7% 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였음.
 -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은 2010년 3/4분기 대비 2.8%포인트, 3.4%포인트, 2.3%포인트 증가했음. 연초제조업은 2010년 3/4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11월에도 -6.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은 2010년 3/4분기 대비 1.5%포인트 감소했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1월
투자 성장률	27.2	24.5	25.8	26.1	30.5	26.4	25.5	24.5	24.9
1차산업 (농림목어업)	27.5	30.7	31.1	54.5	49.9	9.7	17.8	17.7	16.6
2차산업	38.4	25.9	29.0	28.0	26.8	22.4	22.3	22.0	22.7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62.9	31.6	37.6	25.7	38.2	25.5	22.7	25.9	28.7
- 식품제조업	48.2	42.6	26.1	17.8	32.4	31.5	23.6	23.9	27.3
- 음료제조업	38.2	58.2	30.2	22.4	22.4	32.4	30.9	24.7	27.0
- 연초제조업	10.5	20.8	2.4	20.9	63.7	47.5	28.0	-9.0	-6.0
3차산업	20.0	23.3	23.2	24.1	33.0	30.0	28.4	26.7	26.9
이 중									
- 숙박, 외식업	55.1	37.4	41.2	30.5	34.4	20.9	22.7	27.5	26.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비

- 2010년 1~11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증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18.7%, 농촌 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했음.
- 분야별로는 소매업이 전년 동기대비 18.4%, 외식업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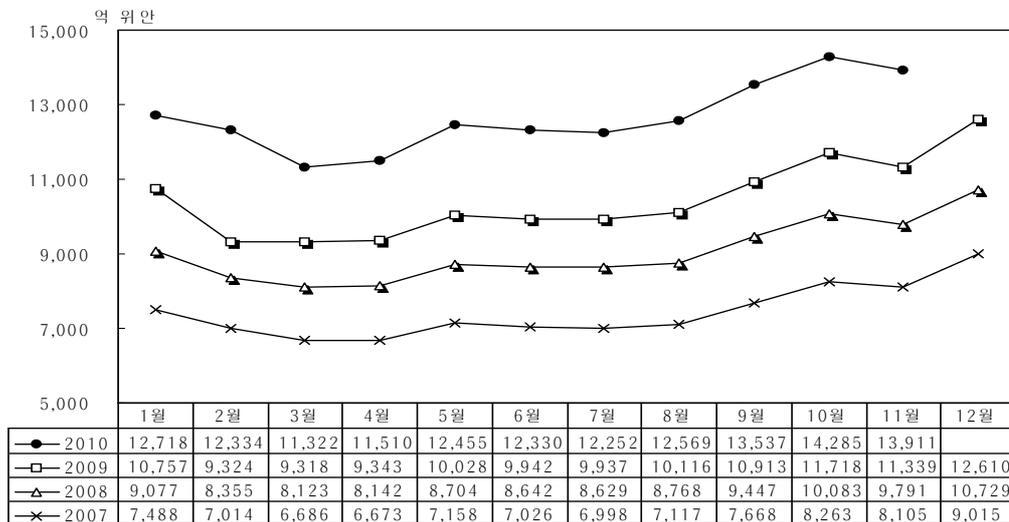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1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2.9	13.7	16.8	21.6	15.5	17.9	18.3	18.3	18.4	
지역별	도시	13.6	14.3	17.2	22.1	15.5	18.4	18.7	18.7	18.7
	농촌	-	-	-	-	-	15.4	15.9	15.8	16.0
업종별	소매업	-	-	-	-	-	18.1	18.4	18.4	18.4
	외식업	-	-	-	-	-	16.7	17.7	17.6	18.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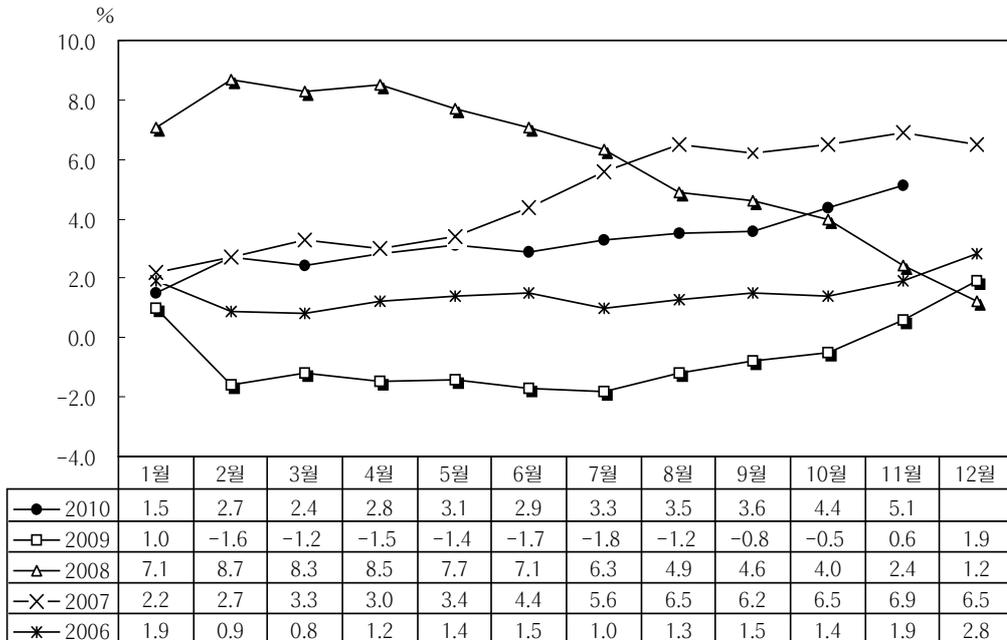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 물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 2010년 1~1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2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 99.3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10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함.¹
 - 2010년 1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1.5%이었으나 11월 증가율은 5.1%로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1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가격 33.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3.9%, 의류 및 복장 가격 9.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10.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6.0%,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14.2%, 교통 및 통신 가격 10.4%, 주택(거주) 가격 13.2%임(<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이 중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0% 정도이며, 돼지고기가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임.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1월
소비자물가지수	101.5	104.8	105.9	99.3	102.2	102.6	102.9	103.2
식품	102.3	112.3	114.3	100.7	105.1	105.5	106.1	107.0
-식량	102.7	106.3	107.0	105.6	109.5	110.4	110.9	111.4
-육류·가금 및 그 제품	97.1	131.7	121.7	91.3	97.6	98.9	100.9	102.2
-가금 알	96.0	121.8	104.3	101.6	106.9	104.1	105.8	107.3
-수산물	101.2	105.1	114.2	102.5	106.4	106.1	107.0	107.8
-신선채소	108.2	107.3	110.7	115.4	120.4	120.5	120.2	121.3
-신선과일	121.5	100.1	109.0	109.1	115.9	114.1	112.2	114.0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0.6	101.7	102.9	101.5	101.6	101.7	101.6	101.6
의류 및 복장	99.4	99.4	98.5	98.0	99.1	98.9	98.9	98.9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1.2	101.9	102.8	100.2	99.1	99.3	99.7	99.9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1.1	102.1	102.9	101.2	102.4	102.7	102.9	103.1
교통 및 통신	99.9	99.1	99.1	97.6	99.9	99.7	99.7	99.7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99.5	99.0	99.3	99.3	99.9	100.0	100.6	100.6
주택(거주)	104.6	104.5	105.5	96.4	102.9	104.0	104.1	104.3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10년 1~11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의료 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1.6%, 3.1%, 0.6%, 4.3% 상승하였음.
- 반면 의류 및 복장 가격,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교통 및 통신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 0.1%, 0.3% 하락하였음.
- 2010년 1~11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7.0% 상승하였음. 이는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식량, 가금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4%, 7.3%, 7.8%, 21.3%, 14.0%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임.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0년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107.9으로 전년 동월대비 7.9% 상승하였음. 기업 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부터 하락폭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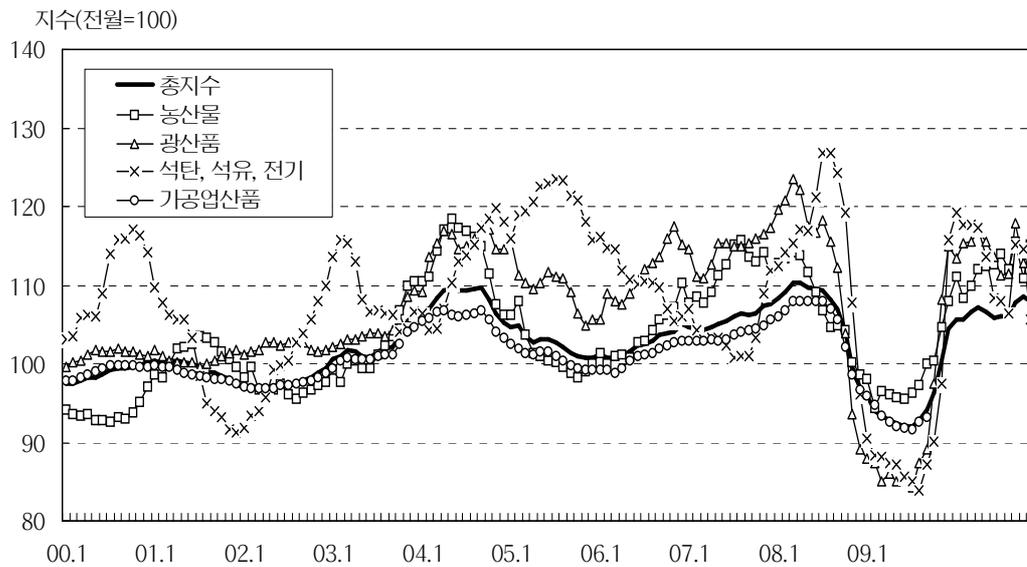
구 분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지수	104.5	105.7	105.6	106.6	107.1	106.6	105.9	106.0	106.1	107.8	108.6	107.9
농산물	107.9	111.1	108.3	110.0	112.0	112.5	112.6	113.9	112.0	115.6	117.9	115.1
광산물	114.9	113.4	115.4	115.6	116.8	115.5	113.5	111.2	111.4	110.8	112.8	114.5
석탄, 석유, 전기	115.8	119.2	117.7	117.6	117.3	113.5	108.4	108.0	106.4	107.3	107.4	105.6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상품별로 보면 2010년 12월 농산물과 광산물 그리고 석탄, 석유, 전기 상품의 가격지수는 각각 115.1, 114.5, 105.6로 전년 동월대비 15.1%, 14.5%, 5.6% 상승하였음.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5. 무역

- 2010년 1~12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9,72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7% 증가하였음.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09년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0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증가율은 1/4분기 44.1%에서 4/4분기 34.7%로 감소추세에 있음.
- 동 기간 수출은 15,77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3,9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7%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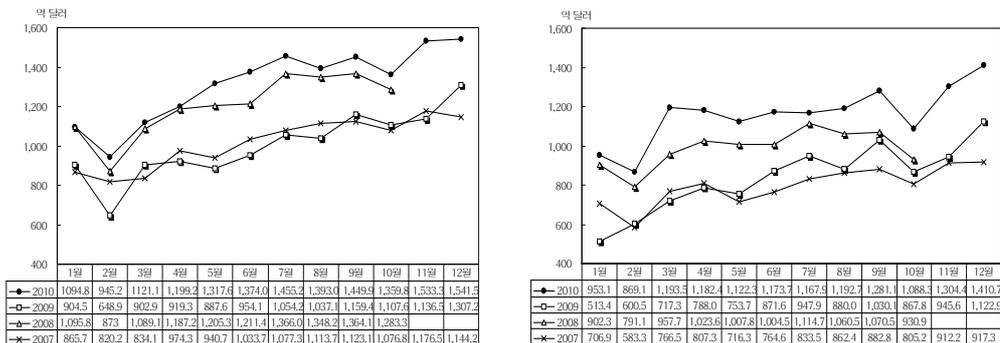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2월
수출입 총액	21,738.3	25,616.3	22,072.7	6,178.5	13,548.8	21,486.8	29,727.6
- 증가율(%)	23.5	17.8	-13.9	44.1	43.1	37.9	34.7
수출 총액	12,180.1	14,285.5	12,016.6	3,161.7	7,050.9	11,346.4	15,779.3
- 증가율(%)	25.7	17.2	-16.0	28.7	35.2	34.0	31.3
수입 총액	9,558.2	11,330.8	10,056.0	3,016.8	6,497.9	10,140.4	13,948.3
- 증가율(%)	20.8	18.5	-11.2	64.6	52.7	42.4	38.7
무역 수지	2,622.0	2,954.7	1,960.6	144.9	553.0	1,206.0	1,831.0
- 증가율(%)	47.7	12.5	-34.2	-76.7	-42.5	-10.4	-10.8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5.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0년 12월 광의통화(M2)는 72조 6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9.7% 증가하였음. 2010년에 1~5월에는 통화량 증가 폭이 20%를 상회하였으나 6~12월에는 17~19%에 머물렀음.
- 2010년 12월 협의통화(M1)는 26조 7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21.2% 증가하였음. 2010년 1~5월에는 통화량 증가 폭이 30%를 상회하였으나 6~12월에는 21~24%에 머물렀음.
- 2010년 12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4조 5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6.8% 증가하였음. 2010년 1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2월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10월부터 12월까지의 16%대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음.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의통화(M2) ³	6,256	6,361	6,499	6,566	6,634	6,739	6,741	6,875	6,964	6,998	7,103	7,258
-증가율(%)	26.1	25.5	22.5	21.5	21.0	18.5	17.6	19.2	18.9	19.3	19.5	19.7
협의통화(M1) ²	2,296	2,243	2,294	2,339	2,365	2,406	2,407	2,443	2,438	2,533	2,594	2,666
-증가율(%)	39.0	35.0	30.0	31.3	30.0	24.6	22.9	21.9	20.9	22.1	22.1	21.2
유통 중 현금(M0) ¹	408	429	391	397	387	389	395	399	419	416	423	446
-증가율(%)	-6.8	22.2	15.7	15.7	15.2	15.8	15.5	15.9	13.9	16.5	16.5	16.8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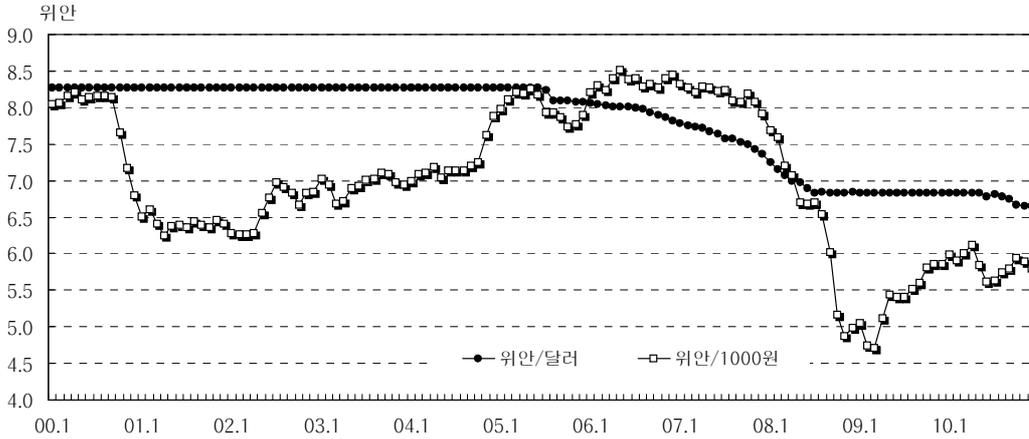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2010년 10월, 11월, 12월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6698, 6.6539, 6.6463 기록했음. 2010년에는 위안/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5.9382, 5.8945, 5.80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안/달러	6.8273	6.8270	6.8264	6.8262	6.8274	6.8165	6.7775	6.7901	6.7462	6.6698	6.6539	6.6463
위안/1000원	5.9956	5.9035	6.0074	6.1166	5.8428	5.6110	5.6271	5.7504	5.8042	5.9382	5.8945	5.8042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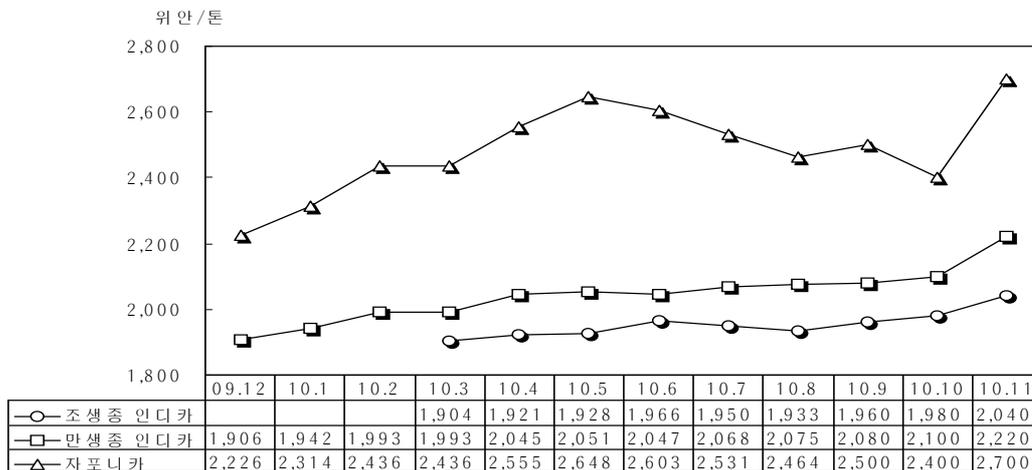
1. 식량작물

1.1. 쌀

1.1.1. 조생 장립종

- 2010년 10월, 11월 조생종 장립종쌀(조곡) 톤 당 수매가격은 1,980위안, 2,040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0.2%, 0.3% 상승했음.
- 2010년 10월 조생종 장립종쌀(정곡) 톤 당 도매시장가격은 3,04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전월 대비 2.3% 상승했음.

그림 1. 월별 벼 수매가격 추이(2009.12~2010.11)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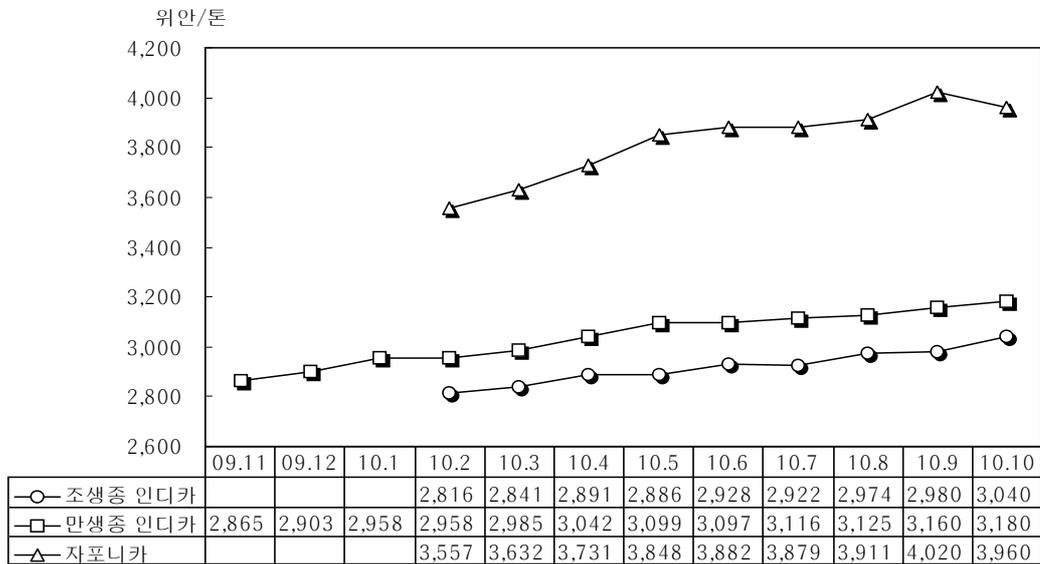
1.1.2. 만생 장립종

- 2010년 10월, 11월 만생종 장립종쌀(조곡) 톤 당 수매가격은 각각 2,100위안, 2,220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8%, 18.0% 상승했음.
- 2010년 10월 만생종 장립종쌀(정곡) 톤 당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3,18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전월 대비 1.1% 상승했음.

1.1.3. 중단립종

- 2010년 10월, 11월 중단립종쌀(조곡) 톤 당 평균 수매가격은 2,400위안, 2,70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2%, 26.3% 상승했음.
- 2010년 10월 중단립종쌀(정곡)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3,96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상승, 전월 대비 1.2% 하락했음.

그림 2. 월별 쌀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1~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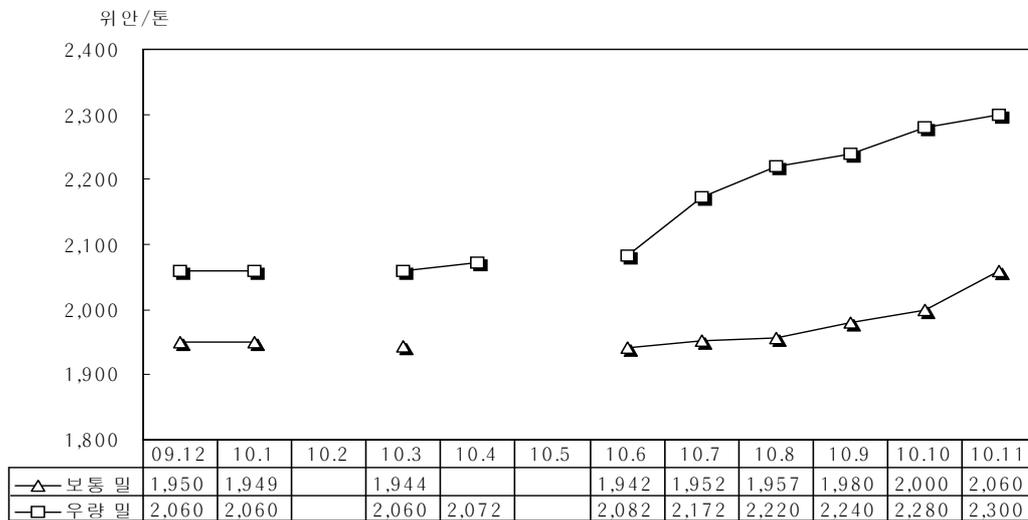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 밀

- 2010년 10월, 11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보통 밀 톤 당 평균가격은 각각 2,000위안, 2,060위안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10월, 11월의 보통 밀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5.9% 상승했음.
- 2010년 10월, 11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우량 밀 톤 당 평균가격은 2,280위안, 2,30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11.7% 상승했음.

그림 3. 월별 밀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2~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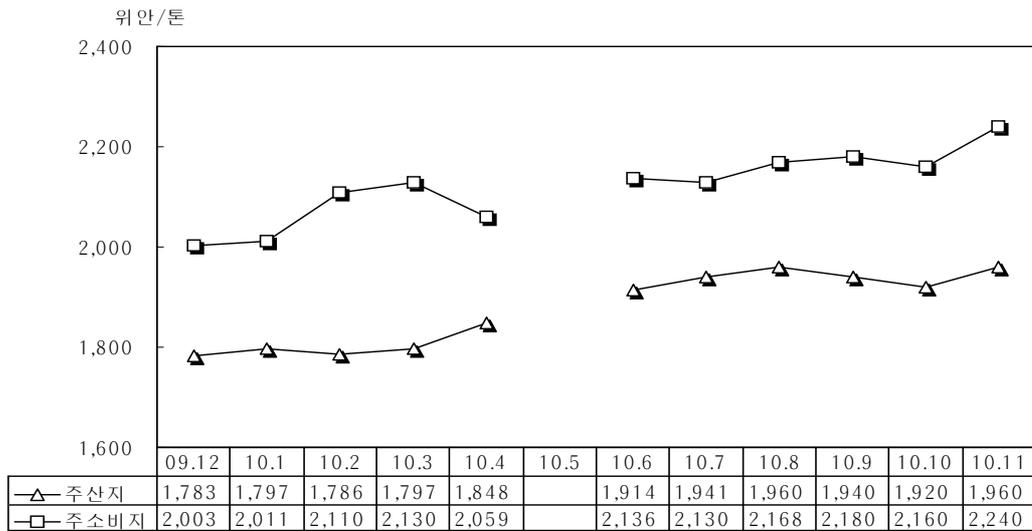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3. 옥수수

- 옥수수 주산지의 10월, 11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각각 1,920위안, 1,96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7%, 14.5% 상승했음.
- 동북지역 주산지의 10월, 11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각각 1,800위안, 1,880위안을 기록했음.

- 화북황해지역 주산지의 10월, 11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각각 1,940위안, 1,960위안을 기록했다.
- 옥수수 주소비지의 10월, 11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2,160위안, 2,24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9%, 13.5% 상승했음.

그림 4. 월별 옥수수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2~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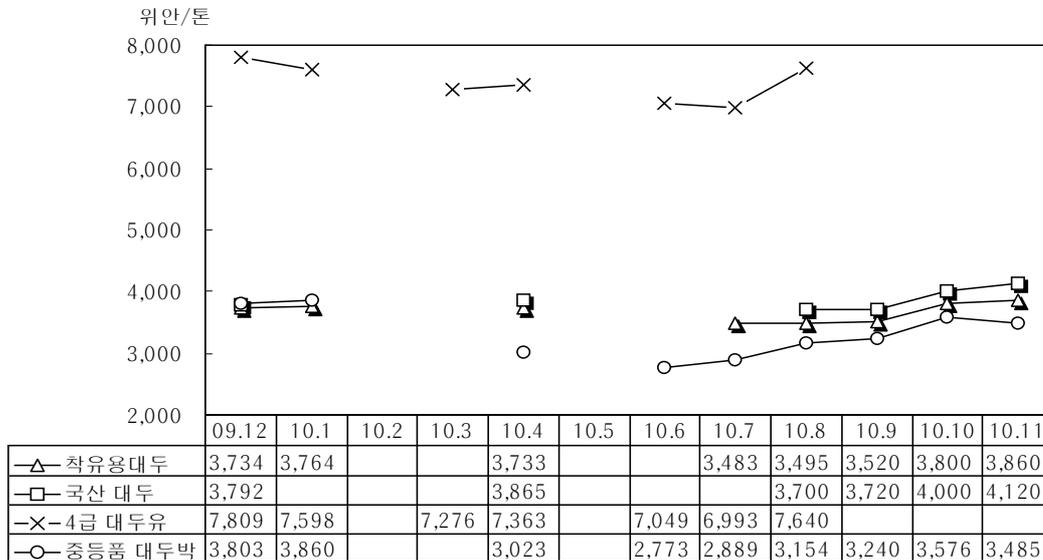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4. 대두

- 흑룡강성의 10월, 11월, 국산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 당 각각 3,800위안, 3,86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6.2% 상승했음.
- 산둥지역의 10월, 11월 국산 대두의 공장 수매가격은 톤 당 각각 4,000위안, 4,12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9%, 10.5% 상승했음.
- 산둥지역의 10월, 11월 중등품 대두박 공장출고가격은 톤 당 3,575위안, 3,485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상승, 4.2% 하락했음.

그림 5. 월별 대두 및 관련 제품 가격 추이(2009.12~2010.11)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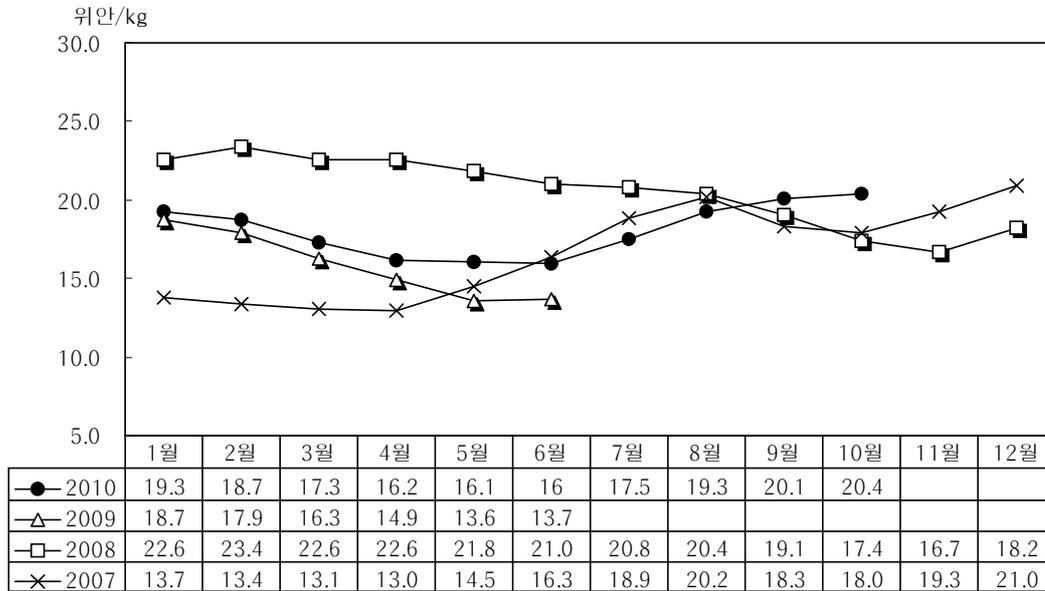
2.1. 돼지고기

- 2010년 10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20.4위안으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음.
 -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23개 성에서 상승, 7개 성에서 하락했음.
 - 서남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21.0위안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19.1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 2010년 10월 생돈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12.8위안으로 전월 대비 1.8% 상승했음.
 -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22개 성에서 상승, 8개 성에서 하락했음.
 - 화남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13.3위안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

당 12.3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6. 월별 돼지고기 가격 추이(2007.1~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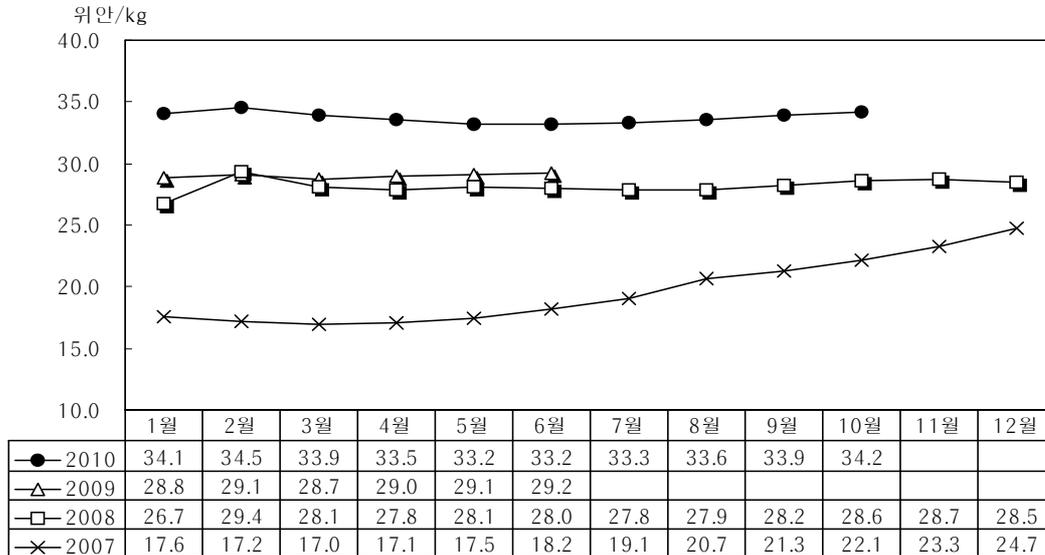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2. 쇠고기

- 2010년 10월 쇠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각각 34.2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한 것임.
- 하북(河北), 요녕(遼寧), 길림(吉林), 산둥(山東), 하남(河南) 등 주산지에서의 2010년 10월 쇠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31.8위안을 기록했다.
- 상해(上海),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둥(廣東), 강소(江蘇) 지역의 2010년 10월 쇠고기평균가격은 kg당 40.4위안을 기록했다.

그림 7. 월별 쇠고기 가격 추이(2007.1~2010.1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3. 양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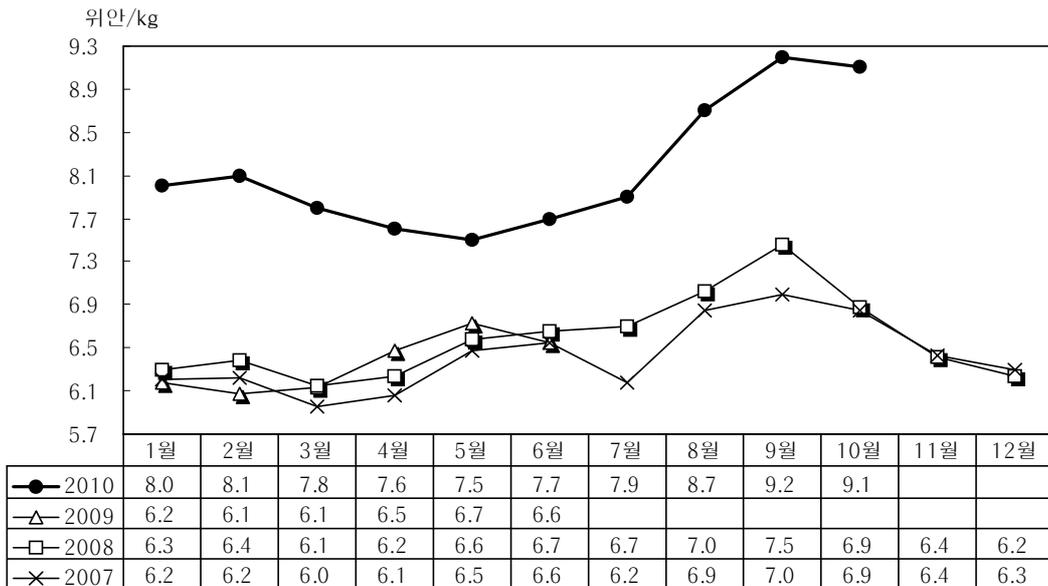
- 2010년 10월 양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각각 35.5위안으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하였음.
- 하북(河北), 내몽고(內蒙古), 산둥(山東), 하남(河南), 신강(新疆) 등 주산지에서의 2010년 10월 양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34.7위안을 기록했음.
- 상해(上海), 절강(浙江), 복건(福建), 강서(江西), 광둥(廣東) 지역의 2010년 10월 양고기 평균가격은 kg당 39.4위안을 기록했음.

2.4. 계란

- 2010년 10월 계란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9.1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2.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2.5% 상승한 것임.
 - 계란가격은 11개 성에서 하락, 19개 성에서 상승했음.

- 화북, 요녕 등 10개 계란 주산지의 계란평균가격은 kg당 7.9위안으로 전월 대비 5.9%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5.5% 상승했음.
- 화남지역의 계란 가격은 kg당 10.5위안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7.9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8. 월별 계란 가격 추이(2007.1~2010.1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가격 동향(2010.1~2011.1)

단위: 위안/kg

축산물	계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10.1.11-17	6.76	30.12	16.83	29.54
2010.1.18-24	6.92	30.56	16.85	29.68
2010.1.25-31	6.97	30.83	16.55	29.63
2010.2.1-7	7.01	31.11	16.2	29.78
2010.2.8-14	7.08	31.51	16.23	30.21
2010.2.15-21	7.09	31.6	15.94	30.87

(계속)

축산물	계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10.2.22-28	6.86	31.52	15.61	29.82
2010.3.1-7	6.68	31.48	15.39	29.58
2010.3.8-14	6.65	31.38	14.89	29.29
2010.3.15-21	6.61	31.55	14.61	29.41
2010.3.22-28	6.56	31.61	14.11	29.33
2010.3.29-4.4	6.52	31.26	13.78	29.24
2010.4.5-4.11	6.50	31.59	13.82	28.98
2010.4.12-4.18	6.47	31.81	13.68	29.09
2010.4.19-4.25	6.49	31.76	13.83	28.93
2010.5.3-5.9	6.54	31.91	14.07	29.12
2010.5.10-5.16	6.54	32.21	13.95	29.10
2010.5.17-5.23	6.38	32.49	13.86	29.07
2010.5.24-5.30	6.46	32.36	13.84	29.31
2010.5.31-6.6	6.55	32.18	13.80	29.40
2010.6.7-6.13	6.54	32.19	13.96	29.07
2010.6.14-6.20	6.70	31.87	13.97	29.08
2010.6.21-6.27	6.74	32.49	14.18	29.30
2010.6.28-7.4	6.70	32.49	14.47	29.22
2010.7.5-7.11	6.79	32.20	14.81	29.40
2010.7.12-7.18	6.92	32.18	15.66	29.45
2010.7.19-7.25	7.22	31.97	16.29	29.51
2010.7.26-8.1	7.61	32.38	16.91	29.59
2010.8.2-8.8	7.75	32.24	17.05	29.62
2010.8.9-8.15	7.91	32.56	17.09	29.71
2010.8.16-8.22	8.05	32.52	17.52	29.95
2010.8.23-8.29	8.23	32.39	17.47	30.15
2010.8.30-9.5	8.29	32.54	17.49	30.14
2010.9.6-9.12	8.39	32.65	17.75	30.12
2010.9.13-9.19	8.37	32.74	17.73	29.88
2010.9.20-9.26	8.29	32.61	17.81	30.00
2010.10.4-10.10	8.01	32.55	17.70	30.00
2010.10.11-10.17	7.91	32.41	17.68	30.27
2010.10.18-10.24	7.97	32.45	17.82	30.29
2010.10.25-10.31	8.10	32.91	17.84	30.31
2010.11.1-11.7	8.32	33.24	18.04	30.42
2010.11.8-11.14	8.56	33.60	18.27	30.72

중국농업동향

(계속)

축산물	계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10.11.15-11.21	8.68	33.94	18.74	30.92
2010.11.22-11.28				
2010.11.29-12.5	8.59	34.00	18.68	30.38
2010.12.6-12.12	8.64	34.95	18.77	30.49
2010.12.13-12.19	8.64	35.45	18.66	30.62
2010.12.20-12.26				
2010.12.27-1.2				
2011.1.3-1.9	8.63	36.17	18.68	30.94

자료: 農業部. 2010.1~2011.1 “農業部2010年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

참고자료

農業部. 10~11월 “稻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0~11월 “小麥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0~11월 “玉米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0~11월 “大豆市場監測信息”

農業部. 10~11월 “2010年全國畜產品, 飼料價格情況”

農業部. 2010.1~2011.1 “農業部1~40周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무역 동향

1. 한·중 간 농산물무역

- 2010년 1~12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량은 474.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수출액은 787.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9.3%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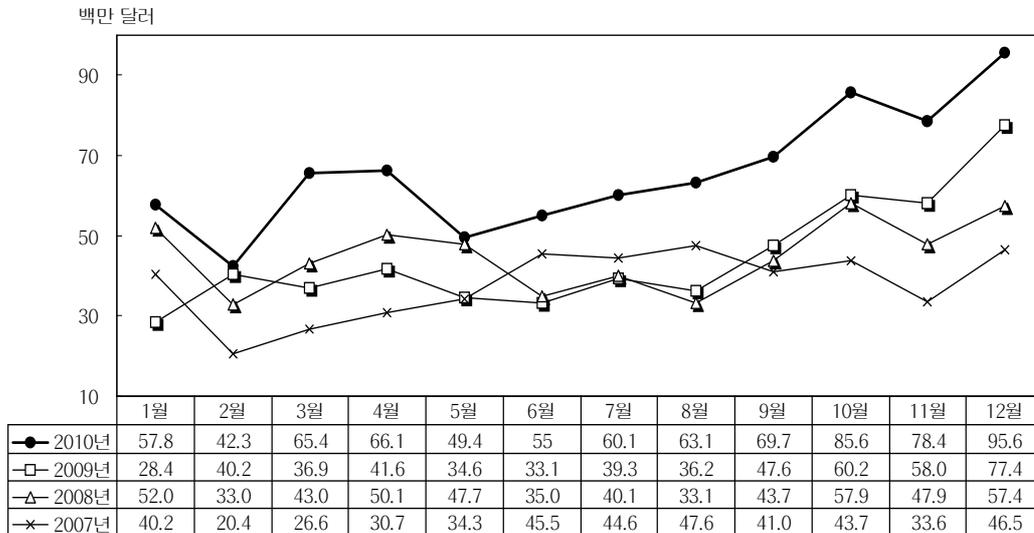
표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1-12월
·수출 총액	335.6	452.1	536.6	565.2	165.2	335.7	528.3	787.4
- 증가율(%)	△1.2	34.7	18.7	4.8	56.8	51.1	43.0	39.3
·농산물	216.4	257.4	300.3	326.7	94.8	204.4	306.2	446.6
- 증가율(%)	17.3	18.9	16.7	7.8	54.6	44.7	36.8	36.7
·임산물	37.7	30.4	31.5	74.3	25.0	36.7	62.9	86.2
- 증가율(%)	△6.9	△19.4	3.6	135.5	834.4	172.2	23.6	16.2
·축산물	5.3	6.8	14.5	18.6	4.6	6.3	13.7	23.4
- 증가율(%)	△13.9	27.4	113.4	28.4	113.5	△3.5	9.9	26.0
·수산물	76.1	157.5	190.3	145.7	13.0	88.3	145.6	231.2
- 증가율(%)	△29.9	106.9	20.8	△23.4	23.2	45.1	76.7	58.7
·수입 총액	3,236.1	4,173.4	3,627.1	3,676.0	1,031.8	2,119.4	3,061.8	4,323.2
- 증가율(%)	2.6	29.0	△13.1	1.3	24.8	16.8	14.6	17.6
·농산물	1,550.8	2,375.2	1,950.0	1,702.0	475.7	936.3	1,342.8	1,945.7
- 증가율(%)	△11.7	53.2	△17.9	△12.7	8.4	1.6	5.6	14.3
·임산물	554.8	625.0	587.8	1,077.9	257.9	602.0	910.3	1,228.5
- 증가율(%)	42.9	12.7	△6.0	83.4	38.4	30.9	20.2	14.0
·축산물	93.5	100.5	85.0	42.2	11.0	25.1	37.2	53.3
- 증가율(%)	31.3	7.5	△15.5	△50.4	0.4	15.5	19.8	26.5
·수산물	1,036.9	1,072.7	1,004.6	853.8	287.1	555.9	772.7	1,095.7
- 증가율(%)	10.5	3.4	△6.3	△15.0	50.6	35.0	26.4	28.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그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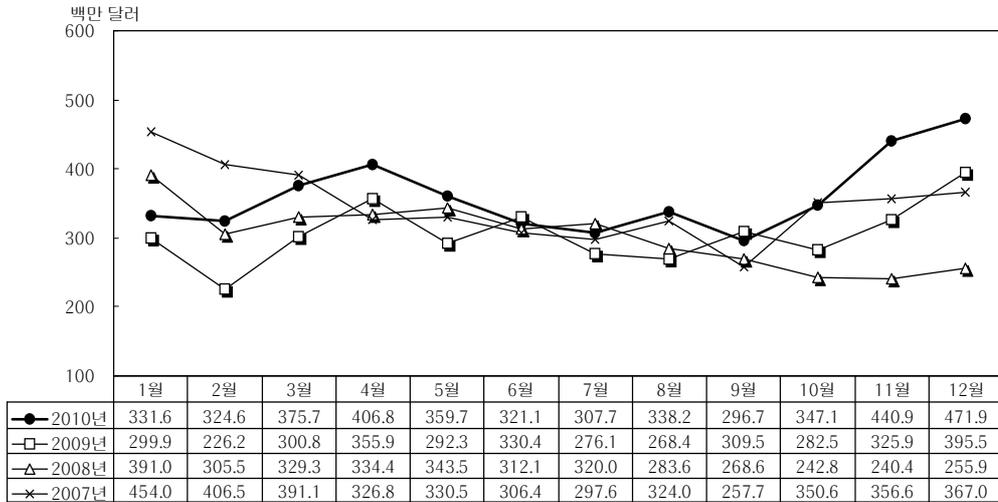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 2010년 1~12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농산물이 446.6백만 달러로 56.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산물이 231.2백만 달러로 29.4%, 임산물이 86.2백만 달러로 11.0%, 축산물이 23.4백만 달러로 2.9%를 차지했음.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6.7%, 16.2%, 26.0%, 58.7% 증가했음.

- 2010년 1~12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량은 6,9551.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수입액도 4,323.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했음.

- 2010년 1~12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액 가운데 농산물이 1,945.7백만 달러로 4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임산물이 1,228.5백만 달러로 28.4%, 수산물이 1,095.7백만 달러로 25.3%, 축산물이 53.3백만 달러로 12.3%를 차지했음.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3%, 14.0%, 26.5%, 28.3% 증가했음.

그림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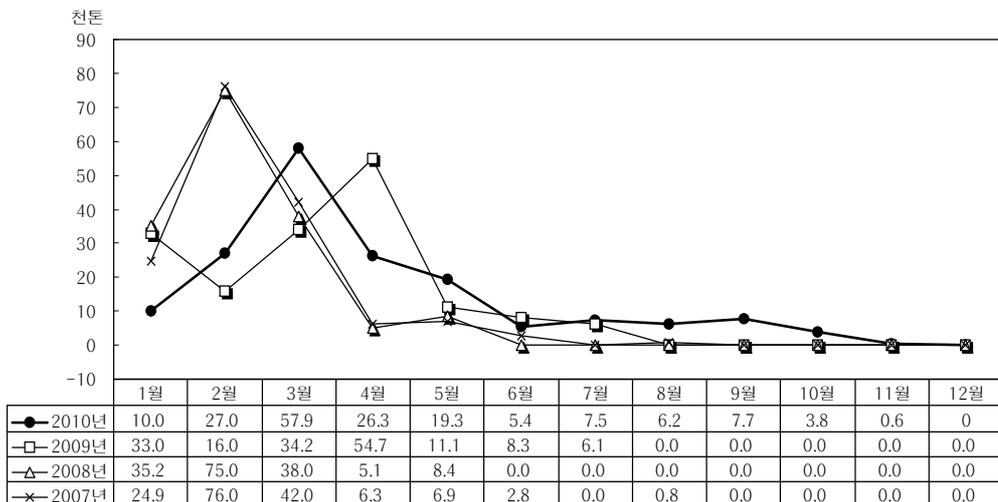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쌀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쌀(AG11101) 수입은 171.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13,618.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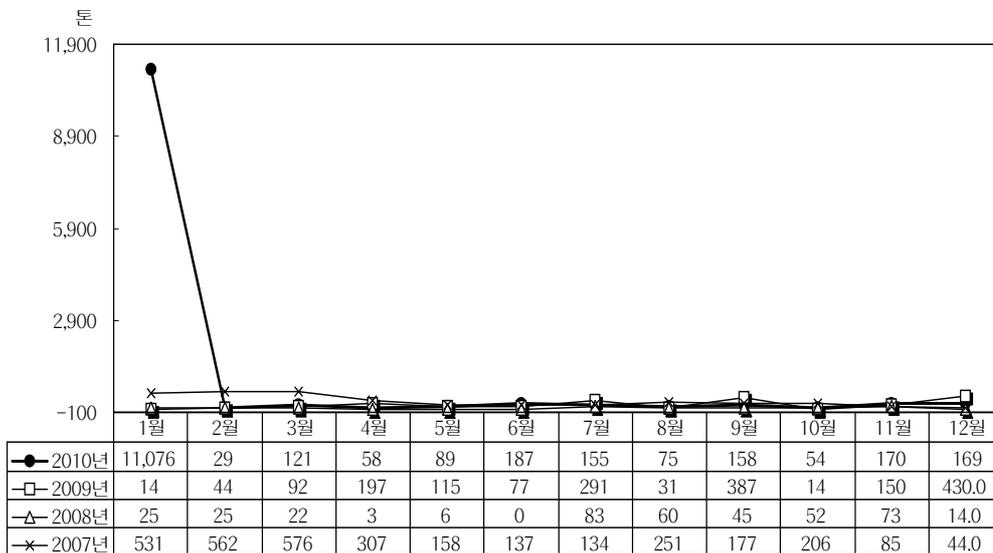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2. 옥수수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AG11105) 수입은 12.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5%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5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4.7% 증가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액은 각각 2.8만 달러, 7.8만 달러, 7.6만 달러임.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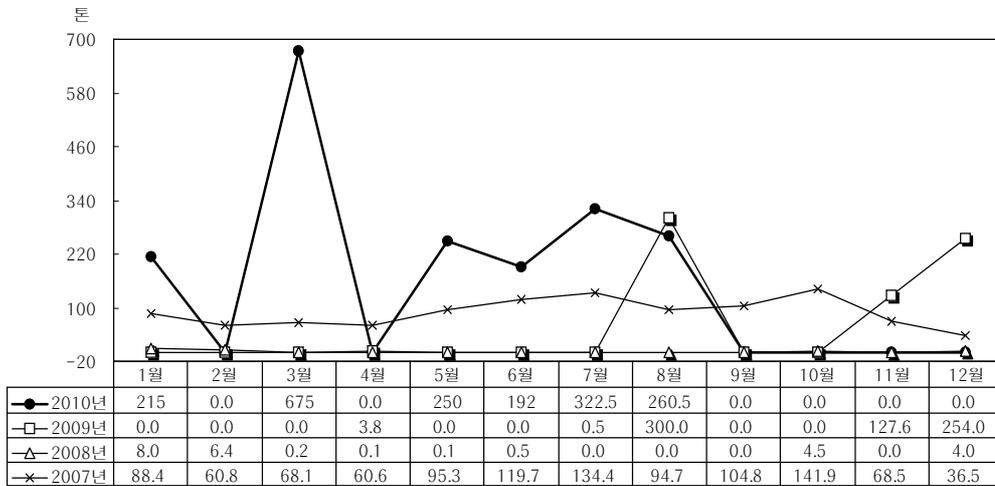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3. 밀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밀(AG11103) 수입은 1,915.3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9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2.7% 증가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에는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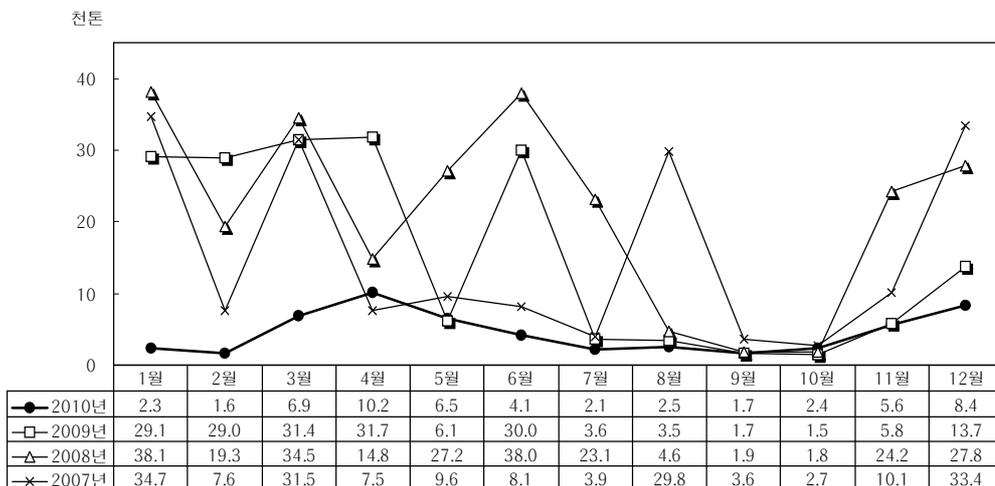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4. 대두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대두(AG11301) 수입은 54.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0% 감소했고, 수입액도 3,565.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7% 감소했음.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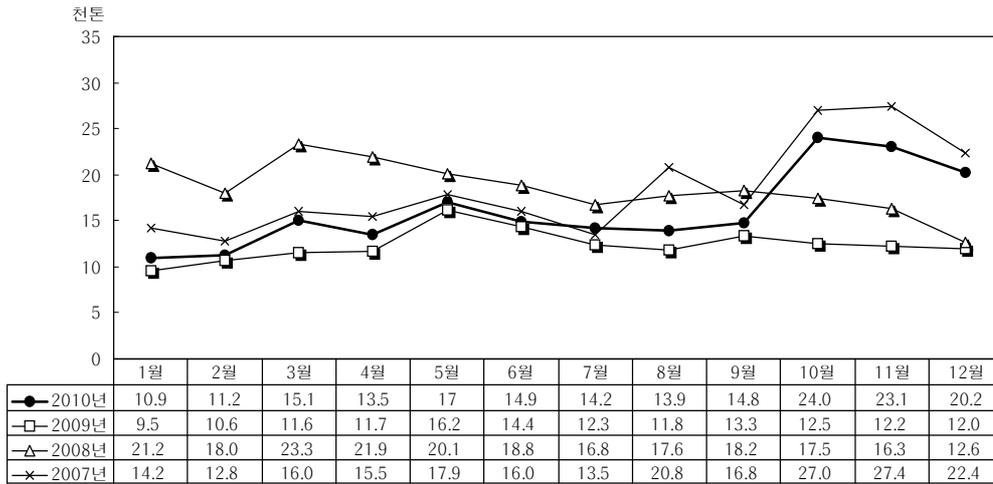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5.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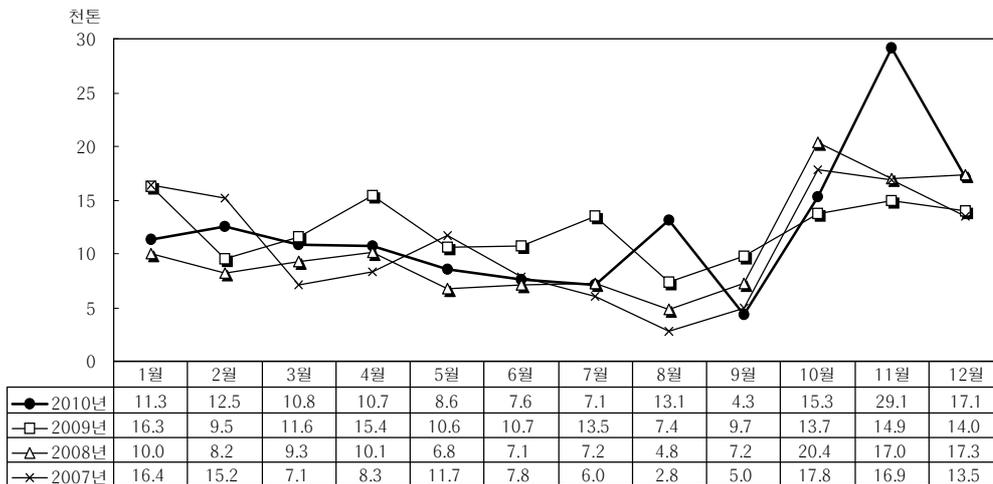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김치(AG12105) 수입은 192.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고, 수입액도 1,020.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8% 증가했음.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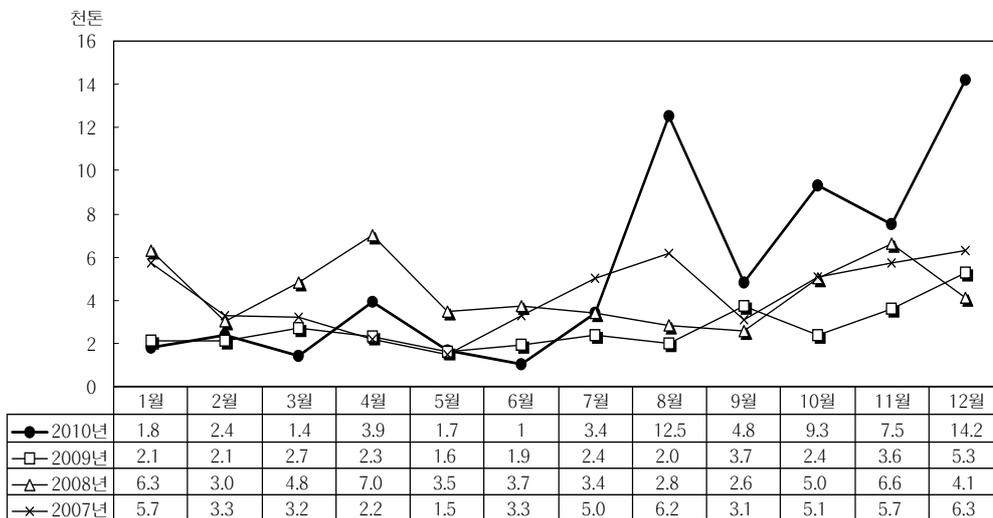
1.6. 고추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고추(AG12161) 수입은 149.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음. 수입액은 1,091.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액은 각각 944.7만 달러, 2,103.1만 달러, 1,339.3만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1% , 131.0% , 41.3% 증가한 것임.

1.7. 마늘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AG12144) 수입은 64.0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10,130.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9.4% 증가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각각 1,559.5만 달러, 1,513.0만 달러, 3,061.0만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3%, 257.2%, 660.2% 증가한 것임.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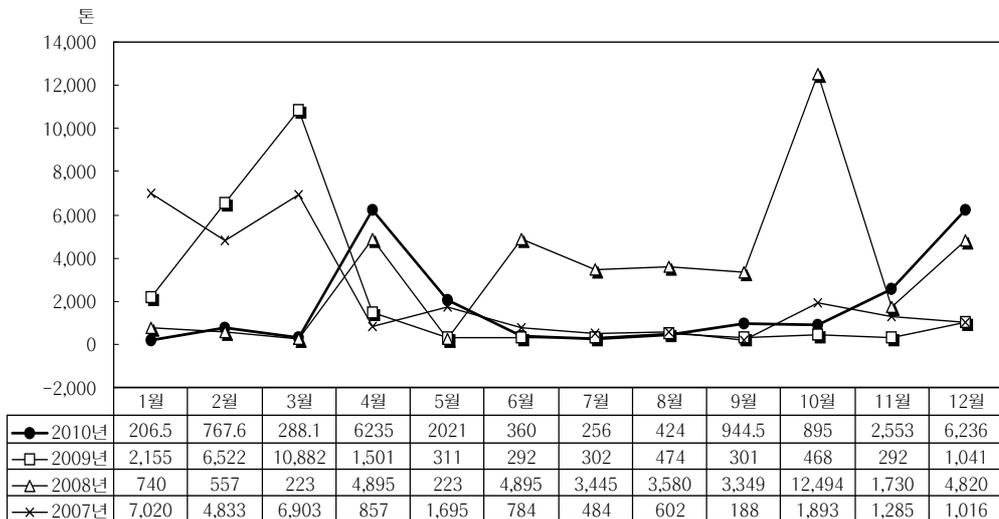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8. 양파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양파(AG12141) 수입은 21.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고, 수입액도 1,057.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액은 각각 54.7만 달러, 142.3만 달러, 365.1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1%, 392.8%, 87.8% 증가한 것임.

그림 10.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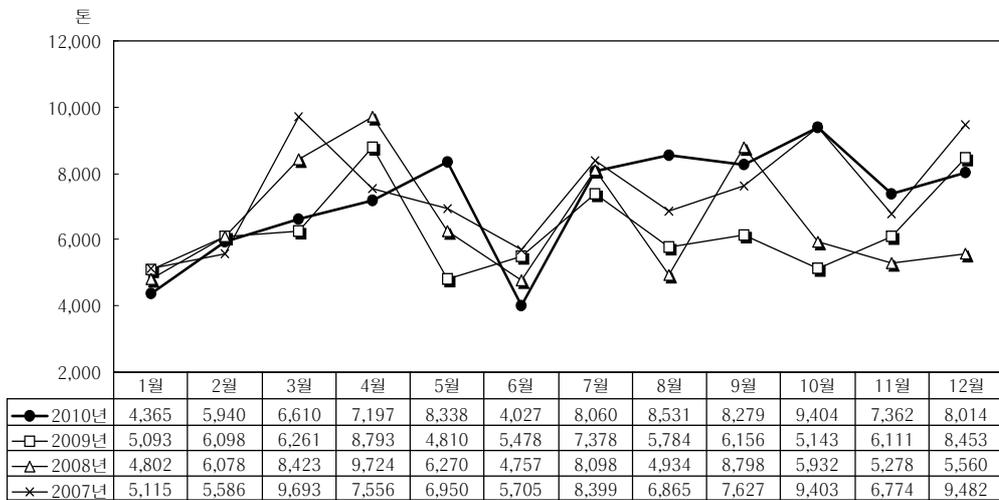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9. 당근

- 2010년 1~12월 한국의 중국산 당근(AG12123) 수입은 86.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고, 수입액도 4,000.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음.
- 2010년 10월, 11월, 12월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액은 각각 425.6만 달러, 333.9만 달러, 42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4%, 32.2%, 23.7% 증가했음.

그림 11.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 2010년 1~9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85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음.
 - 수출액은 33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수입액도 5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음.
 - 2010년 9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0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함. 수출액은 4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함. 수입액은 6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함.
- 2010년 1월~9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독일 순임. 수출액은 각각 65.5억 달러, 40.3억 달러, 29.1억 달러, 24.1억 달러, 12.6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 19.3%, 15.1%, 20.5%, 15.2% 증가한 것임.

표 2.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0.1~9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0.7	2010.8	2010.9	2010.1-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241,899.1	236,651.0	246,614.8	2,020,905.6	23.6
홍콩	34,080.0	33,843.1	37,346.2	291,289.0	15.1
인도네시아	22,096.2	15,201.7	15,207.6	122,020.6	62.5
일본	76,113.0	74,758.9	77,503.1	655,233.8	17.6
말레이시아	15,714.5	13,395.0	13,471.2	115,515.8	36.9
한국	23,668.8	24,693.0	25,492.1	240,979.7	20.5
아프리카	92,604.6	14,633.1	13,332.9	127,655.9	13.2
알제리	1,616.4	1,209.9	834.9	10,746.5	10.6
모로코	1,424.2	1,268.2	1,667.8	13,747.0	5.4
나이지리아	1,590.8	1,747.1	1,396.3	13,049.4	-8.6
남아프리카공화국	2,209.8	2,241.8	2,230.7	20,284.0	4.1
유럽	75,200.4	72,997.9	76,796.5	617,855.8	18.9
독일	14,274.5	12,629.8	15,645.4	125,637.0	15.2
네덜란드	8,478.1	10,126.4	9,722.2	74,075.3	16.6
러시아연방	11,913.7	12,031.4	13,454.4	104,669.8	24.7
남아메리카	15,315.9	13,802.2	14,326.8	113,243.4	49.5
브라질	5,190.9	5,159.9	5,248.0	36,018.0	159.8
멕시코	3,458.6	2,801.4	3,134.7	30,033.8	27.6
콜롬비아	1,141.00	1,053.8	792.5	6,959.5	86.0
북아메리카	57,296.8	57,225.2	55,817.9	458,321.8	19.4
캐나다	6,575.2	7,678.2	7,284.3	55,144.1	20.1
미국	50,717.7	49,546.9	48,533.7	403,142.7	19.3
대양주	7,855.4	7,034.9	7,447.7	60,411.5	26.8
오스트레일리아	6,258.8	5,595.3	5,989.8	47,444.2	21.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3.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0.1~9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0.7	2010.8	2010.9	2010.1~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105,205.9	95,205.9	10,142,425.1	11,141,116.6	41.3
인도	6,120.5	10,127.5	9,155.9	158,785.8	212.1
인도네시아	20,869.0	15,538.0	25,571.8	179,031.6	3.6
말레이시아	26,320.3	17,636.7	24,606.1	253,709.7	20.6
우즈베키스탄	2,497.4	1,978.2	1,546.6	43,261.8	160.0
태국	19,098.4	16,492.1	16,381.4	189,851.0	57.3
베트남	5,744.1	5,441.7	5,974.7	57,546.0	-4.1
아프리카	13,176.1	13,636.3	15,643.2	126,732.6	43.0
에티오피아	3,186.9	1,783.8	2,213.4	22,054.8	20.9
남아프리카공화국	2,984.9	2,406.1	3,485.3	25,567.5	85.2
짐바브웨	656.5	356.3	250.3	12,092.0	23.3
유럽	54,923.9	61,355.9	64,772.5	495,288.9	42.1
덴마크	6,944.0	5,520.7	6,209.6	50,653.3	91.1
프랑스	12,630.9	15,414.6	18,212.0	112,362.1	36.7
러시아연방	6,374.5	8,988.5	10,648.7	110,997.4	20.7
남아메리카	264,807.1	260,130.9	260,083.0	1,522,204.7	28.0
아르헨티나	100,962.5	76,535.0	79,301.7	400,594.2	44.5
브라질	134,469.4	139,622.4	142,608.7	876,457.1	22.6
북아메리카	86,894.2	126,309.2	132,108.7	1,404,514.7	27.0
캐나다	26,656.8	37,305.5	25,966.2	224,653.5	14.4
미국	59,911.6	88,570.1	105,544.9	1,176,279.1	29.7
대양주	60,540.9	54,115.2	50,088.5	468,524.0	69.9
오스트레일리아	40,946.9	39,670.5	36,517.2	302,985.2	73.7
뉴질랜드	19438.1	14406.7	13490.4	164285.5	65.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중국농업동향

- 2010년 1~9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의 수입액은 각각 117.6억 달러, 87.6억 달러, 40.1억 달러, 30.3억 달러, 24.4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7%, 22.6%, 44.5%, 73.7%, 20.6%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 광둥, 복건, 절강, 요녕으로 수출액은 각각 88.2억 달러, 38.7억 달러, 34.3억 달러, 26.0억 달러, 24.5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8.2%, 13.5%, 46.5%, 19.3%, 12.2%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 광둥, 강소, 북경, 상해로 수입액은 각각 88.6억 달러, 68.9억 달러, 65.1억 달러, 60.2억 달러, 54.4만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2%, 17.2%, 36.1%, 59.4%, 26.8% 증가한 것임.

표 4.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0.1~9

단위: 만 달러, %

지역	2010년 1~9월	2009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73,099.1	79,541.6	-8.1
천진(天津)	65,631.3	58,348.2	12.5
하북(河北)	85,841.6	73,245.3	17.2
요녕(遼寧)	245,452.3	218,717.9	12.2
길림(吉林)	73,341.3	69,280.9	5.9
흑룡강(黑龍江)	49,112.7	45,694.9	7.5
상해(上海)	105,573.6	87,379.1	20.8
강수(江蘇)	183,115.2	140,608.7	30.2
절강(浙江)	260,154.7	218,033.6	19.3
복건(福建)	343,354.3	234,380.1	46.5
산둥(山東)	882,424.6	688,299.1	28.2
광둥(廣東)	386,689.7	340,755.0	13.5
광서(廣西)	62,744.2	57,601.2	8.9
사천(四川)	49,559.1	39,528.2	25.4
운남(雲南)	95,275.9	71,456.3	33.3
신강(新疆)	56,770.0	49,965.8	13.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5.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0.1~9

단위: 만 달러, %

지역	2010년 1~9월	2009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601,929.4	377,507.4	59.4
천진(天津)	251,663.1	168,804.4	49.1
하북(河北)	160,914.1	137,005.6	17.5
요녕(遼寧)	214,583.8	156,502.8	37.1
상해(上海)	543,742.8	428,768.5	26.8
강소(江蘇)	651,434.3	478,570.0	36.1
절강(浙江)	296,934.3	191,614.8	55.0
복건(福建)	233,083.7	195,764.7	19.1
산둥(山東)	886,303.2	610,475.3	45.2
광둥(廣東)	689,133.3	588,096.2	17.2
광서(廣西)	131,986.1	127,670.6	3.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2.2. 품목별 수출입

2.2.1. 곡물

가. 쌀

- 2010년 1~9월 중국의 쌀 수출은 451.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음.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674.9 달러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음.
 - 2010년 9월 중국 쌀 수출은 32.6천 톤으로 전월 대비 69.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음. 수출액은 0.2억 달러로 전월 대비 62.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641.3 달러로 전월 대비 4.0% 하락,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하였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쌀 수출은 34.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음. 수출 금액은 2억 5,107.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함.

-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 북한, 일본, 홍콩 등임.
- 2010년 1~9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 북한, 일본, 홍콩, 코트디부아르 순으로, 각각 17.0만 톤, 5.0만 톤, 4.7만 톤, 3.4만 톤, 2.4만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증가, 45.3% 증가, 30.0% 감소, 8.3% 증가, 96.7%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 길림, 흑룡강 지역으로 각각 30.5만 톤, 6.0만 톤, 4.6만 톤을 수출하였음.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감소, 33.7% 감소, 24.9% 증가한 것임.

표 6.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40,782.9	25,107.4	-3.7	-9.8
한국	169,797.0	12,504.0	3.9	-8.6
일본	46,990.6	4,763.5	-30.0	-25.1
북한	50,203.1	2,151.2	45.3	66.7
홍콩	34,086.9	2,389.4	8.3	22.6
파키스탄	3,628.5	843.0	70.5	71.7
아프리카	74,289.3	3,146.1	-59.4	-66.1
나이지리아	9,982.5	515.1	-78.1	-80.0
코트디부아르	23,600.0	842.0	96.7	24.2
유럽	16,366.0	905.8	-47.9	-42.3
러시아	10,836.0	583.2	-49.7	-44.0
대양주	20,006.0	1,308.4	20,005,900.0	3,271,024.5
남아메리카	99.0	5.4	-95.4	-95.5
독립국가연합	32,056.0	1,698.2	-33.8	-35.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표 7.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305,406.0	20,609.5	-28.5	-27.0
내몽고(內蒙古)	4,062.0	161.2		
요녕(遼寧)	8,095.1	366.1	57.9	84.6
길림(吉林)	59,837.8	3,965.9	-33.7	-30.5
흑룡강(黑龍江)	45,992.0	2,669.8	24.9	3.6
절강(浙江)	2,501.0	108.4		
안휘(安徽)	2,613.0	523.4	-9.5	-1.3
호북(湖北)	1,904.2	423.7	-0.7	3.2
호남(湖南)	557.8	155.7	-10.6	-1.5
사천(四川)	497.0	113.6	-86.5	-83.6
운남(雲南)	731.4	113.7		
신강(新疆)	17,266.0	837.5	4,443.7	4,704.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나. 옥수수

- 2010년 1~9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107.4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음. 수출액은 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57.3 달러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음.
 - 2010년 9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5.8천 톤으로 전월 대비 36.3% 감소했음. 수출액은 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41.5%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58.1 달러로 전월 대비 8.1% 하락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옥수수 수출은 107.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2,76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함.
 - 주요 수출 국가는 북한, 일본, 한국으로 각각 67.8천 톤, 27.5천 톤, 11.0천 톤 수출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342.9%, 1,280.8%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옥수수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 길림, 요녕 지역으로 각각

22.2천 톤, 67.8천 톤, 16.1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3%, 11.1%, 37.0% 증가한 것임.

표 8.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07,403.9	2,763.9	25.9	33.4
일본	27,487.9	662.1	342.9	287.3
북한	67,779.8	1,783.5	12.3	23.4
한국	11,046.7	271.2	1,280.8	1,008.3
몽고	980.0	27.3		
파키스탄	109.6	19.8	405,825.9	734,344.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표 9.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22,227.6	527.5	75.3	53.8
길림(吉林)	67,750.0	1,773.6	11.1	19.1
요녕(遼寧)	16,145.4	397.1	37.0	53.5
내몽고(內蒙古)	980.0	27.3		
흑룡강(黑龍江)	149.4	5.1	77.9	63.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2.2.2. 축산물

가. 돼지고기

○ 2010년 1~9월 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79.4천 톤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음.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962.9달러로 전년 대비 3.5% 하락했음.

– 2010년 9월 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10.4천 톤으로 전월 대비 17.8% 감소했음. 수출

액은 3,112.6만 달러로 전월 대비 20.2%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982.6달러로 전월 대비 2.0% 상승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은 74.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함. 수출 금액은 22,136.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함.
 - 주요 수출 국가는 홍콩, 키르기스스탄, 마카오로 각각 60.1천 톤, 8.6천 톤, 3.2천 톤 수출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35.6%, 14.8%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사천, 광둥, 호남, 하남 지역으로 각각 17.8천 톤, 16.0천 톤, 15.8천 톤, 10.0천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9%, 5.3%, 0.6%, 120.3% 증가한 것임.

표 10.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74,231.1	22,136.8	14.6	12.1
홍콩	60,076.1	17,596.9	12.0	8.4
마카오	3,217.1	936.0	14.8	14.3
싱가포르	684.7	502.8	-57.3	-20.0
키르기스스탄	8,613.2	2,589.9	35.6	29.8
말레이시아	663.6	288.8		
몽골	485.1	95.7	9,602.1	5,056.9
아르메니아	807.0	176.3	976.0	830.7
브루나이	149.7	40.5	55.5	67.8
유럽	4,952.3	1,046.9	485.2	612.0
알바니아	2,120.3	403.9	174.9	215.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619.7	870.5	-10.0	30.0
독립국가연합	11,445.2	3,232.9	78.1	60.5
중동	194.0	42.0	53.4	51.1
남아메리카	11,445.2	3,232.9	78.1	60.5
아프리카	30.3	7.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표 11.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길림(吉林)	2,888.8	680.3	-1.5	-7.2
흑룡강(黑龍江)	1,771.7	429.1	258.1	239.0
산둥(山東)	3,164.7	803.1	8.3	-15.0
하남(河南)	10,033.4	2,542.4	120.3	112.7
호남(湖南)	15,798.9	5,629.4	0.6	4.7
광둥(廣東)	16,021.3	4,939.9	5.3	4.9
중경(重慶)	6,114.2	1,675.8	54.1	49.7
사천(四川)	17,835.6	4,543.2	30.9	20.9
운남(雲南)	4,036.0	1,379.2	-20.0	-11.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나. 닭고기 및 제품

- 2010년 1~9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271.7천 톤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음.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3,014.0 달러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음.
 - 2010년 9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34.8천 톤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음.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3,134.9 달러로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263.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함.
- 2010년 1~9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요녕(遼寧), 북경(北京)지역, 흑룡강(黑龍江)으로 각각 11.7만 톤, 5.8만 톤, 3.2만 톤, 1.2만 톤, 1.1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9% 증가, 9.3% 감소, 63.6% 증가, 15.3% 증가, 53.7% 증가한 것임.

표 12.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263,835.2	79,615.3	31.8	30.5
일본	132,582.0	51,309.5	37.3	32.9
홍콩	95,628.0	20,346.8	20.6	21.4
한국	2,856.3	1,056.5	9.0	8.6
키르기스스탄	2,476.6	485.2	-28.6	-22.0
마카오	2,094.3	496.6	-6.5	-14.1
바레인	3,916.2	796.5	40.4	44.9
말레이시아	17,365.7	3,784.5	59.6	54.2
아프리카	516.8	89.8	83.0	88.2
유럽	6,790.4	2,079.7	45.4	70.3
네덜란드	1,245.4	414.4	-35.4	-29.6
영국	2,548.4	837.3	270.3	340.8
남아메리카	412.3	78.1	46.1	56.9
대양주	146.7	27.5	23.3	19.3
독립국가연합	3,451.6	660.4	-31.8	-26.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8,088.3	3,968.5	60.8	55.5
중동	8,415.7	1,627.5	104.6	106.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표 13.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12,263.8	4,998.6	15.3	16.6
하북(河北)	8,155.1	2,962.3	50.1	44.4
요녕(遼寧)	32,081.0	8,303.6	63.6	60.5
길림(吉林)	10,847.1	3,736.7	7.4	3.6
흑룡강(黑龍江)	10,858.7	4,578.8	53.7	40.8
상해(上海)	2,859.0	1,119.0	108.8	107.7
산둥(山東)	117,282.2	36,944.3	52.9	44.1
하남(河南)	9,642.3	2,978.1	41.5	50.5
호남(湖南)	6,615.5	1,614.2	3,744.1	5,716.9
광둥(廣東)	57,860.6	14,005.0	-9.3	-7.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2.2.3. 채소류

가. 대파

- 2010년 1~9월 중국 대파 수출은 50.6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0.8% 증가했음. 수출액은 3,722.2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2% 증가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735.2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하락했음.
- 2010년 9월 중국 대파 수출은 5.8천 톤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음. 수출액은 461.5만 달러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801.2달러로 전월 대비 12.2% 상승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대파 수출은 50.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3,7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음.
-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과 홍콩으로 각각 35.1천 톤, 11.7천 톤 수출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9%, 12.2% 증가한 것임.

표 14.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50,197.6	3,706.0	41.0	38.2
일본	35,122.6	3,412.1	51.9	36.8
홍콩	11,749.4	144.8	12.2	20.5
말레이시아	58.9	5.9	-49.1	21.9
한국	644.3	38.9	45.5	30.4
마카오	634.9	12.3	57.8	70.5
싱가폴	20.0	1.7	-38.5	-40.5
필리핀	49.9	4.0		
인도네시아	81.0	5.7	189.3	127.8
베트남	1,830.3	80.2	107.6	450.4
유럽	432.9	16.2	18.8	48.5
중동	1.2	0.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40.4	97.6	88.3	266.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표 15.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흑룡강(黑龍江)	432.9	16.2	16.1	45.8
상해(上海)	3,973.3	312.3	143.0	118.4
강소(江蘇)	350.3	23.2	1,688.0	913.9
절강(浙江)	490.0	73.8	16.4	33.0
복건(福建)	16,047.8	1,511.3	75.4	77.7
산둥(山東)	14,913.1	1,532.6	20.2	4.4
요녕(遼寧)	75.5	5.3	-23.4	-64.8
광둥(廣東)	12,338.4	154.2	13.6	20.8
운남(雲南)	1,957.1	90.1	115.2	427.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 2010년 1~9월 중국 대파의 주요 수출 지역은 복건(福建), 산둥(山東), 광둥(廣東) 지역으로 각각 16.0천 톤, 14.9천 톤, 12.3천 톤을 수출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4%, 20.2%, 13.6% 증가한 것임.

나. 마늘

- 2010년 1~9월 중국 마늘 수출은 1,146.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0% 감소했음. 수출액은 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3.8%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588.8 달러로 전년 대비 183.6% 상승했음.
 - 2010년 9월 중국 마늘 수출은 123.2천 톤으로 전월 대비 21.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음.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0%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98.5%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2,209.9 달러로 전월 대비 5.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33.6% 상승했음.

표 16.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714,742.2	107,129.6	-19.1	141.1
인도네시아	258,659.6	38,403.4	-13.4	162.7
파키스탄	32,371.8	5,389.2	-50.0	53.3
일본	24,744.3	5,477.2	-2.3	95.4
베트남	98,252.4	8,726.8	-14.1	127.3
태국	46,047.1	8,212.1	16.3	183.2
말레이시아	60,938.3	9,434.7	-15.6	167.3
북아메리카	98,168.1	17,829.9	-2.2	108.5
미국	84,078.6	15,101.4	-4.2	98.7
유럽	116,394.0	19,983.2	-7.2	145.2
네덜란드	29,315.4	5,598.8	-25.4	123.2
남아메리카	161,743.5	27,392.7	-2.4	158.7
브라질	92,031.7	15,944.9	10.5	161.7
아프리카	45,174.3	7,888.9	-6.0	263.1
대양주	10,642.7	1,993.0	-4.8	136.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517,310.0	72,582.7	-12.4	158.8
유럽연맹27국	73,648.2	13,271.0	-16.0	117.5
중동	100,702.8	17,797.0	-7.7	246.4
유럽연맹25개국	72,750.6	13,130.0	-15.8	117.7
유럽연맹15개국	66,176.2	12,113.4	-19.0	111.8
독립국가연합	42,924.2	6,627.0	18.1	242.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10년 1~9월 중국의 마늘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순으로, 각각 25.9만 톤, 9.8만 톤, 9.2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감소, 14.1% 감소, 10.5%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서(廣西), 하남(河南), 복건(福建), 지역으로 각각 69.1만 톤, 15.6만 톤, 6.6만 톤, 5.5만 톤, 4.1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감소, 11.8% 감소, 14.2% 감소, 7.2% 증가, 17.3% 감소한 것임.

표 17.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1,007.7	190.6	-55.2	21.7
천진(天津)	2,896.9	366.6	-83.3	-59.1
하북(河北)	2,673.0	409.6	104.0	393.0
산서(山西)	265.0	40.8	-33.6	61.3
내몽고(內蒙古)	1,791.9	86.1	37.3	22.2
요녕(遼寧)	3,719.3	548.5	-33.6	63.0
길림(吉林)	3,708.9	671.8	14.0	692.0
흑룡강(黑龍江)	6,058.0	513.2	-22.6	35.8
상해(上海)	17,894.7	3,089.2	-0.9	122.0
강소(江蘇)	155,551.5	22,570.5	-11.8	161.0
절강(浙江)	6,777.6	1,093.9	26.4	150.0
안휘(安徽)	12,908.0	2,206.1	-5.4	129.1
복건(福建)	40,794.0	6,543.0	-17.3	164.6
산둥(山東)	691,638.4	116,633.6	-15.6	144.2
하남(河南)	54,735.7	9,545.3	7.2	237.8
호북(湖北)	365.5	51.8	212.4	684.8
광둥(廣東)	37,463.1	5,987.2	-36.7	52.2
광서(廣西)	66,430.5	4,828.3	-14.2	111.5
해남(海南)	811.1	194.5	14.1	96.4
사천(四川)	3,406.4	495.3	1,139.1	1,973.1
운남(雲南)	17,127.8	3,394.5	-7.6	113.4
서장(西藏)	2,872.1	168.5	136.1	136.7
섬서(陝西)	1,729.7	246.2	1,054.1	2,081.1
신강(新疆)	13,917.2	2,303.0	330.7	1,123.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2.2.4. 기타

가. 표고버섯

- 2010년 1~9월 중국 표고버섯 수출은 42.0천 톤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했음. 수출액은 48,10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9%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1,440.2달러로 전년 대비 33.4% 상승했음.

- 2010년 9월 중국 표고버섯 수출은 5.5천 톤으로 전월 대비 10.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음. 수출액은 6,55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1.5%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11,969.7 달러로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0.4% 상승했음.

○ 2010년 1~9월 중국의 대 아시아 표고버섯 수출은 34.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9% 증가함. 수출 금액은 41,538.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2% 증가함.

표 18. 2010년 1~9월 중국의 국가별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4,638.0	41,538.1	100.9	158.2
일본	8,336.4	8,517.4	20.6	52.1
베트남	8,227.5	11,766.5	729.5	793.9
한국	3,286.4	2,564.0	75.7	120.5
싱가폴	1,425.0	2,006.4	121.7	204.5
태국	3,103.8	4,105.0	11.6	41.7
말레이시아	3,616.5	3,030.4	123.7	117.1
홍콩	5,086.2	7,311.2	200.6	224.2
북아메리카	4,812.1	3,734.4	10.3	41.3
미국	4,400.9	3,425.1	4.5	34.1
유럽	1,996.6	2,035.9	81.0	189.6
대양주	386.8	477.6	39.6	92.5
남아메리카	168.3	243.7	98.9	138.2
아프리카	47.8	76.2	126.1	197.8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7,221.1	22,202.7	175.1	237.6
유럽연맹15개국	1,477.4	1,348.9	42.9	105.8
중동	47.3	57.8	-1.3	56.7
독립국가연합	273.6	378.2	329.0	741.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 2010년 1~9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베트남,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각각 8.3천 톤, 8.2천 톤, 5.1천 톤, 4.4천 톤, 3.6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6%, 729.5%, 200.6%, 4.5%, 123.7% 증가한 것임.
- 2010년 1~9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지역은 호북(湖北), 복건(福建), 절강(浙江), 하남(河南),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15.2천 톤, 8.2천 톤, 7.1천 톤, 4.3천 톤, 3.4천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5%, 45.8%, 27.2%, 109.2%, 60.4% 증가한 것임.

표 19. 2010년 1~9월 중국의 지역별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진(天津)	76.6	62.0	10.1	46.2
하북(河北)	159.1	41.8	127.1	98.1
요녕(遼寧)	1,184.3	464.0	5.3	5.5
길림(吉林)	312.8	343.4	-27.0	-17.9
상해(上海)	3,433.6	2,806.3	60.4	259.0
절강(浙江)	7,059.1	3,832.0	27.2	41.4
복건(福建)	8,200.3	10,906.6	45.8	96.4
산둥(山東)	339.6	207.4	96.3	57.1
하남(河南)	4,336.0	6,833.2	109.2	135.0
호북(湖北)	15,279.1	21,677.5	216.5	254.6
광둥(廣東)	436.1	482.8	-50.7	-22.9
운남(雲南)	615.6	142.1	1,860.6	1,152.8
신강(新疆)	432.1	105.4	2,854.4	3,901.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참고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중국농업동향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食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7~9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양념채소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동향

- 2010년 중국 고추 생산량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고추 주산지에서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준의현 전현의 30개 향진 25만 고추 농가 재배면적은 2만 5,460ha이며 생산량은 5만 7천 톤임. 총생산액도 8억 위안으로 농가 1인당 소득이 762위안에 이르고 있음. 또한, 중경시 기강(綦江)현, 복건성 포성(浦城)현에서도 고추 작황 호조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음.
 - 반면, 사천성, 운남성 등 일부지역에서는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둥성 익도산, 사천성 성도(成都), 하북성 망도(望都)는 “중국고추 3도”로 유명함. 지방농산물 보호를 위한 하북성의 “망도고추”가 11월 3일 지리적표시제를 통과하였음. 이에 따라 이 지역 60여 고추생산 및 가공기업이 이 상표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망도고추” 브랜드화가 발전될 전망이다.

1.2. 가격동향

- 11월 말 건고추 산지거래가격(산둥성 청도 기준)은 kg당 14위안으로 작년 동월보다 26% 높으며 전월에 이어 강세가 지속되었음. 평년의 경우 건고추가 본격적으로 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김종선, 한승용, 노호영, 한은수)이 해외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하되는 12월~익년 1월에는 가격이 다소 하락하나, 금년 12월 가격은 13~14.5위안 수준으로 강세가 지속되었음. 이는 운남성, 사천성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추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1. 건고추 산지거래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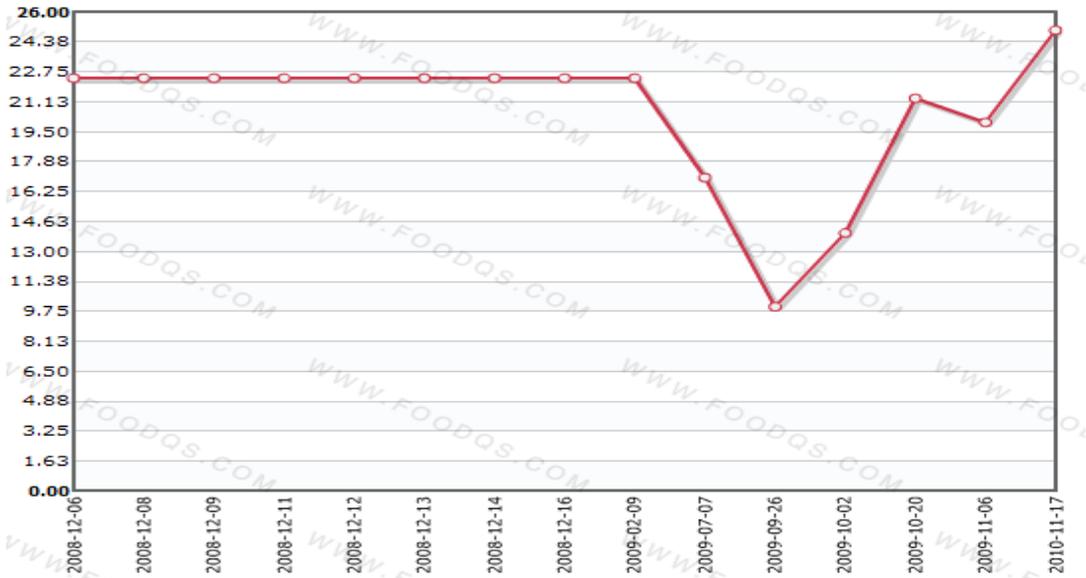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0	12.0	12.5	11.0	11.0	11.0	11.0	11.5	14.5	14.0
2009	7.0	7.5	6.5	7.5	9.1	9.4	9.5	10.0	11.5
증감률(%)	78.6	46.7	69.2	46.7	21.5	17.0	21.1	45.0	21.7

주: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 2010년 11월 무석시 천혜대형할인마트 건고추 소매가격은 kg당 25.0위안으로 상승하였음. 2009년 9월부터 건고추 소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11월 말 최고 가격을 형성하였음.

그림 1. 건고추 소매가격 동향(2008. 12~2010. 11)

단위: 위안/kg



자료: 천혜대형할인마트

1.3. 국내 도입가격

- 2010년 4/4분기 건고추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600g당 5,914원, 도매가격은 6,505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1% 높은 수준임. 이는 2009년산 중국 고추 재고량 부족과 중국내 소비증가로 산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임.
- 또한, 냉동고추 민간 수입가능가격도 600g당 623원, 가공 후 국내 판매원가는 4,363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1%, 9% 높은 수준임.

2. 마늘시장 동향

2.1. 산지 동향

- 북경시 농업국은 11월 달 북경시 채소가격은 3.0위안/kg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채소가격의 상승은 이미 전국 전역에 파급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녹두, 마늘, 생강에 이어 설탕 등 가격은 소비자들이 한탄할 정도로 급등하였음.
 - 9월 하반기 이래 채소가격의 추세를 볼 때 전반 채소가격의 보편적인 상승국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통화팽창과 함께, 채소는 식품소비가격 상승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채소가격 상승은 수급요소, 기후와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최근 전반 채소가격 상승은 몇 년래 식품소비가격수준 대비 저수준을 유지한 데 대한 회복성 경향이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부분 채소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0%이상 상승하였음. 중국 전역 채소가격은 계절 영향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상승하였고, 통화팽창과 식품소비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채소가격은 예년의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 최근 마늘주산지인 하택시 단현 장집(張集)진의 마늘파종기가 국가발명특허를 받았음. 이 마늘파종기는 인건노동보다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일별 작업량은 1.3~2.0ha가 가능함. 또한 파종품질이 노동력보다 좋기 때문에 생산량이 30% 이상 증가할 전

망이라고 함.

-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금향마늘이 독점공급을 진행하였음. “금향마늘”은 중국상표의 칭호로 최근 올림픽, 상해박람회 이어 광저우 아시안게임 특정 식품으로 선정되었음. 이러한 국제행사에서의 독점출하는 “금향마늘”의 세계화 진출에 담보역할을 하고 있음.

2.2. 수출 동향

- 중국의 마늘가격은 2010년도에 최고가격으로 치솟음. 이는 국내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의 수요증가도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음. 강소성 피주의 마늘주산지는 금년 이래 1.9억 달러 마늘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 농산물수출액의 80%에 달하였고, 주로 동남아, 중동지역과 신흥시장인 남미국가, 아프리카로 수출되었음.
- 최근 강소성의 농산물수출통계에 따르면 1~3분기 농산물수출은 동기 대비 38.8% 증가하였는데 마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 지역 마늘산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수출량은 4만 톤에서 7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청화(淸華)기업 등 5개 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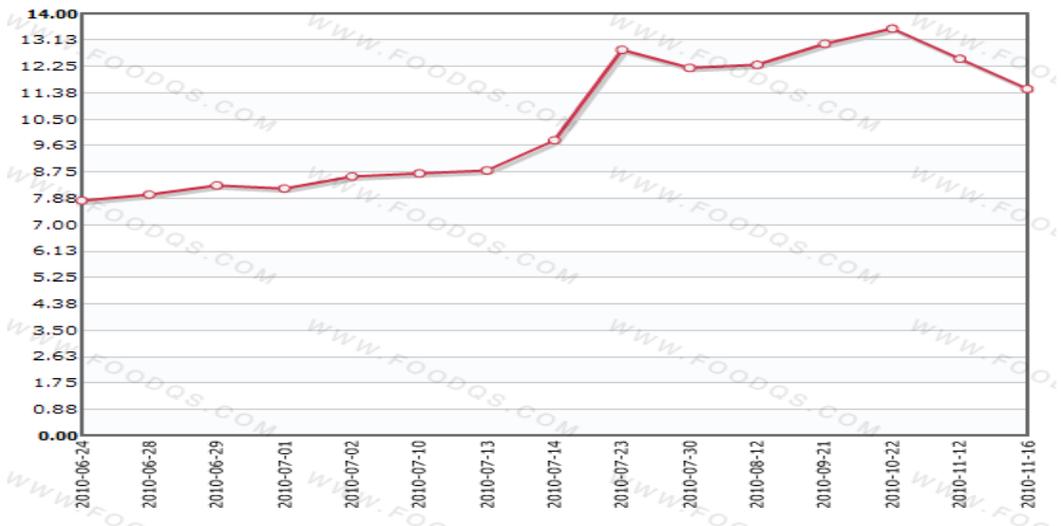
2.3. 가격 동향

- 11월, 산둥성 지역의 마늘가격이 하락함. 마늘산지의 농가들이 남은 물량을 출하하고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마늘 공급량이 충족해지고 따라서 마늘가격 하락이 발생함. 현재 저장하지 않은 마늘은 싹이 트기 시작하여 농가들은 수중에 남은 마늘판매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출하초기 품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하락이 초래되고 있음. 산둥성 연태지역의 10월말 가격은 14.0위안/kg 이었는데 현재 10.0위안/kg로 하락함. 창산지역의 일반 마늘 도매가격은 11.0위안/kg, 최고 12.0위안/kg 수준임.
- 최근 마늘가격의 하락은 시장수요의 영향이 큰 원인 외에, 정부의 물가안정조치의 영향도 있음. 중국의 생강, 마늘과 녹두가격의 이상 고가에 대해 정부가 물가안정조

치를 시행하여 11월부터 점차 하락추세를 나타냈음. 생강과 마늘은 12.0위안/kg이하로 하락하였고 녹두는 16.0위안/kg으로 하락함.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출범하였는데, 특히 농산물시장에서 시장공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수급관계를 안정시키도록 하였음. 현재 하락하고 있는 마늘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2. 북경시 농산물도매시장의 마늘가격동향 (2010.6.24~2010.11.16)

단위: 위안/kg



자료: 북경 팔리교 농산물도매시장

3. 양파시장 동향

3.1. 산지 동향

- 중국 2010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최근 양파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은 2009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상반기에 출하된 운남, 산둥 지역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5~10% 감소한 반면, 하반기에 출하된 감숙, 내몽고 지역은 작년보다 5~10%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중국 양파 저장량은 최근 생산량 증가(감숙·내몽고)로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양파 산지가격은 저장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20% 이상 상승하였음.

3.2.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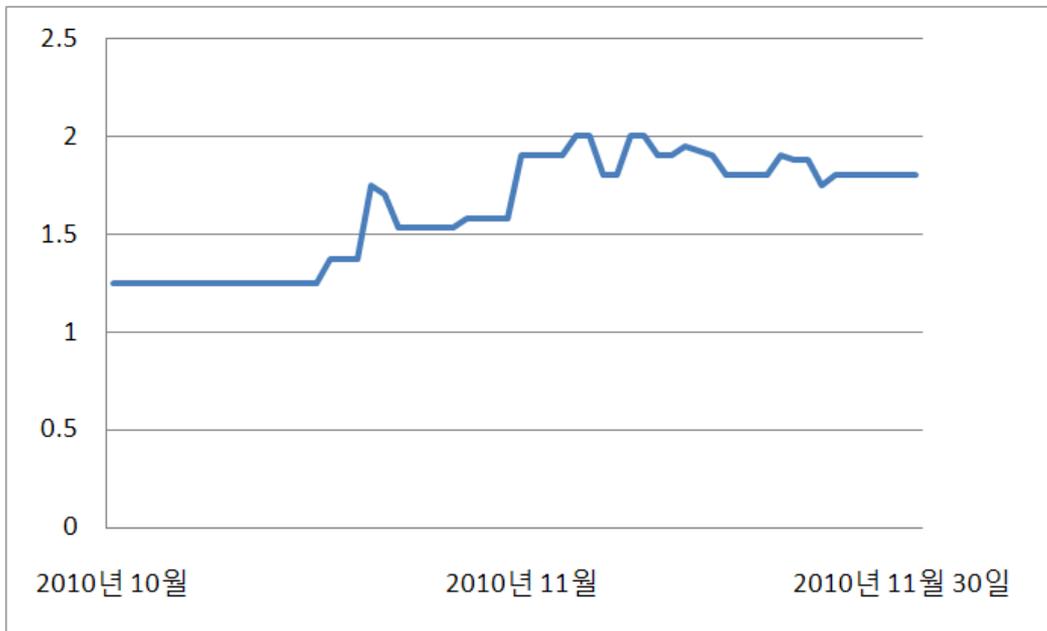
-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9~11월 중국 신선 및 조제 양파 수출량은 20만 3,407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50% 증가, 수출액은 7천 8백만 달러로 92% 증가하였음. 이처럼 수출량 증가에 비해 수출액 증가가 더한 것은 금년 중국 내 생산량 감소한데다 타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수요 증가로 양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물량기준 주요 양파 수출대상국을 보면, 일본(6만 9,690톤), 베트남(4만 9,501톤)의 순이며, 태국이 6,706톤에서 13,060톤으로 급증하였음.
- 중국의 대한국 신선 및 조제 양파 수출량은 2009년 9~11월 335톤에서 금년 동기 4,799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한국 내 양파 가격 강세로 정부수입물량(TRQ)을 도입했기 때문임.
- 건조 양파의 경우 수출량은 4,305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하였으나, 수출 금액은 1,238만 달러로 5% 증가하였음.
- 물량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660톤), 미국(618톤), 독일(441톤), 일본(328톤)의 순이며, 미국과 영국으로 수출이 각각 365톤, 125톤씩 감소하였음.
- 중국의 대한국 건조양파 수출량은 2010년 9~11월 260톤에서 금년 동기 660톤으로 154% 증가하였음.
- 산동성 기준 산지 신선 양파 수출 가능가격은 산지 매입가격인 톤당 1,400위안에 각종 비용을 더한 2,250위안(청도기준 FOB가격) 수준임.
- 한국 도매시장 기준 11월 말 현재 중국산 신선양파의 수입가능 가격은 20kg당 2만 1천 원임.

3.3. 가격 동향

- 중국 양파 신발지 10~11월 도매가격은 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 증가로 3분기 가격보다 높은 1.5~2위안으로 형성되고 있음.
- 11월 평균 가격은 10월 1.4위안보다 약 30% 이상 상승한 1.9위안 내외였으나, 11월 중순 이후부터의 가격은 1.8위안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북경 신발지도매시장의 2010년 도매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자료: 북경 신발지도매시장



Ⅲ. 정책자료

-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제 12차 5개년”(이하 “12·5”) 기간(2011년~201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공고히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형세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12·5 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빠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12·5 계획은 전면적인 샤오강(小康)사회¹를 실현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더욱 빠르게 하고, 과학적발전(科學發展)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야 한다.

(1) “11·5 계획” 중 중국의 경제 및 사회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실 11·5 계획 시기는 중국의 발전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5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의 복잡한 변화와 중대한 위기 상황들에 직면하여, 중국 공산당은 단결하여 전국의 여러 민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국가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한편, 당의 주요 이론 및 노선과 관련된 방침들을 준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인 거시 조절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비교우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시장경제가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역사적

* 2010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과한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的建議》를 전문 번역하였음.

1 [역자 주] 샤오강(小康)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빠른 발전 추세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원촨(汶川) 대지진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도 극복해내었으며,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11.5 규획이 당초 목표로 했던 주요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5년간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중국의 생산력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종합적인 국력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중국 국민들의 생활도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국제적 지위 및 영향력 역시 크게 제고되어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및 생태 문명 등 각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다. 11.5 규획 기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동안 이룬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축적된 경험은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새롭게 창조된 정신적 자산도 그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2) 12.5 규획 기간 중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

현재,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세계정세와 국내 정세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새로운 단계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대내외적 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컨대, 여전히 중국은 그 발전단계에 있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기 힘든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예측 가능한,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여러 위기 및 도전들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기회와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과학적으로 발전의 규칙을 파악함으로써 주동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더욱 강하게 중국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평화, 발전, 협력은 여전히 전 세계적 시대의 조류이며,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정치경제 구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은 한 단계 더 발전하였으며, 국제 환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상황이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어 세계 경제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글로벌 수요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 시장, 자원, 인재, 기술, 표준(standard) 등을 둘러싼 경쟁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적 문제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보호주의가 등장하는 등 중국 발전의 대외적 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대내외적 상황을 함께 통

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분업 속에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고, 새로운 비교우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시장 수요 잠재력은 매우 크고, 자원 공급은 여유로운 상황이며, 과학기술 및 교육의 전반적 수준이 제고되었다. 노동인력의 전반적인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기초 인프라 설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역동성도 뚜렷하게 증가하여 정부의 거시 조정 및 문제 해결 능력도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사회보장체제가 점차 완벽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이 유지되는 등, 중국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종합적 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은 중국의 발전에서도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환경의 예측이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소득 분배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불합리하며, 농업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하고, 도농간 발전이 조화롭지 못하고, 실업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등 과학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체제적 걸림돌이 여전히 매우 많다. 중국은 현재의 발전 상황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리한 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두드러지는 갈등과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며,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3) 12·5 규획의 지도사상을 제정한다.

12·5규획을 제정할 때,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 및 삼개대표론 등 주요한 사상으로 기본으로 삼는다. 과학발전관의 철저히 시행하고, 국내외 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중국 내 여러 민족들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다. 과학발전관을 주제로 삼고, 경제 발전방식의 빠른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삼아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고 전면적 샤오강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 과학발전관을 주제로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개방 및 현대화의 전면적인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 개도국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사회주의 초급발전 단계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발전은 중국의 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게 있어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본질적 요구이다. 즉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기본 사조를 강조하며,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생활의 개선을 강조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한다.
-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삼는 것은 과학발전관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중국의 기본적 국정 및 발전 단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방식의 보다 빠른 전환은 중국 경제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개혁이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하고 발전의 전면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발전 가운데 전환을 추구하고, 전환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는 형식이 유지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항목이 조화롭게 서로의 성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경제 성장이 1차, 2차, 3차 산업 발전이 연동되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도시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면서 지역간의 협력과 협조를 통한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 과학기술 진보와 기술혁신을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주요 버팀목으로 삼는다. 과학을 통한 국가 부흥전략과 인재강국 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한 생산력으로 삼고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자주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의 진보, 노동자 수준의 제고, 관리혁신 능력의 변화 등이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 요인이 되게하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 국민 생활수준의 개선을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기본 출발점이자 도착 지점으로 삼는다. 국민 생활의 안정 및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취업 촉진을 경제사회발전의 우선과제로 삼아,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의 조절역량을 강화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여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중점으로 삼는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기본 국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다. 또한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저탄소기술을 확대보급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 개혁개방을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영역에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발전에 유리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호혜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고,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고 함께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12·5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12·5 규획은 전략성, 예측성 및 지도적 특성을 구비해야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한 기존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 발전 추세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5년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빠른 발전. 전반적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고, 취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시키다.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과 효과가 뚜렷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주민 소비율이 제고되고, 서비스업의 비중과 도시화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도농 지역이 더욱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한다. 경제 성장에 있어 과학기술 비중이 제고되어야 하고,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모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감소시키고, 생태환경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도농 주민간 소득이 모두 빠르게 증가해야 한다. 국민소득 성장 및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임금 증가와 노동 생산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저소득자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되고,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빈곤층이 현저히 감소되고, 국민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한다.
- 사회 건설의 강화. 도농 주민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든 민족의 사상과 도덕 수준, 과학 문명수준 및 건강 보건 수준이 부단히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주의 민중법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하고, 사회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개혁개방의 심화. 재정과 세무 부문의 금융, 요소 가격, 독점업체 등 주요 영역과 중요한 부문의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정부 공신력과 행정효율의 개선을 추진한다. 대외개방을 확대, 심화하고, 호혜적인 개방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민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방식 전환이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고 하고, 종합국력, 국제경쟁력, 위험 관리능력 등이 현저히 제고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민의 물질적 문화와 생활의 뚜렷한 개선과 함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2. 내수 확대의 전략을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추세를 유지한다.

내수 확대, 특히 소비 수요의 확대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수요의 거대한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어야 하며,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각종 제도적 장애요소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 수출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켜야 한다.

(5) 거시조절능력의 강화 및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은 12·5 시기의 주요 임무이다.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것과 경제구조 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리 등의 과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확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거시조절의 과학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여러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상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피한다. 단기 조절정책과 장기 발전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각 정책들을 더욱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6) 소비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소비수요의 확대를 내수확대의 전략적 중점 요소로 삼고, 도농 주민의 소비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내어 중국의 국내시장 전체 규모가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한다.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소득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소득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농간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력하여 주민 소비력의 확대를 도모한다. 국민생활 개선과 사회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 공공서비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의 유통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소비를 확대한다. 소비 촉진 정책을 개선시키고, 소비 환경을 개선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촉진한다. 합리적으로 소비 행위를 이끌어내고, 에너지 절약형, 그리고 환경 친화적 소비재를 발전시키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문명형, 절약형, 친환경적, 저탄소 소비모델을 제창한다.

(7)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조정한다.

투자가 내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시키고, 투자구조를 개선한다. 투자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 효율을 개선시키고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12·5 초기에는 내수 확대의 중점을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발전 및 효과 발휘에 둔다. 산업정책 작용이 충분히 발

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 및 사회발전, 농업 및 농촌,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자원 절약 등 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투자여건의 차별화, 투자항목에 대한 가이드를 유지하여 중서부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사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안보 등 진입 표준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맹목적인 투자확대와 중복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투자와 소비의 양성적 순환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투자확대와 고용확대, 민생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최종수요가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투자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투자 리스크를 예방한다. 국유기업의 투자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경제수익과 사회 수익이 조화롭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고무함으로써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이 인프라 산업, 인프라 설비, 시정(市政) 공용사업 및 사회사업, 금융 서비스 등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한다.

공업화, 도시화를 진일보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12·5 시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농업, 농촌, 농민 등 삼농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도농의 통합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공업 발전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지지하고,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여소취(多予少取)의 활동 방침을 유지한다. 농촌을 강하게 하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및 농촌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농업 현대화 수준과 농민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농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을 건설한다.

(8) 현대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중국 특색 농업 현대화 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 종합생산력, 위험 대처능력, 시장 경쟁력 등을 제고한다. 전국 식량 생산능력을 5천만 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주요 생산지에 대한 투입 및 이익보상을 확대한다. 농경지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농촌의 토지 정리 및 개간을 가속화하여, 가뭄 및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표준 농지²를 대규모로 구축한다.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공익성 농업 기술

확대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종자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기계화를 가속화한다. 현대 농업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산출, 우수한 품질, 고효율, 친환경, 안전한 농업을 발전시키고, 원예작물, 축산품, 수산품의 규모 경영을 촉진하고, 시설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업 생산 및 경영의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를 촉진한다. 현대 농업의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킨다.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확대 보급하여 농업의 비점오염(non-point pollution) 문제를 해결한다.

(9) 농촌 기초설비 건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농 경제사회 발전 일체화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촌 생산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의 기초설비 건설은 수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투입을 크게 확대하여 건설과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형저수지에 대한 안전 강화를 공고히 하고, 중대형 관개지역의 개조를 가속화하여, 가뭄 방지를 위한 물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 소형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전면적으로 농지 수리 건설을 강화한다. 농촌의 전력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의 식수 안전 프로젝트, 도로, 메탄가스 설비 건설 등을 강화하여, 농촌의 낮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농촌의 청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농촌 환경의 종합적인 정리를 추진한다. 농촌의 의무교육 수준을 높이고 발전 수준의 균형을 추구하고, 농촌 중등 직업교육의 무료화를 추진한다. 농촌 3급 의료보건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한다.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개발식 빈곤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원조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투입을 확대하여, 여러 빈곤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한다. 질서 있게 인구 이동과 원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원조개발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10) 농민 소득증대의 루트를 확대한다.

농민의 직업기술능력 및 수익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농민 소득 증대 루트를 확대한다. 농민의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효율성 제고를 독려하고, 농산물 시장 시스템 및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농업 보조금 등의 지원 보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민

2 [역자 주]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수확량이 보장되는 농경지

생산경영수익을 확대시킨다. 농산품 가공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농촌의 비농업 부문을 확대하여 현(縣)급 경제규모를 확대시키고, 농민의 이전취업(轉移就業)을 촉진시키고, 임금성 소득(工資性收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11) 농촌 발전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촌 기본 경영제도를 유지시키고 개선하여, 현재의 농촌 토지청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의거하여 스스로 원할 경우 적당한 보상을 통해, 그리고 강화된 서비스를 통해 토지청부경영권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적절한 규모 경영을 발전시킨다. 농민 전업합작사와 농업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농촌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업 경영조직화 수준을 높인다. 도시와 농촌 간에 균등한 요소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부가가치 수익 및 농촌의 예금이 농업과 농촌 부문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용지 사용을 절약하고, 농민의 권익은 보장한다는 기본요건에 근거하여, 토지징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 토지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집체가 소유한 경영성 건설용지 유통(流轉)과 주택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촌 신용사(信用社) 개혁을 심화하여,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현을 단위로 지역은행(社區銀行)을 건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농촌 소형 금융조직과 소액 신용대출의 발전을 지원한다. 농업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농촌 금융서비스를 개선한다. 농촌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집체삼림권(林權)과 국유삼림지역에 대한 삼림권(林區林權)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초원(草原)청부경영제도를 개선한다. 도농을 통틀어 종합개혁의 시험단계에서 겪었던 경험을 잘 종합하여,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4. 현대 산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국 특색 신흥 공업화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으며, 시장 수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과학기술 진보의 새로운 추세에 근거하여 중국의 산업이 세계 경제 속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개선된 구조, 선진기술을 갖추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취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현대 산업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12) 제조업 개조 및 고도화

제조업 발전의 핵심은 구조 개선이며, 상품의 품질을 개선시키고, 산업의 보완 능력을 강화하여, 낙후한 생산시스템은 도태시킨다. 선진 장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원자재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비자 공업을 개조, 고도화하며, 제조업 전체를 “큰” 제조업에서 “강한”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중점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중대 기술 장비 발전 정책을 개선시키고, 기초 공업 기술, 기초 자재, 기초 부품 연구개발 및 시스템 집약화 수준을 제고한다. 기업 기술 강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 능력과 메이커 창조 능력을 강화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무하고, 산업의 집중도 정도를 높이고,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브랜드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분업화 수준을 제고하여 기업조직의 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13)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향후 시장의 수요 변화와 기술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지원과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여,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주요 영역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도모한다. 체계적으로 새로운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 에너지, 바이오, 고급 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차(하이브리드 카) 등의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선도적이고 중심이 되는 산업 형성을 가속화하고, 산업 핵심 경쟁력과 경제 수익을 철저히 제고한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을 선두로 삼아 산업 혁신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재무세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하이테크 산업이 강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14) 서비스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산업 구조 개선의 전략적 중점으로 삼고, 공평하고, 규범적이고, 투명한 시장 진입 표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신흥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방법을 탐색한다. 세율과 토지, 물, 전기 등 요소 가격 정책을 조정하고,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시스템 환경을 조성한다. 생산성 서비스업과 생활성 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관광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서비스업의 신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배양하며,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된 경영을 추진한다. 특대형 도시에는 서비스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5) 현대 에너지 산업과 종합 운수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에너지 생산과 이용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깨끗한 현대 에너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통 에너지 자원을 보다 깨끗하고 고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수력발전을 개발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초 위에 핵 발전을 추진한다. 전력망 건설을 강화하고, 지능 전력망을 발전시키고, 가스관을 개선시키고, 가스의 전략적 비축을 확대한다. 적절한 발전 원칙에 근거하여, 다양한 운수 방식의 발전을 종합하여, 간편하고, 안전하며, 고효율적인 종합 운수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운수루트 건설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국가 고속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고속철도를 발전시키고, 성간 연결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강화하고, 수운을 적극 발전시키고, 항구와 공항의 분포를 개선하여, 공역(空域) 관리 체제를 개혁한다.

(16) 정보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각 영역의 정보화를 가속화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며, e-business를 적극 발전시킨다. 또한 중요한 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지리, 인구, 금융, 조세, 통계 등 기초적 정보자원의 개발 이용을 강화한다. 전신망, 방송망, 인터넷 등 “3망 융합”을 실현시키고, 융합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광대역 국가 정보 기초시설을 구축한다. 물련망(物聯網) 연구개발 응용을 추진한다.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활을 중점으로 하여, 국가 전자정부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정부 공공서비스와 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기초 정보망과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한다.

(17) 해양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육해 통합발전을 유지하여, 해양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해양 개발, 통제, 종합 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과학적으로 해양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해양 가스, 운수, 어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개발한다. 주요 항구 건설을 강화하고, 섬, 해안선, 및 해양의 주요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해상 교통망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해양의 권익을 보호한다.

5.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화를 온당하게 적극 추진한다.

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과 주요 기능구(功能區) 전략을 시행하고, 지역경제 비교우위의 상호보완, 주요 기능 지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국토공간의 고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발전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중국 특색의 도시화를 견지하고, 도시화 발전규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18) 지역 발전의 총체적전략을 실시한다.

서부대개발 전략의 시행을 심화하는 것을 지역 발전의 총체적 전략의 우선적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특수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자원 비교우위와 생태안전 보호막이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 교육을 크게 발전시키고, 특수한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발전을 지지한다. 서장(西藏), 신장(新疆)과 기타 민족지역의 발전 지지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의 발전을 지지한다. 동북지역 등 낙후된 공업지역을 전면적으로 진흥시키고, 산업과 과학기술 기초가 강한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적 산업체계를 개선하고, 자원 고갈 지역의 전환형(轉型)발전을 촉진한다. 중부 지역의 경우 동부와 서부를 잇는 지역적 우위를 발휘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위산업을 강화하고, 현대 산업체계를 발전시키고, 교통운수의 중추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중부궤기를 촉진한다. 동부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이 전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더 높은 단계에서 국제 경제 협력 및 경쟁에 참여하고, 경제발전방식의 변화와 경제 구조조정 및 자주혁신에서 전국의 선두에 서도록 하여 발전을 적극 지지한다. 지역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완전하게 하여, 시장장벽을 없애고,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산업의 질서 있는 이전을 유도한다. 지역간 서로 돕는 정책을 시행하고, 다양한 형식의 상호지원을 전개한다. 낙후지역, 소수민족 지역, 변경 지역, 빈곤 지역 개혁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경제특구, 상해 푸둥지구, 천진 임해지역이 개혁개방에 있어 먼저 시행하고 먼저 실험해보는(先行先試) 중요한 작용을 더욱 발휘하게 한다. 연해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국제 연결도시, 변경 도시 및 항구 건설을 강화하고, 변경 지역은 부흥시키고 인민을 부유하게 하는(興邊富民) 행동을 심화 시행한다.

(19) 주요 기능구 전략을 시행한다.

전국 경제의 합리적 안배 요구에 비추어, 개발 질서를 규범화하고, 개발 강도를 통제하고, 고효율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구조를 형성한다. 인구가 밀집되고, 개방도가 비교적 높으며, 자원환경 부담이 과도한 일부 도시화 지역의 경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자원 환경 적재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인구가 모여 있고, 경제 조건이 비교적 좋은 도시화 지역은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 생태 기능지는 대규모, 고강도의 공업화 도시화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 급의 각종 자연문화자원 보호지구와 기타 특수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주요 기능구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과 법규, 정책, 계획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평가 방법 및 이익보상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하고, 각 지역이 엄격하게 주요 기능 지위에 따라 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20) 도시화의 안배 및 형태를 완전하게 한다.

총괄적 계획, 합리적 배치, 기능 개선, 큰 것이 작은 것을 이끄는(以大帶小) 원칙에 근거하여 도시화 발전의 객관적 규율을 따르도록 한다. 대도시를 근거로 하고, 중소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복사 작용이 큰 도시군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중대형 도시와 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군에 속한 각 도시의 기능적 지위와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거대도시 중심부의 압력을 완화하고, 중형도시의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도시의 공공 서비스 및 주거기능을 강화한다. 중대형 도시의 교통, 통신, 전기공급, 배수시설 등 기초 시설의 일체화 건설과 네트워크화 발전을 추진한다.

(21) 도시화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 중 도시 호적등재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도시화의 중요임무로 삼아야 한다. 대도시는 인구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중형도시와 소도시는 실제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외부 유입인구의 호적등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농민공의 권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 도시개발지역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발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제고시켜, 거대도시의 면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시 계획 및 건설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토지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해당 도시

만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한다. 또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해야하고,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도시 공용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병”을 예방하고 처리한다. 토지, 재세, 금융정책의 조절을 강화하고, 주택 정보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국정에 맞는 주택 시스템과 정책 체계를 완전하게 하는 한편 주택 수요를 합리적으로 유도한다. 각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보장성安居공정(安居工程) 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판자촌의 개조를 가속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발전시키고, 중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증대시킨다.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6.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태문명 수준을 제고한다.

자원 환경의 제약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위기 의식을 키워야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 이념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및 배기가스 방출 감소를 중점으로 삼는다. 상벌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및 소비모델 구축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증대시킨다.

(22) 지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을 제약성 지표로 삼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억제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 심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법규 및 표준을 개선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장화메커니즘과 기업에 대한 상벌제도를 완전하게 하고, 중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선진 에너지 절약 기술 및 관련 상품을 널리 보급하고, 통합 에너지 관리 추진을 가속화하고, 공업, 건축, 교통 운수 등 중점 영역의 에너지 절약을 확실히 한다. 에너지 소비구조를 조정하고,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삼림의 복개율을 높이고, 비축량을 늘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양 퇴적층에 저장하는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 변화, 특히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 및 배기량 감소와 관련된 통계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한다. 동시에 저탄소 기술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가속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공동의, 그러나 구분되는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한다.

(23) 순환 경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에너지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계획 지도 및 세세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법규를 개선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를 실행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순환형 경제발전을 추진한다. 자원 순환을 이용하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광산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확대한다. 산업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권장하고, 재생자원 회수체계와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개선시켜, 자원 재생이용 산업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자원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대신, 그를 순환시켜 이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저로 낮추도록 한다. 산업 연계기술을 개발, 응용하고 순환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을 널리 보급한다.

(24) 자원 절약과 관리를 강화한다.

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자원이용 총량 통제, 공급 및 수요의 쌍방향 조절 및 차별화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에 대한 지질탐사, 보호, 합리적 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의 전략적 연결지역을 구축하고, 중요 광산자원 저장 시스템을 확립한다. 토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규획과 연도 계획의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용도 관리제도를 엄격히 하는 한편, 토지 절약표준을 개선하고, 토지의 사용 및 절약의 책임과 평가를 강화한다. 수자원 안전을 중시하고, 물 절약형 사회를 건설하고, 수자원 안배 체계를 개선시킨다. 수자원관리와 유상사용을 강화하고, 해수의 담수화를 추진하고, 지하수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25) 환경보호의 강도를 높인다.

식수, 공기, 토양 오염 등 대중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삼고, 종합 처리를 강화하여, 환경의 수준을 현저히 개선시킨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 책임제를 실행하고, 오염물 배출 감소 및 처리를 강화하고, 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주요 오염물의 종류를 늘린다. 도시 오수 및 쓰레기 처리설비를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요 유역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도시의 공기 및 소음공해를 제어한다. 중금속, 위험 폐기물 및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고,

핵과 방사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환경 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법의 집행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환경 사건과 오염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보호형 과학기술 및 경제 정책을 개선하고,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 제도를 수립하고, 다원화된 환경보호형 투융자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26) 생태계 보호와 재해방지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자연의 회복을 중심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생태환경 악화 추세를 전환시키도록 한다. 중요한 생태 복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천연산림의 보호와 함께 경작지를 산림 및 초원으로(退耕還林還草), 방목지를 초원으로(退牧還草) 되돌리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막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초원 및 습지를 보호하도록 한다. 생태계의 자연보상 메커니즘을 가속화하여, 중점 생태 기능구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 보존, 수토 유지, 방풍 및 토양고정력을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 수리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주요 하천 및 호수에 대한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도시의 홍수방지 능력을 증대시킨다. 지질재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예방 시스템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주요 지역의 지질재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긴급구호대 설립을 강화하여, 물자에 대한 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자연재난 위험 평가를 추진하여,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 및 생활과 관련된 주요 설비의 과학적으로 안배되어 재난 발생시 합리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7.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한다.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고,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교육, 인재 계획 요강의 전면적 시행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크게 제고시키고, 교육개혁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재 자원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실현을 위해 튼튼한 과학기술 및 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27)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증강시킨다.

자주혁신, 주요 부문에서의 따라잡기(跨越), 핵심적 발전, 미래 선도의 방침을 견지하도록 한다. 널리 통용되는 기술 및 핵심기술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 생산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국가 주요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식 및 기술 혁신의 신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구조 개선, 민생개선을 긴밀히 연결하여, 일차적 혁신, 집적(集成)혁신 및 기술 도입 및 응용 능력을 강화하고, 현대 농업, 장비제조업, 생태환경보호, 에너지자원, 정보네트워크, 신형소재, 보건위생 등 부문에서 혁신적 발전을 도모한다. 핵심전자 부품, 초대형 규모의 집적회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전자조작품종, 신약개발 등 부문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생명과학, 해양공간, 지구과학, 나노미터 기술 등 부문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경쟁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28)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개선한다.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연구 및 고등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혁신 시스템을 건설하고, 기초적, 선도적 기술 및 널리 통용되는 기술 연구 플랫폼 구축을 강화한다. 군민(軍民) 과학기술 자원의 집적 융합을 강화하고, 각 현(具)의 특색을 갖춘 지역 혁신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를 독려하고, 과학 연구 경비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성과 평가 및 상벌 제도를 개선한다. 혁신 요소들이 기업 부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방향을 잡아주며, 산학이 조화롭게 기술혁신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기술 연구소 및 고등학교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대형 기업이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역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가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엘리트들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과 창조를 유도한다. 기업의 혁신 및 과학 연구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재정적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중대 과학기술 기초 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과 금융 부문의 연결을 도모하여, 창업 리스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 발전시키도록 한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실시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의 운용,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

(29) 교육 개혁 발전을 가속화한다.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발전을 우선시하고, 인재 육성을 근본으로 하되, 개혁과 혁신, 평등의 촉진, 품질 개선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부문의 개혁을 심화하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품성 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규칙과 학생들의 심신발전 규칙을 준수하되, 덕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학습전 교육을 발전시키고, 의무교육 품질 및 수준을 제고하며, 고등 교육을 더욱 빠르게 보급시킨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등 교육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민족 특성을 살리는 교육 및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형 사회를 건설하도록 한다. 인재육성 시스템, 교육 관리 시스템, 학교 설립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습 내용, 지도방법, 강의 평가, 입학시험 및 신입생 모집 등의 제도를 개혁한다.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고, 공공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농촌 지역, 변경의 빈곤지역, 소수 민족지역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은 스승으로서의 규범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사 업무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교육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사회 역량을 교육 확대에 집중시켜 현재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을 이루도록 하고, 중요한 교육 개혁 및 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30) 인재강국 건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서비스 개선, 인재우선, 인재활용, 혁신 메커니즘, 고위급의 선도, 전반적인 개발 등의 지도방침을 견지하도록 한다.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대단위로 육성하고, 국내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의 우수인재 역시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거시적 관리를 맡고,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당하며, 개별 기업은 자체적으로 고용을 추진하고, 개인은 적극적으로 창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변화된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한다. 인재를 존중하며, 공개적이고 평등한 평등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인재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의 인력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8. 사회건설을 강화하여 완전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생활 개선 및 사회보장을 중점으로 삼아, 국정에 부합하되 도농을 아우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의 사회보장능력을 제고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사회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 취업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더욱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루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창업을 고무시키고, 충분한 취업을 촉진시킨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일하고 개선시킴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욱 나아진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준비 교육 및 직업 선택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 및 농촌에서 온 노동자, 농촌 실업자 등의 취업난 해결을 중점으로 삼는다. 또한 퇴역 군인의 취업 문제도 잘 해결하도록 한다. 노동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정부와 노조, 기업의 노력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이익 체계를 형성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32) 소득 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노동을 기준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체도를 유지하고 이를 개선한다. 소득의 최초 분배와 재분배에서는 효율성과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재분배에 있어서는 균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계소득이 총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노동임금이 소득의 최초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성 소득을 증가시킨다. 취업을 확

대하고 노동자 소득을 증가시키는 발전적인 환경과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촉진한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이 적절하게 상승, 지불될 수 있도록 한다.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세수의 소득분배 조절작용을 강화하여 과다한 소득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격차 확대 추세를 전환시키도록 한다. 공무원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업단위(事業單位) 소득 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33)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보장범위를 넓히고, 기본적인 사항을 보장하며, 다단계로 구분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건설을 촉진한다. 신형 농촌사회 양로 보험제도의 확대를 실현하여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 및 주민의 양로 보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기초 노후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기관사업체 수준의 양로 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의 양로보험 계정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다른 성으로 이주하여도 노후연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보장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기업 연금(企業年金)과 직업 연금(職業年金) 제도도 함께 발전시키는 한편 상업 보험의 보완 작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시와 농촌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연금자산의 투자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 자선사업을 크게 확대시킨다. 사회보장 관련 정보망 구축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카드 사용을 추진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관리를 실현한다.

(34) 의료 보건사업 개혁 발전을 가속화한다.

기본적 사항 보장, 기본계층 강화, 체계 구축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여 의료 보건 시스템의 개혁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적극성을 끌어올려, 기본 의료보건제도를 공공상품으로써 전 인민에게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대중의 기본적 의료보건 수요를 만족시킨다. 공공보건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적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 의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보장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킨다. 국가 기본 약품제도를 기초로 하는 약품 공급 보장체계를 구축, 개선하여 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도농 의료보건 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 보건 자원 중점을 농촌과 도시 지역에 두고, 의학 인재육성에

있어 특히 모든 과를 다 진료할 수 있는 의사(全科醫生) 육성을 강화하고 이들을 통해 장기적 기초 서비스 장려 정책을 개선시킨다. 공립병원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도시의 병원과 기초 의료시설의 합리적 업무분담과 협력 체계 형성을 모색한다. 서양 의학과 중의학을 함께 중시하고 중의학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주요 전염병, 만성병, 직업병, 풍토병,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한다. 사회 자본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대중의 다양한 의료보건 수요를 만족시킨다.

(35) 인구 관리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처리한다.

기본 국책인 계획생육(計劃生育)을 견지하되,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전반적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태어나는 아기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시키고 출생 인구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를 억제한다. 남녀평등을 견지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및 아동사업을 발전시킨다.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가정 및 사회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 양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노령인구를 위한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장애인 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완전하게 한다.

(36)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개혁한다.

당 위원회에서 지도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며, 사회에서의 협동을 통해 민중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 관리 구조 건설의 요구에 입각하여, 사회 관리와 관련된 법률, 체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고, 기초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초 당 조직의 업무를 강화, 개선하고, 민간조직 및 사회조직의 작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농 지역의 자치 및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사회 관리 및 서비스가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과 정부 주도의 민중 권익 보호체제를 개선하고 인민 중재, 행정 중재, 사법중재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갈등과 규분을 조정, 화해시킬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건설한다. 민중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익을 조정하며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루트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규범화한다. 주요 프로젝트 시행 및 주요 정책 제정으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민의 내부 갈등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각종 불안정 요인을 초기단계에서 해소시킨다. 공공안전에 대

한 투입을 확대하고 안전한 생산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와 재난, 공공보건문제, 식품안전 문제, 사회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예방과 긴급 처리 체계를 개선한다. 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를 잘하고 특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사회 관리의 취약한 부분의 정비를 강화한다. 사회 치안 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농촌 지역의 경찰 업무, 시민들의 자주적인 치안 유지 활동 등 기초 건설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로 정법 관계자를 육성하여, 엄격하고 공정, 청렴한 법 집행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 안전과 사회 치안 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주요 지역의 사회 치안 종합 처리능력을 강화한다. 각종 범죄 활동에 대한 처벌 및 방비 활동을 철저히 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

9. 문화의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한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과 영혼이며 국가 발전과 민족 진흥의 강대한 역량이다.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중화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문화를 건설하도록 한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부단히 증대되는 국민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사회를 인도하고, 인민을 교육하고, 발전을 이끄는 문화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적 낙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응집력과 창조력을 강화한다.

(37) 전 민족의 문명 수준을 제고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건설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이상 신념 교육을 강화한다. 애국, 준법, 책임, 성실, 신용 등의 가치를 제창하고, 중화 전통의 미덕을 계승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도덕과 행위 규범을 구축한다. 사회 공중도덕, 직업윤리, 가정 미덕, 개인 성품 강화를 추진하고, 대중적인 정신문명 창조 활동을 부단히 개척하며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널리 전개한다. 과학 정신을 널리 발전시키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며, 심리적 소통을 중시하고, 진취적, 이성적, 평화적, 개방적, 포용적 사회적 심리상태를 조성한다.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단속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아이를 사랑하고 근면하게 일하

며, 사람됨이 꾸밈없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창업을 지지하고 노동으로 부유해짐을 격려하며 공동체정신을 발양한다. 사회문화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한다. 교육, 법률, 행정, 여론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영예와 수치를 알게 하고, 정의를 논하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동시에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릇된 것은 배척하는 권선징악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38) 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대중문화 수요의 새로운 변화 및 요구에 맞추어, 주요한 부문은 더욱 널리 발전시키는 동시에 문화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정신문화 상품과 사회 문화생활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지게 한다. 현대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 입각하되, 우수한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세계 문명 발전성과를 거울삼아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현실생활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 상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예술성이 뛰어나 대중이 좋아하는 문화 상품을 만들도록 한다. 학문의 체계, 학술의 주요 관점, 과학연구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철학과 사회과학을 발전시킨다. 문화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여 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보급 방식을 개혁하여 문화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전반적인 문화발전의 활력을 증강시킨다.

(39)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발전시킨다.

공익성을 갖춘 문화사업과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되, 사회적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한다. 농촌 기초 계층 및 중서부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문화혜민공정(文化惠民工程)을 시행하고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건설한다. 대중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특히 중요 뉴스 미디어 구축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 신규 매체의 건설, 운용, 관리를 중시하여, 정확한 여론의 역할을 확보하고 보도 능력을 제고한다. 기초 계층에 대한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익성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의 지도 하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문화 기업 및 전략적 투자자를 배양하고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장려한다. 또한 신형 문화산업의 경영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다원화된 공급능력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화된 사회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 문화 시장을 번영시키며, 문화 산업이 국민 경제의 지주산업이 되도록 한다. 대외홍

보와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문화의 “저우추취(走出去)” 모델을 개혁하고 중국의 문화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증강시킨다. 전 인민의 건강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강시키고 운동경기의 수준을 제고하고 민족정신을 진작시킨다.

10. 개혁을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개선한다.

개혁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중국은 반드시 더욱 큰 결심과 용기로 각 영역에 대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개혁의 상부설계와 전체적인 기획을 더욱 중시하고, 우선순위 및 중점 임무에 대한 명확한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각 방면의 혁 적극성을 한층 더 강조하며 동원하고, 국민들이 직접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제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 체제 개혁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며, 문화 체제와 사회 체제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부구조가 경제 기초발전의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과학발전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0) 기초 경제제도를 유지, 개선시킨다.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초 경제제도를 유지하되,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 환경을 건설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합리적 유동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국유 대형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독점산업의 개혁을 심화한다. 각종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국유자본 경영 예산과 수익 분배제도를 개선한다.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유도하며, 비공유제 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유 기업의 개혁을 장려한다.

(41)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기능을 한층 더 변화시켜 행정 심사 및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한다. 또한 미시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감소시키고,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정부 기구와 행정 단계, 업무 책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대부문 제도(大部門制) 개혁 추진을 견지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현(시)에 대한 성의 직접적 관리 체제를 모색한다. 과학적 정책, 민주적 정책, 법에 의거한 정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공정책 제정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행정 문책제도를 강화하고 행정 재심의와 행정소송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성과 효율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42) 재정세제 개혁을 가속화한다.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유리한 재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직권의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 규모와 직권이 서로 상응할 수 있도록 각급 정부의 재정 분배 관계를 조정한다. 일반적 이전지출 규모와 비율을 증대시키고, 현급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 보장을 강화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완비성 및 투명도를 높인다. 세수 제도를 개혁, 개선한다. 부가가치세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여 영업세 등의 세수를 하향조정하고, 소비세의 범위와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업구조 개선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펴도록 한다. 종합성과 개별성이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 나간다. 세금 부문의 개혁(費改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세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환경 보호세를 징수하고, 부동산세 개혁을 연구, 추진한다. 지방세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성급 정부에 적당한 세정(tax administration) 관리 권한을 준다.

(43)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역주기의 거시 금융관리제도의 틀을 구축한다. 이자율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기초한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외환보유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도록 한다. 인민폐 자본항목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며,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경보체계와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제금융 규범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중국 금융업의 안정적 수준을 끌어올린다. 예금보험제도를 갖추고, 정책성 은행 체제개혁을 심화한다. 국유 금융자산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금융관리체제를 개선한다.

(44) 자원성 상품 가격과 요소시장의 개혁을 심화한다.

석탄, 전기, 석유, 가스, 물, 광물 등 자원성 상품 가격을 바로잡고 주요 상품, 서비스,

요소가격 등에 대한 가격 형성메커니즘을 개혁시킨다. 여러 단계(多層次)의 자본시장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용자 비중을 현저히 제고시킨다. 채권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장외교역 시장과 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토지, 자본, 노동력, 기술, 정보 등 생산요소 시장을 개선시키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법규 및 관리감독 체제를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45) 사회사업 체제개혁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 체육 등의 사업에 있어 단위(單位)분류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해당 조직이 법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본적 공공 서비스 제공방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매서비스를 확대하며, 제공 주체 및 방식의 다원화를 실현한다. 여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단계의 공급 능력을 증강시켜 다양화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11. 호혜적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대외 개방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린다.

과거 수출과 외자도입이 대외개방의 주를 이루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입과 수출, 외자도입과 대외투자가 병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새로운 개방 영역 및 공간을 개척하고, 각 교역상대국과의 상호이익이 실현되는 공통분모를 확대, 심화하도록 한다. 발전개방형 경제의 수요에 더욱 적절한 시스템을 완비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예방하고, 개방을 통해 발전과 개혁, 혁신을 촉진하도록 한다.

(46) 대외무역구조를 개선한다.

외부수요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출 비교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새로운 비교우위를 조속히 강화시키고, 가공무역의 국내 부가가치 사슬을 연장시키도록 한다. 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무역을 힘써 발전시키고, 수출 구조

의 변화와 고도화를 촉진한다. 수입이 거시경제 균형과 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하고 무역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7) 외자 활용도를 제고한다.

외자 이용에 있어 그 활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사용 방식의 다양화, 활용 루트의 다변화, 활용 수준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투자의 소프트웨어적 환경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지적능력, 인재 및 기술의 도입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제 선진 관리 이념, 제도, 경험을 거울 삼아 체제 혁신과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아웃소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의료, 스포츠 등 영역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자원을 도입하여 서비스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

(48) “저우추취” 전략 실행을 가속화한다.

시장경제의 기본에 따라 시장 및 기업의 주동적 결정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기업들이 대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시키고,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에너지자원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민생개선에 유리한 항목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중국의 대형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금융기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국제화 경영 수준을 제고시킨다. 대외무역과 투자에 있어 인민폐의 작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투자환경 연구를 통해 투자항목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강화한다. 종합적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저우추취” 전략에 대한 거시적 지도 및 관련 서비스 시행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위험을 예방한다.

(49) 글로벌 경제 조정 및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균형적이고 보편적이며 호혜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 지역 협력을 이끌어내고, 적극 추진하며, FTA 전략 시행을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신흥 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과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확대한다.

12. 전 당과 전국 각 민족, 전 인민이 단결하여 12.5 규획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0) 당은 지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당의 지도는 12.5 시기의 경제사회발전 목표 실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당의 지도역량 강화와 선진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당의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한다. 각 급 당 위원회는 발전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발전 청사진을 계획하고, 발전모델 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발전에 대한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한다. 학습형 당 조직 건설을 추진하고 간부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 및 개선하고, 계획의 실천을 중시하고, 지도자 그룹과 지도 간부들이 과학발전관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간부급에 대한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선발 및 임용 시스템을 개선하며, 지도자 그룹과 지도자 간부들에 대한 심사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과학발전에 유리한 인재 활용 방침을 정립한다.

(51)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당이 지도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의한 통치라는 세 가지 원칙이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견지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국민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표현할 권리, 감독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 민족 지역 자치제도 및 기초 계층의 대중 자치제도를 유지, 개선시킨다.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인민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족과 종교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여 민족 단결과 교육 진보를 강화한다.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더욱 더 강화 실행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 제도의 권위를 보호하고, 법에 의한 행정, 공정 청렴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보편적인 법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한다.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한다.

(52)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한다.

샤오강사회의 전면적 건설 과정 중 부국강병(富國強軍)을 실현하고,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택동의 군사사상,

등소평의 신세기 군대 건설사상, 장쩌민의 국방 및 군대 건설사상을 지도적 사상으로 견지하고, 과학발전관을 국방 및 군대 건설의 중요 지도방침으로 삼고, 신세기 군사 전략방침을 관철하며, 군대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한다. 군대의 기계화 및 정보화의 복합적 발전을 강화하고, 정보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국지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함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 임무 다양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지도관리 체제를 개선하며, 연합작전 지휘체제를 공고히 한다. 또한 신형 작전 역량을 발전시키고, 군사 이론, 군사 기술, 군사 조직, 군사 관리 부문의 혁신을 추진한다. 군민 융합식 발전모델을 견지하고,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과학연구 생산체계, 군대 인재육성 시스템 및 군대 보장시스템과 국방 동원시스템을 개선시킨다. 현대화 무장경찰 역량을 강화하고,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 교육을 심화하고, 예비군 역할을 강화하고, 군대와 정부, 국민 간의 단결을 밀접하게 한다.

(53)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 등 고도의 자치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및 정부가 법에 의한 집정을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 무역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광둥-홍콩-마카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항공 센터 지위를 강화하고, 산업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마카오의 세계여행 휴양지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경제의 적절한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54)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한다.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방침과 현 단계의 양안관계 발전 및 조국평화통일과정의 8개 주장을 견지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 주요 사상과 6개 의견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한다.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주제를 확고히 하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열 활동을 반대한다. 양안관계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양안 경제협력을 심화한다. 양안 경제협력의 기본 골격이 되는 주요 협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 쌍방 투자를 촉진하며, 신흥 산업, 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안 간 다양한 부문에서의 왕래를 적극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 등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만 동포의 정상적인

권익을 법으로 보호한다. 해협서안경제구역이 양안 교류협력에 있어 시범지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55) 유리한 외부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평화, 발전, 협력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 독립의 평화 외교정책을 따르며,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견지하도록 한다. 호혜적인 개방 전략을 견지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 국과 함께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주변 국가와 선린우회 관계 및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공동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한다. 개발도상국과의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우애를 심화시키며 공동의 이익을 보호한다. 다자간 외교를 확대 실시하고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의 해외 공민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과의 상호 이해 및 우애를 증진시킨다.

(56) 전 당의 구성원은 과학발전관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선봉으로서 전 인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전 공산당원은 흔들림 없이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하고, 과학발전관의 이념을 견고하게 수립하여,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제정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당의 기초 조직 건설을 확고히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중국 국민들이 경제 및 사회를 보다 더, 보다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는 최선을 다해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및 당의 대중노선을 견지하며, 언제나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확한 지적관(政績觀)을 수립하고, 실천, 인민, 역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의 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중앙 주요정책 안배 및 집행의 정황과 관련된 기강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중앙의 정치적 명령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제창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여 청렴한 정치를 당의 기풍으로 건설하는 책임제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당의 성격, 기풍, 기강 등에 관한 교육을 심화하고, 지도 간부의 청렴에 대한 자율적 단속과 엄격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권력사용에 있어 제약 및 감독을 엄격히 하고, 규율 및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강도를 강화한다.

당의 빛나는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발양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자만하지 않고 조금 해하지도 않아야 한다. 또한 각고분투하고,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일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반대한다. 우수한 당의 기풍으로 당의 마음과 인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강한 역량을 구축한다.

전 당의 구성원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은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을 해방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며, 개척, 혁신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의 실현과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분투하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³

- 제1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관리 강화, 건강과 동식물 및 미생물의 안전 보장, 생태환경 보호,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기술의 연구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실험, 생산, 가공, 경영,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Genom)구성을 변형시킨 것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산물가공에 이용되는 동식물, 미생물 및 그 생산품을 가리킨다.
- 유전자변형생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유전자변형 동식물(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포함)과 미생물
 - (2) 유전자변형 동식물·미생물의 생산물
 - (3)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직접가공품
 - (4) 유전자변형 동식물·미생물 혹은 그 생산물의 성분을 포함한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 농약, 동물용 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 제품
-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잠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 제4조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행정지역내의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위생행정주관부

* 200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4호로 공포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를 번역·정리하였음.

서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식품위생안전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제5조 국무원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부의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한다. 연석회의는 농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위생, 대외경제무역, 검역 등 관련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업무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협의한다.

제6조 국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에 대하여 등급별로 관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인류, 동식물, 미생물, 생태환경 등에 대한 위험정도에 따라 I, II, III, IV 4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7조 국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제도를 수립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의 기준과 기술규범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8조 국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하여 표시제도를 실시한다. 표시를 필요로 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2 장 연구와 실험

제9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안전평가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農業轉基因生物安全委員會)를 설립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생산, 가공, 검역 및 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업무를 필요에 따라 검사조건과 능력을 갖춘 기술검사기구에 위탁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와 실험에 종사하는 기관은 안전등급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연구와 실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소조(農業轉基因生物安全小組)를 설립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실험에 대한 안

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2조 Ⅲ, Ⅳ급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에 종사할 경우, 연구를 하기 전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중간실험, 환경방출(environmental release), 생산성실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중간실험은 제어시스템 내에서 혹은 통제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소규모실험이다. 환경방출은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진행되는 중간 규모의 실험이다. 생산성실험은 생산과 응용 전에 진행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실험이다.

제14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실험실 연구가 종료된 후 중간실험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실험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실험이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실험으로 넘어갈 때, 실험기관은 국무원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안전평가에 합격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다음 단계의 실험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준한다.

실험기관은 신청 시,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1)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등급과 안전등급 확정의 근거
- (2) 농업유전자변형생물기술검사기구(農業轉基因生物技術檢測機構)가 발행한 검사보고서
- (3) 상응하는 안전관리·대비조치
-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자료

제16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실험에 종사하는 기관은 생산성실험이 종료된 후,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실험기관은 신청서 제출 시,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1)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등급과 안전등급 확정의 근거
- (2) 농업유전자변형생물기술검사기구가 발행한 검사보고서
- (3) 생산성실험의 총괄보고서
-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자료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받은 후,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평가에 합격한 후에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교부한다.

제17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나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종자·종축가금·수산종묘, 농약, 동물용 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등록 혹은 평가·비준 전에 본 조례의 제16조에 의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18조 중외합작, 합자 또는 외국측 독자(獨資)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와 실험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생산과 가공

제19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생산할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발행하는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생산기관과 개인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의 생산허가증 신청 시, 관련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이외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취득하고 품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2) 지정된 구역에서 종식(재배) 혹은 양식한다.
- (3) 상응하는 안전관리·대비조치 마련
-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20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개인과 기관은 생산기록을 작성하고, 생산지점, 유전자 및 그 출처, 유전자변형의 방법 및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의 유통 경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제21조 기관과 개인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 가공에 종사하고자할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가 비준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2조 농민이 유전자변형 동식물을 양식, 종식(재배)할 경우 종자, 종축가금, 수산 종묘의 판매기관이 본 조례의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수속을 대행한다.

제23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과 가공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은 허가된 품종, 범위, 안전관리요구, 상응하는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에 생산, 가공, 안전관리 상황과 제품의 유통경로를 보고한다.

제24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 가공 과정 중 유전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생산가공 기관과 개인은 안전구제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제25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운송, 저장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등급에 부합하는 안전통제조치를 취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운송, 저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4 장 경 영

제26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경영하는 기관과 개인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경영기관과 개인의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 경영허가증 신청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전문관리인과 경영기록이 있어야 한다.
- (2) 상응하는 안전관리, 대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제27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경영하는 기관과 개인은 경영기록을 작성하고,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의 출처, 저장, 운송, 판매 경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농업유전자변형생물목록에 포함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판매할 경우 정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목록에 포함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생산, 포장업체 및 개인이 표시를 담당한다.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할 수 없다. 경영기관과 개인은 상품 구입 시 상품과 표시 내용의 대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시내용에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된 주원재료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특수한 판매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범위를 기재해야 하고 지정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30조 농업유전자생물의 광고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을 거친 후 게재, 방송, 설치, 게시가 가능하다.

제 5 장 수출입

제31조 국외에서 수입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연구, 실험에 사용된 경우 수입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비준한다.

- (1)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 (2) 수입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국외에서 이미 그에 상응하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어야 한다.
- (3) 상응하는 안전관리, 대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2조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였거나 유전자변형생물의 성분을 함유한 식물 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 농약, 동물용 약품, 비료, 첨가제를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수출할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실험재료의 입국을 비준하고 본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중간실험, 환경방출(environmental release), 생산성실험을 실시한다.

- (1)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알맞은 용도로서 시판하는 것을 허가했어야 한다.
- (2)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인류, 동식물, 미생물, 생태환경에 무해하다는 과학 실험증명을 거쳐야 한다.
- (3) 상응하는 안전관리, 대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성실험이 완료된 후 안전평가합격을 거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취득하면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등기 또는 평가, 비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외국회사가 가공원료용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수출할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부합하고 안전평가합격을 거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발급한다.

- (1)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알맞은 용도로서 시판하는 것을 허가했어야 한다.
- (2)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인류, 동식물, 미생물, 생태환경에 무해하다는 과학 실험증명을 거쳐야 한다.
- (3) 농업유전자변형생물기술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인류, 동식물, 미생물, 생태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4) 상응하는 안전관리, 대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4조 국외로부터 들여온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기관 또는 외국회사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와 관련비준문건에 의거하여 항구출입경검험검역기구(口岸出入境檢驗檢疫機構)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검역합격 후에 해관에 관련수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중국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경우, 화주(貨主)는 국가출입경검험검역기구(國家出入境檢驗檢疫機構)에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을 받으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7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국외로 농산물을 수출할 때 외국측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항구출입경검험검역기구(口岸出入境檢驗檢疫機構)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제공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정보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비유전자변형농산물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제38조 수입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발행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및 관련비준문건이 없거나 해당 증서, 비준문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 또는 소각처리 한다. 수입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시 표시작업을 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제 6 장 감독·검사

제39조 농업행정주관부서는 감독, 검사의 책무를 수행할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 (1) 검사를 받는 연구, 실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출입 기관, 이해관계자, 증명인에게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과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기타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2)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실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출입과 관련된 문서나 장부, 서류 등을 열람하고 복제한다.
- (3) 관련기관 및 개인에게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 (4)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를 위반한 기관과 개인에게 위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린다.
- (5)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비합법적인 연구, 실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출입을 할 경우 봉인 또는 압수한다.

제40조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41조 관련기관 및 개인은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검사에 대하여 협조해야 하고, 검사감독인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인류, 동식물, 생태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발견되었을 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생산, 가공, 경영, 수입을 금지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증서를 회수하고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을 소각할 권한이 있다.

제 7 장 벌 칙

제43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Ⅲ, Ⅳ급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또는 중간실험의 진행을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연구 또는 중간실험의 일시정지와 함께 기한을 정하여 잘못을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제4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환경방출, 생산성실험에 종사한 경우, 이미 기준을 받았지만 안전관리, 대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준범위 이외의 실험을 진행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실험정지를 명령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성실험 완료 후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 및 응용에 투입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생산, 응용정지를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본 조례의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와 실험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즉시 연구와 실험의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심사비준수속을 다시 밟도록 한다.

제47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을 거치지 않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 가공하거나 허가된 품종, 범위, 안전관리요구, 기술표준에 따르지 않고 생산, 가공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생산과 가공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 및 위법소득은 회수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물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를 생산, 경영하는 기관과 개인이 규정에 따라 제작, 보존생산, 경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을 하고 1000위안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물종자, 종축가금, 수산종묘의 판매기관이 심사비준수속 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과정중 대행비용을 받은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수입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수입정지를 명령하고 이미 수입된 제품 및 위법소득은 회수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휴대, 우편 발송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항구출입경검험검역기구(口岸出入境檢驗檢疫機構)에 보고하지 않거나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서(國家出入境檢驗檢疫部門)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 농업유전자변

형생물을 국외로 이동시켰을 경우, 항구출입경검험검역기구 또는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동식물검역법(進出境動植物檢疫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본 조례의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불법 판매한 제품과 위법소득은 회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3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관련증명문서를 위조, 양도, 매매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해당 증명문서를 회수하고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5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실험,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수출입 과정 중 발생한 유전자안전사고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55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행정주관부서가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및 기타비준문건을 심사하여 발급했거나 허가증,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및 기타비준문건 심사발급 후 관리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 실무자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 8 장 부 칙

제56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IV. 농업통계

- 한·중 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	565.2	4.8	4,809.3	16.3	414.8	10.3	2,634.3	15.7
2010.1	57.8	1100.2	396.7	14.6	31.9	77.7	212.4	15.0
2010.2	99.8	42.5	771.2	12.9	60.5	25.5	402.1	15.0
2010.3	165.2	56.8	1,209.3	13.7	105.3	41.8	624.4	16.9
2010.4	231.3	55.2	1,667.1	13.9	151.6	38.5	877.8	17.3
2010.5	280.7	51.4	2,099.2	13.4	182.8	35.2	1,105.5	16.5
2010.6	335.7	51.5	2,585.9	13.0	214.2	29.3	1,343.8	15.9
2010.7	395.4	46.5	3,075.4	12.9	253.5	21.5	1,621.6	15.6
2010.8	458.6	45.5	3,544.8	12.9	293.7	17.5	1,869.7	15.7
2010.9	528.3	43.0	4,058.3	13.0	332.5	15.3	2,128.8	15.6
2010.10	613.4	42.8	4,642.9	13.2	379.3	15.1	2,408.5	15.7
2010.11	691.8	41.8	5,211.9	13.3	424.2	15.0	2,665.0	15.9
2010.12	787.4	39.3	5,880.0	13.4	474.3	14.3	3,104.0	15.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	3,676.0	1.3	21,240.9	17.3	6,834.5	39.2	43,519.0	15.7
2010.1	331.6	10.3	1,893.6	17.5	525.7	6.8	3,472.1	15.1
2010.2	656.1	24.4	3,675.4	17.9	1,026.8	14.1	6,952.3	14.8
2010.3	1,031.8	24.8	5,916.5	17.4	1,636.0	15.2	11,249.3	14.5
2010.4	1,438.6	21.1	8,170.5	17.6	2,298.7	12.3	15,295.5	15.0
2010.5	1,798.3	21.3	10,440.7	17.2	2,894.4	11.5	19,663.3	14.7
2010.6	2,119.4	16.8	12,673.3	16.7	3,445.7	6.1	23,786.3	14.5
2010.7	2,426.9	16.1	14,802.3	16.4	3,939.0	3.5	27,706.7	14.2
2010.8	2,765.1	17.2	16,851.0	16.4	4,437.5	2.3	31,345.2	14.2
2010.9	3,061.8	14.7	18,820.6	16.3	4,900.3	-0.3	35,033.8	14.0
2010.10	3,410.5	15.5	21,002.2	16.2	5,538.4	0.8	39,013.4	14.2
2010.11	3,851.4	17.4	23,259.6	16.6	6,283.3	2.5	42,980.4	14.6
2010.12	4,323.2	17.6	25,787.2	16.8	6,955.3	1.8	47,177.8	14.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3	1,133.5	5.2	91.6	33.8	1,133.5	8.1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7	1,178.1	9.7
2002	95.6	53.6	1,374.5	7.0	126.2	61.1	1,239.2	10.2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8	9.7	175.0	65.5	1,293.5	13.5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0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	300.3	56.0	2,621.0	11.5	187.7	50.1	1,390.2	13.5
2009	326.7	57.8	2,990.8	10.9	211.4	51.0	1,753.7	12.1
2010.1	34.5	59.7	240.9	14.3	12.5	39.2	123.9	10.1
2010.2	58.6	58.7	479.2	12.2	25.9	42.8	251.7	10.3
2010.3	94.8	57.4	749.0	12.7	47.8	45.4	405.8	11.8
2010.4	135.2	58.5	1,029.1	13.1	75.2	49.6	577.9	13.0
2010.5	169.5	60.4	1,285.1	13.2	97.0	53.1	735.4	13.2
2010.6	204.4	60.9	1,594.3	12.8	120.4	56.2	916.2	13.1
2010.7	236.1	59.7	1,889.0	12.5	144.6	57.0	1,113.4	13.0
2010.8	271.4	59.2	2,205.8	12.3	167.9	57.2	1,301.8	12.9
2010.9	306.2	58.0	2,538.1	12.1	188.7	56.8	1,492.9	12.6
2010.10	345.1	56.3	2,894.9	11.9	212.4	56.0	1,682.2	12.6
2010.11	387.9	56.1	3,269.4	11.9	238.2	56.2	1,873.5	12.7
2010.12	446.6	56.7	3,721.7	12.0	269.8	56.9	2,079.2	13.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	1,702.0	46.3	11,753.6	14.5	3,017.2	44.1	25,978.5	11.6
2010.1	134.7	40.6	981.9	13.7	236.5	45.0	2,097.7	11.3
2010.2	293.2	44.7	1,966.4	14.9	489.3	47.7	4,170.7	11.7
2010.3	475.7	46.1	3,178.4	15.0	762.0	46.6	6,768.0	11.3
2010.4	655.7	45.6	4,430.0	14.8	1,030.2	44.8	9,271.1	11.1
2010.5	807.3	44.9	5,693.4	14.2	1,261.5	43.6	11,898.4	10.6
2010.6	936.3	44.2	6,917.9	13.5	1,460.8	42.4	14,453.1	10.1
2010.7	1,063.4	43.8	8,093.9	13.1	1,638.8	41.6	16,888.2	9.7
2010.8	1,213.2	43.9	9,142.9	13.3	1,830.1	41.2	19,061.7	9.6
2010.9	1,343.2	43.9	10,207.6	13.2	2,023.9	41.3	21,645.4	9.4
2010.10	1,511.0	44.3	11,404.8	13.2	2,287.9	41.3	23,913.3	9.6
2010.11	1,712.1	44.5	12,602.8	13.6	2,585.8	41.2	22,226.3	11.6
2010.12	1,945.7	45.0	13,987.7	13.9	2,907.2	41.8	28,850.4	10.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	18.6	303	139.6	13.3	5.4	1.3	59.7	9.0
2010.1	2.3	4.0	11.7	19.7	0.3	0.9	5.3	5.7
2010.2	3.3	3.3	21.1	15.6	0.5	0.8	9.4	5.3
2010.3	4.6	2.8	31.1	14.8	0.8	0.8	13.9	5.8
2010.4	5.0	2.2	42.5	11.8	0.9	0.6	18.6	4.8
2010.5	5.6	2.0	53.1	10.5	1.0	0.5	23.3	4.3
2010.6	6.3	1.9	62.5	10.1	1.0	0.5	27.5	3.6
2010.7	8.5	2.1	73.6	11.5	1.3	0.5	31.1	4.2
2010.8	10.7	2.3	84.4	12.7	1.7	0.6	36.1	4.7
2010.9	13.7	2.6	97.2	14.1	2.0	0.6	40.2	5.0
2010.10	16.5	2.7	110.7	14.9	2.4	0.6	45.4	5.3
2010.11	20.1	2.9	126.8	15.9	2.9	0.7	51.4	5.6
2010.12	23.4	3.0	146.1	16.0	3.3	0.7	59.2	5.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	42.2	1.1	2,485.1	1.7	15.8	0.2	956.5	1.7
2010.1	3.8	1.1	239.3	1.6	1.5	0.3	88.2	1.7
2010.2	7.1	1.1	434.8	1.6	2.5	0.2	159.6	1.6
2010.3	11.0	1.1	691.0	1.6	3.8	0.2	248.9	1.5
2010.4	15.4	1.1	926.1	1.7	5.4	0.2	337.1	1.6
2010.5	20.4	1.1	1,189.3	1.7	7.2	0.2	428.6	1.7
2010.6	25.1	1.2	1,458.7	1.7	8.7	0.3	522.7	1.7
2010.7	29.7	1.2	1,723.8	1.7	10.1	0.3	610.1	1.7
2010.8	33.2	1.2	2,002.4	1.7	11.4	0.3	697.0	1.6
2010.9	37.2	1.2	2,234.8	1.7	12.7	0.3	773.5	1.6
2010.10	42.8	1.3	2,515.0	1.7	14.7	0.3	865.8	1.7
2010.11	48.3	1.3	2,799.4	1.7	16.7	0.3	956.3	1.7
2010.12	53.3	1.2	3,123.0	1.7	18.6	0.3	1,055.1	1.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	74.3	13.1	167.7	44.3	106.2	25.6	168.7	63.0
2010.1	7.9	13.7	13.7	57.7	11.5	36.1	16.5	69.7
2010.2	15.5	15.5	27.4	56.6	22.0	36.4	31.3	70.3
2010.3	25.0	15.1	43.4	57.6	34.2	32.5	48.4	70.7
2010.4	31.3	13.5	60.3	51.9	40.8	26.9	61.1	66.8
2010.5	34.7	12.4	75.2	46.1	44.1	24.1	70.5	62.6
2010.6	36.7	10.9	88.4	41.5	45.0	21.0	78.0	57.7
2010.7	43.6	11.0	110.2	39.6	51.4	20.3	95.7	53.7
2010.8	53.2	11.6	127.2	41.8	62.9	21.4	112.0	56.2
2010.9	62.9	11.9	150.4	41.8	72.9	21.9	130.4	55.9
2010.10	76.8	12.5	181.7	42.3	83.2	21.9	147.9	56.3
2010.11	81.8	11.8	196.9	41.5	88.2	20.8	158.8	55.5
2010.12	86.2	10.9	214.1	40.3	94.5	19.9	172.5	5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	1,077.9	29.3	4,107.8	26.2	2,882.1	42.2	12,503.7	23.0
2010.1	87.4	26.4	382.8	22.8	191.4	36.4	961.2	19.9
2010.2	162.3	24.7	744.3	21.8	329.5	32.1	1,883.6	17.5
2010.3	257.9	25.0	1,194.0	21.6	570.2	34.9	3,030.2	18.8
2010.4	374.8	26.1	1,650.1	22.7	876.7	38.1	4,203.8	20.9
2010.5	489.6	27.2	2,118.5	23.1	1,171.4	40.5	5,392.8	21.7
2010.6	602.0	28.4	2,612.7	23.0	1,457.3	42.3	6,556.6	22.2
2010.7	708.0	29.2	3,073.7	23.0	1,718.5	43.6	7,645.4	22.5
2010.8	815.9	29.5	3,537.7	23.1	1,957.6	44.1	8,661.1	22.6
2010.9	910.3	29.7	3,939.5	23.1	2,167.2	44.2	9,557.4	22.7
2010.10	1,001.6	29.4	4,347.6	23.0	2,386.0	43.1	10,526.3	22.7
2010.11	1,117.1	29.0	4,776.4	23.4	2,670.3	42.5	11,519.9	23.2
2010.12	1,228.5	28.4	5,219.1	23.5	2,915.8	41.9	12,556.7	23.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	145.7	25.8	1,511.2	9.6	91.8	22.1	652.2	14.1
2010.1	13.0	22.5	130.4	10.0	7.5	23.5	66.7	11.2
2010.2	22.5	22.5	243.6	9.2	12.1	20.2	109.7	11.1
2010.3	40.8	24.7	385.8	10.6	22.5	21.4	156.2	14.4
2010.4	59.8	25.9	545.3	11.0	34.7	22.9	220.2	15.8
2010.5	71.0	25.3	985.8	7.2	40.7	22.3	276.3	14.7
2010.6	88.3	26.3	837.8	10.5	47.8	22.3	322.2	14.8
2010.7	107.2	27.1	1,002.6	10.7	56.2	22.2	381.3	14.7
2010.8	123.3	26.9	1,127.4	10.9	61.2	20.8	419.8	14.6
2010.9	145.6	27.6	1,272.6	11.4	68.9	20.7	465.3	14.8
2010.10	174.9	28.5	1,455.6	12.0	81.4	21.5	533.0	15.3
2010.11	202.0	29.2	1,618.8	12.5	94.9	22.4	581.3	16.3
2010.12	231.2	29.4	1,798.2	12.9	106.7	22.5	793.0	13.5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5~2010.12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	853.8	23.2	2,894.4	29.5	919.4	13.5	4,080.3	22.5
2010.1	105.7	31.9	289.5	36.5	96.4	18.3	325.0	29.7
2010.2	193.6	29.5	530.0	36.5	205.5	20.0	738.3	27.8
2010.3	287.1	27.8	853.0	33.7	300.0	18.3	1,202.3	25.0
2010.4	392.8	27.3	1,164.3	33.7	386.4	16.8	1,537.6	25.1
2010.5	481.1	26.8	1,439.5	33.4	454.4	15.7	1,943.6	23.4
2010.6	555.9	26.2	1,683.9	33.0	518.8	15.1	2,253.9	23.0
2010.7	625.9	25.8	1,910.7	32.8	517.5	13.1	2,562.9	20.2
2010.8	702.9	25.4	2,168.1	32.4	638.4	14.4	2,925.4	21.8
2010.9	771.5	25.2	2,438.7	31.6	696.5	14.2	3,357.5	20.7
2010.10	855.0	25.1	2,734.8	31.3	849.7	15.3	3,708.0	22.9
2010.11	973.8	25.3	3,081.0	31.6	1,010.4	16.1	4,277.9	23.6
2010.12	1,095.7	25.3	3,457.2	31.7	1,113.8	16.0	4,715.6	23.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8.1~2010.12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랍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5	163.3	119.4	96.7	161.6	119.5	95.9
	6	160.9	112.1	98.5	158.4	111.1	98.0
	7	162.8	110.0	101.2	160.3	108.5	101.2
	8	162.0	107.0	99.6	160.3	105.5	100.0
	9	160.7	107.1	99.1	159.3	106.2	99.4
	10	153.6	102.5	95.6	151.2	101.0	94.9
	11	147.5	98.6	96.0	144.8	97.2	95.8
	12	149.8	98.5	101.6	147.7	97.6	102.0
2009.	1	158.5	98.4	105.4	157.0	97.1	106.3
	2	159.2	91.4	100.4	158.4	89.6	100.9
	3	160.0	94.8	100.5	159.5	94.7	100.7
	4	161.1	95.4	100.7	160.7	95.4	100.8
	5	162.7	99.6	101.0	162.5	100.6	101.1
	6	159.8	99.3	98.2	159.0	100.4	97.8
	7	158.4	97.3	99.1	157.4	98.2	99.0
	8	162.6	100.2	102.7	162.5	101.4	103.2
	9	162.4	101.1	99.9	162.1	101.8	99.8
	10	151.0	95.3	93.0	148.5	98.2	91.6
	11	152.7	103.5	101.1	150.4	103.9	101.3
	12	161.1	107.1	105.5	160.3	108.5	106.6
2010.	1	169.0	106.6	104.9	169.3	107.8	105.6
	2	172.1	108.1	101.8	172.9	109.2	1021
	3	168.7	105.4	98.0	168.9	105.9	97.7
	4	168.1	104.4	99.6	167.9	104.5	99.4
	5	162.0	99.6	96.4	160.7	98.9	95.7
	6	157.6	99.6	97.3	155.6	97.9	96.9
	7	164.8	104.0	104.6	163.9	104.1	105.3
	8	172.8	106.3	104.9	173.4	106.7	105.8
	9	171.0	105.3	98.9	170.7	105.3	98.4
	10	171.5	113.6	100.3	171.0	115.2	100.2
	11	176.0	115.3	102.6	175.5	116.7	102.6
	12	175.0	108.6	99.4	173.3	108.1	98.8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101.0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1~3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4	166.2	166.1	2.12	175.5	176.9
1.5	166.7	166.8	2.22	174.7	176.1
1.6	167.8	168.2	2.23	174.1	175.4
1.7	167.6	167.8	2.24	173.2	174.3
1.8	167.9	168.1	2.25	172.4	173.4
1.11	167.5	167.7	2.26	171.3	172.1
1.12	168.0	168.3	3.1	169.6	170.0
1.13	168.7	169.0	3.2	170.3	170.9
1.14	169.3	169.6	3.3	169.1	169.4
1.15	169.1	169.4	3.4	169.7	170.1
1.18	168.8	169.1	3.5	170.1	170.5
1.19	169.6	170.0	3.8	168.6	168.8
1.20	170.5	171.0	3.9	169.5	169.8
1.21	170.8	171.4	3.10	169.0	169.2
1.22	170.5	171.1	3.11	168.8	168.9
1.25	170.2	170.6	3.12	168.5	168.7
1.26	169.5	169.9	3.15	168.8	169.0
1.27	170.3	170.9	3.16	168.8	169.0
1.28	169.9	170.3	3.17	169.1	169.3
1.29	170.2	170.8	3.18	168.9	169.1
2.1	171.3	171.1	3.19	168.5	168.6
2.2	171.2	171.0	3.22	167.5	167.4
2.3	169.8	170.1	3.23	168.0	167.9
2.4	170.3	169.4	3.24	167.7	167.6
2.5	171.3	171.7	3.25	167.6	167.6
2.8	172.2	171.6	3.26	168.1	168.1
2.9	173.1	173.5	3.29	168.3	168.2
2.10	174.1	173.9	3.30	168.1	168.2
2.11	176.2	176.0	3.31	168.2	168.2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4~6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1	168.2	168.1	5.19	160.4	159.0
4.2	168.6	168.6	5.20	159.8	158.4
4.6	168.4	168.1	5.21	159.9	158.3
4.7	167.4	167.1	5.24	159.1	157.5
4.8	168.1	168.0	5.25	158.2	156.4
4.9	166.5	166.2	5.26	158.4	156.7
4.12	166.0	165.5	5.27	158.8	157.1
4.13	166.1	165.6	5.28	159.4	157.9
4.14	166.6	166.0	5.31	158.6	156.9
4.15	167.3	166.8	6.1	158.2	156.5
4.16	167.2	166.8	6.2	158.3	156.6
4.19	168.0	167.8	6.3	1578.0	156.2
4.20	169.4	169.5	6.4	157.4	155.4
4.21	169.3	169.4	6.7	157.8	155.9
4.22	168.4	168.2	6.8	157.4	155.5
4.23	168.4	168.3	6.9	156.8	154.8
4.26	168.2	168.1	6.10	156.7	154.7
4.27	169.1	168.9	6.11	157.0	154.8
4.28	169.1	169.0	6.14	157.3	155.0
4.29	170.6	170.7	6.15	157.7	155.2
4.30	169.6	169.5	6.16	157.1	154.8
5.4	167.9	167.4	6.17	157.6	155.1
5.5	167.0	163.8	6.18	157.2	154.9
5.6	166.2	166.0	6.20	157.4	155.1
5.7	165.6	164.7	6.21	157.9	155.9
5.10	164.0	162.8	6.22	157.6	155.3
5.11	163.2	161.7	6.23	157.6	155.3
5.12	163.7	162.4	6.24	158.7	156.6
5.13	163.4	162.1	6.25	158.3	156.1
5.14	164.0	162.7	6.28	158.9	156.8
5.17	160.5	159.3	6.29	158.3	156.2
5.18	160.5	159.2	6.30	158.6	156.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4.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7~9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7.1	158.9	156.8	8.25	174.4	175.1
7.2	158.8	156.7	8.26	174.4	175.1
7.5	159.1	157.3	8.27	173.5	174.0
7.6	159.4	157.6	8.30	174.3	174.8
7.7	160.1	158.3	8.31	173.3	173.7
7.8	160.3	158.5	9.1	172.3	172.5
7.9	160.5	158.9	9.2	171.9	172.1
7.12	162.0	160.6	9.3	171.1	171.0
7.13	162.3	160.8	9.6	170.3	170.0
7.14	162.7	161.3	9.7	170.1	169.7
7.15	163.6	162.5	9.8	170.1	169.6
7.16	165.0	164.1	9.9	168.9	168.2
7.19	165.6	164.9	9.10	168.5	167.7
7.20	167.6	167.1	9.13	170.2	169.9
7.21	167.7	167.5	9.14	171.3	171.0
7.22	169.1	168.7	9.15	170.3	169.9
7.23	169.6	169.4	9.16	170.0	169.5
7.26	169.3	169.1	9.17	170.1	169.6
7.27	169.5	169.2	9.20	170.3	167.0
7.28	170.0	169.8	9.21	171.0	170.4
7.29	170.2	169.9	9.22	171.3	170.8
7.30	170.8	170.2	9.23	172.1	171.6
8.2	171.3	171.0	9.24	172.7	172.4
8.3	171.7	171.4	9.27	173.4	173.2
8.4	171.5	171.2	9.28	173.8	173.8
8.5	171.8	171.6	9.29	172.9	172.6
8.6	172.0	171.7	9.30	172.5	172.3
8.9	171.7	171.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5.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10~12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0.8	171.7	171.6	11.22	176.4	175.7
10.11	171.1	170.9	11.23	176.0	175.2
10.12	171.0	170.7	11.24	175.7	174.8
10.13	170.2	169.7	11.25	175.9	175.1
10.14	171.1	170.4	11.26	175.0	173.7
10.15	171.1	170.6	11.29	175.0	173.8
10.18	170.9	170.3	11.30	175.8	174.5
10.19	172.0	171.5	12.1	175.2	173.9
10.20	171.8	171.3	12.2	174.2	172.7
10.21	171.2	170.5	12.3	173.8	172.2
10.22	171.6	170.8	12.6	173.2	171.3
10.25	171.3	170.4	12.7	173.8	172.2
10.26	171.6	170.8	12.8	174.0	172.1
10.27	171.3	170.5	12.9	173.8	172.0
10.28	173.0	172.4	12.10	174.3	172.6
10.29	173.4	172.9	12.13	174.1	172.2
11.1	174.2	173.9	12.14	174.4	172.7
11.2	174.5	174.2	12.15	175.2	173.6
11.3	175.1	175.1	12.16	175.5	174.0
11.4	176.2	176.2	12.17	175.7	174.2
11.5	176.8	176.9	12.20	174.8	173.1
11.8	177.0	177.0	12.21	174.8	173.0
11.9	176.3	176.0	12.22	175.9	174.2
11.10	175.5	175.0	12.23	175.7	174.0
11.11	176.5	176.2	12.24	175.6	173.8
11.12	176.2	175.9	12.27	175.8	174.0
11.15	176.7	176.3	12.28	176.0	174.3
11.16	177.2	176.9	12.29	176.9	175.4
11.17	176.8	176.5	12.30	176.6	174.9
11.18	176.4	176.0	12.31	176.1	174.4
11.19	176.7	176.3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09-2010-04

중국농업동향(겨울호) 제3권 제4호/통권12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 31.

발 행 2011. 1. 3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